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힘

산학협력 길라잡이 II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부록

전국대학연구 ·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편저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산학협력 길라잡이 :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부록 2 /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
관리자협의회 편저. -- [세종] : 교육부 ; [대전] : 한국연구재단, 2015
p. ; cm

표제관련정보: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힘
ISBN 978-89-966068-8-8 93770 : 비매품

산학 협력[産學協力]

377.2-KDC6
378.106-DDC23

CIP2015030002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5030002)

차 례

1. 질의응답(FAQ)	1
2.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웹사이트	65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73
4. 주요부처 연구지원사업 안내	245

부록 1 질의응답(FAQ)



1. 산학협력력 개요 및 조직

1)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된 원격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는가?

-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는 학교나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된 원격대학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 또한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이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교육기관은 고등기술학교, 실업계고교, 일반계 고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하므로,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된 원격대학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2) 대학이 둘 이상의 캠퍼스 또는 분교를 가지고 있을 경우, 둘 이상의 산학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는가?

- 둘 이상의 분교를 가지는 대학의 경우 대학설립 운영규정상 독립된 학교로 인가 받은 분교에는 산학협력단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독립된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는 캠퍼스에는 별도의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없다.

※ 근거 : 대학설립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정책 2007년)

- 분교는 본교와 구분되는 독립된 학교로 관리되기 때문에 분교를 주된 사무소로 인정하는 유권해석 필요
 - 분교는 「고등교육법」 제2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교와는 구분되는 독립된 학교로 관리
 - 분교도 대학설립 운영규정상 4대(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음

-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학술용역 등을 국가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립대학 내에 설립된 산학협력 법인이 국가기관에 해당되는지, 산학협력단이 수의계약이 가능 할 경우 그 업무(계약)의 범위는 어떠한가?
-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한 부서이기도 하지만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법인으로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근거한 귀 기관(지사체)의 수의계약대상은 아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방계약법 제25조 상 특별법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 산학협력단을 규정함에 있어 「민법」 일부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법인격이 없는 국립대학의 계약체결의 흠결사항 등을 보완하고 외부 연구 사업의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해 2003년부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각 국립대학에 설립되었다. 또한 동 법 제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39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수의계약도 보조의 일부분으로 사료되므로 산학협력단과의 ‘수의 계약’은 가능하며, 다만, 동법 제24조에 의해 산학협력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 4) 국립대학 산학협력단과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의 법적지위가 동일한가? (국립대학의 산학협력단은 “국가”에 해당되어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의 법적의무 이행 범위가 다른 것인가?)
- 국립대학의 산학협력단도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국가로 볼 수 없으며, 사립대학 산학협력단과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

〈참고자료_(서면3팀-1673, 2005.09.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최근 세무서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산학협력단은 공익법인인가?

- 산학협력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별표6의 2의 제41호에 근거하여 공익법인이다.

〈참고법령〉

- ▶ 상속세법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제9호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재(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12.2.2. 개정)
1.~8. 생략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4. 2. 21.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 생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1호 산학협력단(2015. 3. 13. 개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40. 생략
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5.2.28. 법령개정)

6) 사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민법」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가?

- 사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산업교육진흥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대학의 장을 대신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동법 제24조)
-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가 신청자격일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대학의 장을 대신하여 계약행위 및 이에 따르는 의무 이행을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산학협력단 이름으로 관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등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산학협력단장 이름으로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7) 산학협력단의 위치가 달라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직인을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서, 별도의 법적 등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 한국사학진흥재단(2011.3.18.)

- 산학협력단의 직인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내부 규정에 의하여 직인등록의 절차를 거차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기관 측으로 통보 등으로 연구협약 업무 등에 혼선이 없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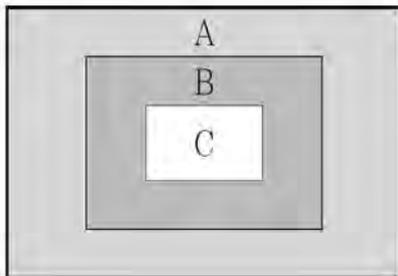
8) 산학협력단 해외 창업사무소 설립과 관련하여 관련 절차와 유관기관에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 - 한국사학진흥재단(2010.9.9.)

- 산학협력단의 해외지사(사무소)를 설치코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제1 제2호에 근거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외지사설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외환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조약상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은 당해 내국법인과 별도의 실체로 인정되어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독립된 실체로서의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에서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내법인(본점)의 해외지점설립 시 준비사항 및 절차 | 답변일자 :2010-07-05

9)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조직상 지위와 법인으로서 가지는 지위는 어떠한가?

-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상 특수법인(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동시에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 산하 대학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계약 및 성과 관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산학협력을 위한 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학의 조직이다.
- 더불어,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 의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공익법인이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관계



A : 비영리법인

B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산학협력단 해당)

C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익법인

10) 대학 본부(국립대학회계, 사립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회계) 내부 조직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처리 절차는 무엇인가?

- 대학 본부와 산학협력단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각각 독립적인 법인으로 계약 성립이 가능하다. 대학 내 조직간 내부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객관적 타당성 없이 내부자간 협의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고,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회계의 수익이 과대계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조직상 대학의 하부기관이고, 모두 총장의 관리 아래 있으므로, 내부 관계인간 부당 거래 발생 소지가 크므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여

겨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용역 등은 대학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위의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 본부 내부연구비의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중앙관리를 담당하는 경우 별도 용역계약 없이 관리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준용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국내외 유일 기술로 다른 용역자로 하여금 용역 계약을 할 수 없을 때)
- 사업비 절감차원으로 외부의 평균 공시가격 보다 1/2 이하로 용역계약을 체결 하여, 외부용역 수주자가 없을 경우
- 사업의 특성상 대학을 잘 아는 내부자만이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 내부 기밀사항이 사업에 포함 되어있어 외부용역을 줄 수 없는 경우 등

11) 산학협력단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 교원이 일반산업체 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 학교기업 형태가 아닌 수익사업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이 가능한가?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발생수익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세입조치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시설물의 활용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수익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기업의 형태가 아닌 수익사업으로 동 사업을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할 수 없다.

12) 단순수익 발생 비산학협력사업을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이 가능한가?

- 산학협력단의 수익은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의 수익금을 전제로 세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의 설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기획 및 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R&D FAQ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2015. 8.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R&D 도우미센터(<http://www.mdcall.go.kr>) Q&A

1) 공동관리규정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동관리규정으로 불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에 상기 제34조에 의거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세부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2015.08.24. 개정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할 수 있지만, 그 틀은 동일하다.

2)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결과에 따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 연구비관리체계평가는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와 연구비관리우수기관 인증이 통합된 평가로서, 우대사항으로는 간접비 비율 산출 시 2%이내 상향 조정, 연구개발비 정밀정산 면제, 기관평가 시 우대를 하고 있으며, 연구비관리체계평가 C등급 이하는 간접비 비율 산출 시 2%이내 하향 조정이 가능하므로, 평가 시 유념하여야 한다.

3)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계획서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예산 편성 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편성비율이 있는 예산항목을 확인 후 작성해야 한다. 각 대학의 인건비 기준단가와 기관별 간접비율을 참고하여 예산을 책정해야 하며, 그리고 연구수당(인건비의 20%), 위탁연구개발비(직접비의 40%)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해야 한다.

4)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계상 기준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된 건가?

- 「근로기준법」에서 학생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근로소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임금이 아닌 학위를 목적(기타소득)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에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은 사업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학생인건비 기준은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실지금액만을 의미한다.

5) 연구개시 시점 석사과정으로 학생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휴학을 하거나 졸업 후 연구실에 계속 나와 연구를 진행하면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처리 시 연구세목은 학생인건비인지, 외부인건비인지?

- 학생인건비 대상자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중에 있는 연구원을 의미한다. 휴학, 졸업, 타 기관 소속의 학생의 경우는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이 아닌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이다.

6) 회의비 사용 시 외부 전문가 참여 없이 내부 참여연구원만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 (사전 내부품의나 회의록이 있는 경우) 회의비가 인정되는지요?

- 회의비를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이 없이 집행할 시 부당집행 금액으로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내부 참여연구원’만으로 회의를 집행했을 경우의 부당 집행 여부는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있으나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외부기관 참석없이 집행된 금액을 부당집행 기준에 정하고 있는 바, 전문(전담)기관에서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한 개의 수행기관의 구성원으로만 식사를 한 경우에도 부적정 집행이 될 수 있다.

7) 연구 관련 Windows, 한글, 백신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이 가능한가?

- 연구 관련 소프트웨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Windows와 같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사무 처리용인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

시트인 엑셀 및 프레젠테이션 등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및 백신과 같은 범용성 프로그램 구입은 직접비에서의 집행은 불인정된다. 과제수행에 직접 필요한 과제 관련성이 입증되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의 집행은 직접비로 처리가 가능하며, 특수사업의 경우 협약 시 연구계획서에 범용성 소프트웨어(한글, MS office 등)를 계상 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업에서의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직접비 사용이 불가능하다.

8) 종료 임박한 과제의 연구비로 과제 종료 이후 개최되는 국외학회 참가비를 사전 등록 시 집행처리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학회참가비 지급은 당해 연도 연구기간 중에 연구원의 학회 참석행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차년도 연구기간 중 예상되는 학회참가비는 다년도 협약과제에 한하여 사전등록 등 집행 시점의 과제 연구비로 집행을 인정한다.

9) 전일제가 아닌 외부교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외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을까?

- 질의한 외부 참여연구원은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과제 참여계약을 진행하여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 외부대학에서의 계약사항과 전체 해당 연구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인건비 범위를 생각하고 비전임에서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 과제 기관에서의 계약 행위가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10) 대체 연구원이 휴학생 신분으로 연구 참여가 가능한가요? 또한 인건비 지급은 학생인건비에서 집행할 수 있을까요?

- 휴학한 학생은 해당 연구과제 참여목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과제참여계약을 진행한 후 계약서에 연구과제(사업명, 연구기간, 인건비지급 총액,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책정액)의 정보를 나열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참여를 하여야 한다. 인건비 지급은 외부인건비에 해당된다.

11) 학생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기업체 소속으로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은 내부적으로는 학생 신분이므로, 학생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한가?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과제 참여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여야 하는가?

- 기업체 소속으로 참여한 연구자는 해당 기관에서 인건비가 지급되어 학생인건비 지급은 불가하다. 기업체에서 고용되어 4대보험이 적용되는 자로 인건비가 확보 되었으므로 미지급 인건비(미지급 30% 이내로 계상)로만 참여할 수 있다.

12) 타과제의 연구비로 구매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현재 연구재단의 과제 수행 중에도 필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매년 유지 보수비를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계획서 상에는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지는 않았다. 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비가 필요한데, 주관연구기관 승인 후 재료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

- 타과제의 연구비로 구매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현재 연구재단의 과제 수행 중에도 필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동 사항의 내용을 당초 연구계획서 상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의 문서 승인(연구계획변경 절차)을 득하고 집행하면 되는데, 동 사항이 동 연구와 직접적이고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에 따르는 유지보수비용도 주관기관 문서 승인을 득하여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처리할 수 있다.

13)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어 있는 재료들을 종료 전 언제까지 구매가 가능한가?

- 질의한 재료의 구매 시기는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 기간 중 마지막 날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계획서 상에 계상하지 않았거나 계상을 하였어도 연구 기간 중에는 집행을 하지 않다가 연구 종료일에 임박하여 집행하는 것은 연구비 반납을 하지 않고 소진을 위한 집행으로 정산 시 불인정 받을 수는 있다.

14) 연구기자재비 예산이 부족하여 타 과제와 연계하여 연구기자재 구매 시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가요?

- 전문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하다. 다만, 연구기자재 구매를 위한 내부 품의 시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자재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15) 폐액·폐수가 발생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실험실의 경우 관련 비용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액·폐수는 해당 과제에서 산출되는 폐액·폐수의 양과 그 처리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과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간접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폐액·폐수의 처리는 그 처리방법이나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개별 과제의 연구비에서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관의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폐액·폐수의 성격 자체가 연구에 투입되는 원가 요소라기보다는 연구결과 발생하는 부산물의 성격이 강하므로 간접비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폐액·폐수가 발생하는 특수한 과제들의 경우 이를 간접비로만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원래 계획서 상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연구기관 자체 내부 규정 등에 폐액·폐수 관련 산출근거 및 처리기준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한다면 상황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도 있다.

16)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난방기를 사업비에서 구입해도 되나요?

- 2012.7.12 신설된 연구과제추진비내의 연구환경유지비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필요한 경비로서 냉난방기기(선풍기, 온풍기, 에어컨 등), 공기청정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책상, 책장, 의자, 캐비닛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집행금액에 대해 불인정하오니 필요한 품목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품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17) 사무용품, 재료 등 구입 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 소액 연구비도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이며, 다만,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 범위 내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인정한다.(인문사회분야 2%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

18) 연구개발비 전용 관련 전문기관 승인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

- 2013년 9월 26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이후에는 위탁연구개발비 당초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가 계획에 없거나 다른 연구장비·시설비로 변경 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과제의 신규채용 인건비 감액 시,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이상 증 감액(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시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전용 가능하다.

3. 기술사업화 및 창업

가.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1) 산학협력단이 설치되기 이전에 학교법인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학교법인에서 산학협력단 명의로 이전 등록할 때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가 없이도 이전등록이 가능한 것 인지 아니면 학교법인 소유재산의 처분(증여) 또는 권리의 포기 등의 절차(교육부의 허가승인)를 거쳐야 하는가?

○ 법적으로 정하여진 절차는 없으나,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밟아 이전 조치하면 된다.

2)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재산은 학교법인과는 상관이 없는 별도법인 소유의 재산인지 아니면 산학협력단을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보아 그 재산은 학교법인의 관리대상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가? (현재는 학교법인의 명의의 지식재산권은 법인자산으로 명시한 바가 없으며, 사학진흥재단에도 법인자산으로 신고하지는 않고 있음)

○ 학교와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에 이전된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대학 TLO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가?

○ TLO 관련 규정에는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사업화 정책에 대한 규정과 TLO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특허법」, 「발명진흥법」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 「기술의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또한 대학마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규정제정이 필요하다.

○ TLO 관련 규정에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술이전 조직 관련 사항, 직무발명, 직무발명보상, 기술이전 관련 사항, 실시보상금 지급, 사후관리, 교원의 창업, 기술주회사 설치와 관련한 사항 등 다양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하며, 규정이 세분화하는 것 보다는 큰 틀의 기본적인 규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TLO 운영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정의
직무발명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교원, 직원, 학생 등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 이를 보호 장려하고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의 정의, 발명신고 및 승계절차, 발명보상, 관련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기술이전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지식재산권 및 Know-How 등 보유기술에 대하여 제3자와의 기술실시에 필요한 계약업무와 기술료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계약 절차, 수입에 대한 배분, 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
창업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이 대학의 기술로 창업할 경우 그 절차 및 의무,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자격 및 조건, 책임과 의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
기술지주회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및 Know-how 등 연구성과물을 현물 출자하여 사업화함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및 기술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및 배당, 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

4) 기업과의 산학협력력 계약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구분	기업체 요구	대학의 대응
연구 성과의 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지급의 대가로 독점 소유 - 연구결과물에 대해 독점 실시 - 개량기술에 대한 소유권 요구 - 연구 이전의 기존 보유기술에 대해 무상사용권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의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발명에 대한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대학 단독, 또는 공동 소유 - 기업에 독점 실시를 줄 경우 대학의 불실시에 대한 보상 필요 - 개량기술도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발명에 대한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권 귀속 - 기존 보유기술을 실시할 경우 별도의 계약 및 보상 필요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보상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자가실시의 경우 일정률의 보상금 필요 - 제3자 라이선싱을 통한 수익 창출의 경우 소유권 지분에 의한 수익 배분 필요

구분	기업체 요구	대학의 대응
보증 및 면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결과물의 제3자의 권리 비침해 보증 요구 - 분쟁 발생 시 기업을 면책시키고 손해 배상할 것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 및 손해배상 불가
비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 비공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 목적의 공개 (논문 등)
유사연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와 동일, 유사목적의 연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연구 제한 불가 - 연구 특성상 제한 필요 시 합리적 기간 산정 필요 (예: 특허 출원 시까지)

5) 직무발명, 자유발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대학교수의 발명은 어디에 속하는가?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을 말하며, 반대로 “자유발명”은 “직무발명”을 제외한 나머지 발명으로 분류된다. 대학교수의 통상적 연구 활동에 의해 생성된 발명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최근에는 직무발명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종래에는 자유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통설이었으나 최근의 「발명진흥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서 산학협력단이 대학 직무발명을 승계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이 순수한 학문 연구만이 아닌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창출의 적극적 주체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등 대학교수의 직무에는 본래적으로 연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있으면서 학교 연구 설비를 이용한 통상적, 일상적 연구 활동 결과는 직무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6) 대학 직무발명 규정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의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직무발명의 정의가 명확히 언급되어야 한다. 직무발명의 정의는 “대학의 교직원이 대학

또는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대학의 시설, 설비, 인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발명으로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정도로 규정될 수 있다.

- 두 번째로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는 승계조항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승계조항이 없을 경우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만을 확보할 뿐, 소유권은 가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립대학이 해당되며, 국립대학의 경우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 권리 승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사항 없음)
- 세 번째로 교직원의 발명의 신고 의무 조항과 이에 대해 필요한 절차, 관련 서식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직무발명 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조항이 있어야 한다. 특히 승계여부의 통지는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승계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발명은 자유발명이 됨에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직무발명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각종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고, 지식재산권의 특허 출원, 등록에 관한 절차, 직무발명을 승계하지만 특허를 출원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을 경우의 처리,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관련 비용 부담, 직무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에 대한 조항도 직무발명규정에 언급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학 TLO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기술이전에 의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발명자에게는 50% 이상, 기술이전 기여자에게는 10% 이상의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실시보상 이외에도 특허 출원 등록 보상, 비금전적 보상으로 업적 평가에 반영하는 조항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7)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가?

- 직무발명 보상은 크게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눌 수 있고, 직무발명에 대한 단계별 보상 형태로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국내 대학에서 기술이전 수입은 보통 연구자와 산학협력단에 배분하는데,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배분비율은 산학협력단 31.2%, 연구자 61.6%, 기타 7.2%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규모는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 구분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처분 보상	출원유보보상
금전적 보상	출원 완료시 특허: 00만원 실용신안: 00만원 디자인: 00만원	등록 완료시 특허: 00만원 실용신안: 00만원 디자인: 00만원	기술료 수입액 중 발명자 00%, 기여자 0% 인센티브로 지급	출원 유보 결정시 특허: 00만원 실용신안: 00만원 디자인: 00만원
비금전적 보상	교원업적평가 점수 반영, 교육 연수 기회 제공, 연구비 제공, 기술이전 성과 교내외 홍보(명예의 전당 등록, 마에스트로 호칭 부여 등)			

8)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하는 이유와 올바른 작성 방법은 어떠한가?

-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하며, 연구노트에는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서면연구노트와 전자 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전자연구노트가 있다. 연구노트는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고, 개인 및 기관의 노하우를 관리할 수 있으며, 연구실내 구성원간의 지식 전수의 자료이자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권리 확보와 연구결과를 특허로 보호할 경우에는 필수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영업비밀로 보호할 경우에도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는 필요하다. 연구노트의 바람직한 형식은 묶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삽입이나 삭제가 어려워야 하고, 페이지가 바뀌거나 손실될 우려가 적어야 하며, 색인, 검색 등을 할 때 유리해야 한다. 또한 바인더 공책보다 법정에서 증거채택 가능성 높아야 하며, 연구노트 상단부나 하단부에 노트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실험일자, 발명자, 기록자, 증인란이 있어야 한다.

○ 연구노트 체크리스트	예	아니오	모름
모든 연구기록이 페이지에 일련번호가 매겨진 묶음형식의 노트에 기록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본문이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작성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완료된 페이지에 공란이 없는가, 건너뛴 페이지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각 기록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서명되고, 날짜가 기입이 되고, 동시에 작성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정이 간결하고, 날짜가 기입되고, 서명되고, 증명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보의 기록이 읽기 쉽고, 일관되고, 시간 순서적이고, 빈틈없고, 완전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후일에 만들어진 기록은 분리된 페이지에 기록되고 이전의 기록을 포함한 관련된 페이지와 상호 참조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수적 자료가 연구노트에 고정되고, 첨부된 사인에 의해 확인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모든 기록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명자에 의해 통상적인 원칙으로 증명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연구실의 연구노트들이 적절하게 보관되고 그것들의 위치가 표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연구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고 싶어 하는 만큼 오랫동안 보관되어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신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과 관련된 지식재산법규의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된 지적창작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예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 배치설계기법, 데이터베이스 등을 들 수 있으며, 인터넷 도메인네임, 색채상표 등도 신지식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10) 학교 명칭을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나?

- 상표권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로서, “상표”와 “서비스표”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표장이 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피자헛 마크는 피자헛에서 판매하는 피자에 대해서는 “상표”, 피자헛의 영업에 대해서는 “서비스표”) 학교의 명칭, 심벌, 로고 등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아 학교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학교와 관련된 상표를 출원할 때에도 교육,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사업영역을 모두 망라하여 신청함으로써 적극적인 권리확보가 가능하다. 대학 상표권은 대학의 법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하되 산학협력단에서 위임받아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11) 대학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인 저작자에게 전속되어 양도될 수 없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양도 가능한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

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대학에서는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 조항을 바탕으로 교직원 등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하게 되는데, 직무발명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직무발명의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인이 종업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은 법인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한정하고 있고,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권리가 귀속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게 된다.

12) 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이 특허가 될 수 있는가?

-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라도 그 출원전의 공지행위가 특허제도의 다른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신규성 상실에 대한 사후적 구제제도가 존재한다. 이를 “공지예외 제도”(「특허법」 제30조)라고 한다(이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 또는 “신규성 의제제도”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종래 특허법에서는 발명자(또는 정당승계인)의 자발적 행위에 의한 공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발명을 시험한 경우,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 서면으로 발표한 경우, 박람회에 출품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6.3.3.자 개정 「특허법」에서는 자발적 공지의 경우 공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없어졌다.
- 따라서 발명자가 한 어떠한 형태의 공지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지예외 신청이 가능해 졌으나,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가 되거나 등록공고가 된 경우는 제외된다. 공지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공지예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에 제출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로부터

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15.1.28.자 개정에 의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공지예외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정기간 등에 제출할 수 있다.

- 한편, 발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공지사실의 지적이 있는 경우(의견제출통지 또는 무효심판)에 그것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임을 주장 및 입증하면 된다. 공지예외 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공지예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출원주의의 예외는 아니므로 공지 후 특허출원하기 이전에 타인이 먼저 특허출원하면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특허가 거절되고, 또한 국가마다 공지예외 대상 및 절차가 다르므로 해외출원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지행위에 앞서 각 국가별 공지예외 대상 및 절차를 반드시 체크해야만 한다.

13) 패밀리 특허란 무엇인가?

- 특허는 권리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출원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며, 각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패밀리 특허라 함은 특정의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특허 및 특허 출원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자국출원(원출원)을 기초로 하여 해외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원 출원과 관련된 모든 특허를 패밀리 특허라 한다. 패밀리 특허는 동일한 우선권(priority) 데이터를 가지며, 이에 기초하여 각 국가에 출원한 내용 및 각 국가에서의 출원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 한국 출원을 기초출원으로 하여 1년 (우선권주장출원기간) 이내에 독일과 일본에 각각 파리조약에 기초한 우선권주장출원을 한 경우 독일 출원과 일본출원에는 우선권 정보(foreign application priority data)로서 한국출원번호 및 한국출원일이 기재되며, 3개 국가에 출원·등록된 특허를 패밀리 특허로 부를 수 있다.

14) 선행기술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선행기술조사라 함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수행 전에 연구 기획 단계에서 연구 동향 조사 등을 이유로 선행 문헌을 조사하거나, 또는 연구개발 완료 단계에서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유효한 권리 범위 획득 등을 이유로 선행 문헌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기술조사 대상은 논문 등의 학술 정보 및 특허 정보를 모두

포함하나, 협의로는 일반적으로 특허 정보 조사를 지칭한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종류	표기	URL	특징
국내특허	KIPO	http://www.kipris.or.kr	서지사항, 중간처리정보, 대표도면, 초록, 등 록정보, 심판정보, 공보전문명세서 등의 국내 특허검색 및 전문 조회
국제특허	WIPO	http://www.wipo.org	97년 이후 자료만 제공
미국특허	USP	http://www.uspto.gov/	미국특허공보
유럽특허	EPO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	97년 이후의 자료를 비정기적 (월평균 1회 이상)으로 반영
통합검색	DEL	http://www.delphion.com	국제특허정보제공
	EP	http://ep.espacent.com	유럽특허공개공보, 국제특허공개공보에 대한 정보
	WIPS	http://wips.co.kr	국내 및 해외특허 검색 일본문헌의 경우 한국어번역문 서비스제공

- 선행기술조사는 국제특허분류(IPC)를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앞의 두 가지를 병행하여 수행하게 된다. 특허청 (<http://www.kipo.go.kr>)이나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ris.or.kr>)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검색이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 조사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15)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가 기술이전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상세 사항을 문서화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계약서에는 이전 대상 기술의 내용 및 범위, 계약 기간, 계약의 효력, 기술이전 방식, 기술이전 대가와 그 지급 방법, 개량기술의 처리, 비밀유지, 분쟁해결 방법, 계약의 해지, 계약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제시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시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은 가급적 대학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기술이전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학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 조건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의 기술이전 계약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 체크 리스트〉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 명칭과 본점 소재지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확인)
계약기술의 정의	계약기술을 명확히 명기한다. (기술명 / 특허번호 등)
기술이전 지원	계약 후 진행될 기술이전 지원 및 자문 내용 구체화한다. (무상지원 기간, 자문횟수, 연구자 파견시 인원, 기간, 경비처리 등)
기술이전 방식	양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기간 / 지역 or 제품 한정 등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 방법 (일시불 or 선급기술료 + 경상기술료) 경상기술료 계산방법 및 납부시기와 회계자료 검사 방법
개량기술	개량발명에 대한 공지 / 공동소유 여부 / 실시권 포함 여부 등
비밀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 취득에 따른 보안장치 (기간 / 손해배상 형태)
분쟁해결 방법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등)
계약의 해지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 규정 (유예기간 및 서면통지 여부)
협약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의 협의 방법

16) 기술이전에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는 무엇인가?

- 전용실시권은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통상실시권은 독점적 실시가 아닌 차이점이 있다. 전용실시권은 제3자 실시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므로 그 효력은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반면 통상실시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고, 설정계약 체결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등록할 필요는 없고 임의로 등록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전용실시권은 배타성을 갖는 물권적 권리이므로 전용실시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그 침해 방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비교구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락자(Licensor)	특허권자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특허청 등록의 성격	효력발생요건	제 3자 대항 요건
법적 성격	물권적 성격	채권적 성격
허락자의 자기실시여부	불가	가능
동일 내용 추가 실시계약	불가	불가(독점적통상실시권), 가능(비독점적 통상실시권)

17) 기술이전된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대학의 책임은 어떠한가?

- 특허권 양도계약 및 실시권 설정계약은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계약이다. 그리고 해당 계약이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공유자의 동의 등)에 위반하거나 「민법」의 법률행위의 무효규정(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약은 유효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만약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무효로 될 것임을 알고 있는 상태(예를 들면,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된 권리)에서 특허권 양도계약을 하였고,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매수인은 추후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시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 지는 계약상의 의무는 실시권자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음을 약속하는 부작위의무이기 때문에 향후 특허권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되거나 특허발명이 실시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이미 받은 실시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실시권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실시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 특허권의 양도 내지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후에 특허 청구범위 전체가 무효로 되면, 계약 또한 원시적 불능(특허무효로 인해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양도 또

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됨)에 해당하여 특허권자는 「민법」 제535조에 의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특허권자가 계약체결 시에 무효될 것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특허권은 국가의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된 권리이고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가 무효될 것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은 특별한 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특허권자에게 특허무효에 대한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양수인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계약으로 받은 금액(양도의 대가로 수령한 대금, 전용실시권 설정의 대가로 수령한 실시료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한편 특허권 양도 및 실시권 설정 시 특허권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확립된 판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특허권 양도계약 및 실시권 설정계약서에 특허권자의 면책조항(계약 대상 특허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특허권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시한 조항) 및 불반환조항(계약 대상 특허가 계약체결 이후에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기 지급된 금원을 반환하지 않음을 명시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8) 기술이전 기여자 인센티브 지급 근거와 지급 규모는 어떠한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25호)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제2항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40호)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배분) 제2항에서는 1호에서는 연구자는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이상, 2호에서는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은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이상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19) 대학 TLO가 연구자 및 연구실에 제공해야 할 서비스는?

○ 대학 TLO의 존재 및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적인 기술이전이다. 기술이전을 최종의 목표라 한다면, 최종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의 중간 목표와 계획을 관리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2000년대 들어 대학 TLO 역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기획에서부터 기술생산, 기술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여 자체 기술검토 인력 등을 확보하고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연구실을 대상으로 특허맵, 연구로드맵의 작성을 지원하고 연구방향을 파악 및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연구기획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기획 의도와 연구방향은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기술이전으로 연결이 된다. 일반적으로 R&D의 단계는 연구기획, 연구프로젝트 수행, 기술이전까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연구기획 단계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기획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각종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연구사업 착수 이전에 연구사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수행방법을 검토하고,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로서,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지도(MAP) 또는 기초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기획대상 조사단계 : 착수 대상 연구사업 분야 및 동향에 대한 사전 분석
- 연구기획 수립단계 : 기획대상 확정, 추진목적 및 추진체계 정립, 국내외 기술동향, 추진사례, 기대효과 등을 분석, 연구기획을 위한 연구책임자 및 관련 전문가 파악, 관련 부처와 공동사업 가능성 타진
- 연구기획 실시단계 : 연구기획 책임자의 선정 및 자체 기획위원회 구성, 연구기획사업의 공개를 통한 공정성과 관련 분야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로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기획실시, 연구사업의 목적, 추진체계 등의 수립

○ 연구프로젝트 수행 단계

연구프로젝트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기술개발의 활동으로서, 개발의 목표, 자원의 투입, 추진 일정, 수행방법 등 개발계획에 대한 전문

조직의 심의를 통하여 그 기대치를 구체화하여 평가하고 수행결과를 보고하도록 선정한 과제 또는 착수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연구제안단계 :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개발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제안을 하는 단계
- 연구계획 단계 : 프로젝트 목표달성을 위한 상세 프로젝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연구제안서 항목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도달 목표를 수립
- 연구개발단계 :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R&D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계이며, 핵심 기술 등을 확보하고 검증된 기술을 자산화하는 업무를 수행, 또한 개발현황을 점검하고, 변경사항을 확인하며, 종료 및 완료에 대한 보고서를 관리

○ 기술이전 및 사업화 단계

TLO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연구 전 주기 중의 단계이다. 권리화된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기술 수요자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 단계에 대한 진행 평가 및 기술의 현 단계를 파악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연구의 전 주기에 따른 TLO의 업무는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연구자의 업무에 대한 서비스와 우수한 기술 확보 그리고 이전사업화라는 전략적 최종목표를 고려한 TLO의 추가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

단계		지원 서비스
연구기획	기획조사	-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 특허출원동향 정보알림 서비스 -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정책적 방향 정보수집 및 제공
	기획수립	- 해당 연구실 특허맵 작성지원 - 연구실 연구로드맵 작성지원
	기획실시	- 해당연구의 연구로드맵상의 위촉 파악 및 정보제공 - 기술이전 목적 지향적 연구방향 제시 - 유사 연구개발 진행 기관 동향 파악 및 정보제시 - 관련 수요기업 발굴 및 사전 스크리닝

단계		지원 서비스
연구개발	연구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 제안, 사업 타당성 검토 - 시장 규모 및 성장률, 경쟁관계, 유사연구분야 분석 - 기술개발 전략 수립 - 중장기 연구실의 기술로드맵과의 적합성을 검증 - 예상 수요기업과 연구실의 미팅 및 연구개발 방향 점검 및 전환 유도 - 각종 정부규정 및 사전 제도적 정보 제공
	연구계획 및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목적별 연구개발 진행단계 상호체크 - 기술 분야 전문가 협력팀 구성 지원 - 기술 확보방안 수립 및 필요수준 검토 - 핵심기술 등의 확보 및 권리화(자산화) - 연구노트제공(교육) 및 연구실 비밀정보 관리 교육
	연구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물의 목적적합성 검토 - 수요기업과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성공여부 판단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가치평가(사업성 및 시장성을 위주로) - 계약서 검토 및 협상 - 계약 체결 지원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도의 범위 선택 - 경상기술료를 포함한 기술료의 징수 - 추가 연구개발계획 지원 및 전략 수립

- TLO의 업무는 연구 전 주기를 고려한다면 범위는 광범위해진다. 대학마다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산학협력단은 연구지원부문, 연구진흥부문, 산학협력부문, 기술사업화부문 등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TLO가 연구 전 주기의 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광범위한 서비스를 수행할 것인지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실에 맞는 조직체계구성과 업무분장 등을 통하여 지원서비스의 양과 질을 선택해야 한다.

20) 기업과의 산학협력 계약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구분	기업체 요구	대학의 대응
연구 성과의 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지급의 대가로 독점 소유 · 연구결과물에 대해 독점 실시 · 개량기술에 대한 소유권 요구 · 연구 이전의 기존 보유기술에 대해 무상 사용권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의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발명에 대한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대학 단독, 또는 공동 소유 · 기업에 독점 실시를 줄 경우 대학의 불실시에 대한 보상 필요 · 개량기술도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발명에 대한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권 귀속 · 기존 보유기술을 실시할 경우 별도의 계약 및 보상 필요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보상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자가실시의 경우 일정률의 보상금 필요 · 제3자 라이선싱 통한 수익창출의 경우 소유권 지분에 의한 수익배분 필요
보증 및 면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결과물의 제3자의 권리 비 침해 보증 요구 · 분쟁 발생 시 기업을 면책시키고 손해 배상할 것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 및 손해배상 불가
비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 비공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 목적의 공개 (논문 등)
유사 연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와 동일, 유사목적의 연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연구 제한 불가 · 연구 특성상 제한 필요 시 합리적 기간 선정 필요 (예: 특허 출원시까지)

21) 특허맵이란 무엇이며, 활용목적과 용도는 무엇인가요?

- 특허맵(Patent Map)은 특허 정보(서지 정보, 기술적 정보, 권리 정보)를 정리하고 가공·분석한 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다각도로 분석한 내용의 총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허맵은 다양한 목적으로 작성될 수 있다.

- 업계 전체의 기술을 파악하고 기술의 변화를 분석하고, 자사의 입장과 비교하여 대책을 세움
- 기술개발전략을 세우는데 효과적임. 새로운 사업 또는 연구 방향을 결정
- 시장 동향, 상품의 변혁과 흐름을 파악
- 경쟁 회사(연구팀)의 기술, 상품의 개발 동향, 변화의 흐름을 파악
- 타사의 이권을 자사가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특허분쟁을 미리 막음
- 특허내용에서 기술의 핵심 포인트, 기술 상호 간의 연관성을 파악
- 공백 기술을 발견하거나 개발
- 기술 매매(기술이전, 기술 제휴 등) 시, 클레임이 발생할 때 교섭 자료로 활용
- 정보 제공,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의 자료로 활용

○ 특허맵은 특허정보를 통하여 특정 기술 분야의 동향 및 수준 파악은 물론, 기술의 수명 주기 상의 위치 파악, 해당 기술에 대한 주요 연구팀 또는 기업 정보 획득 및 그 영향력을 평가하여 현 상황의 진단 및 대응방안까지도 제시하는 방대한 지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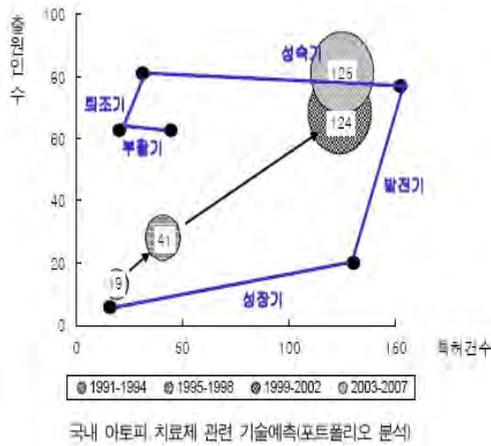
〈바이오칩 관련 세계 특허 등고선〉



출처) BT 기술동향보고서(2005-6),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특허등고선을 통해서 어떤 기술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인지 또는 미개척 분야는 어디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기술 흐름에 관한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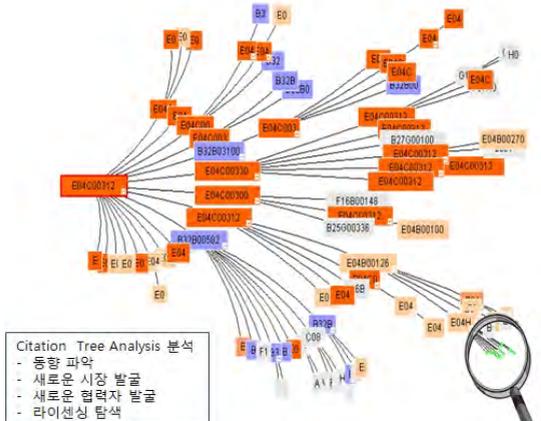


〈주요 출원인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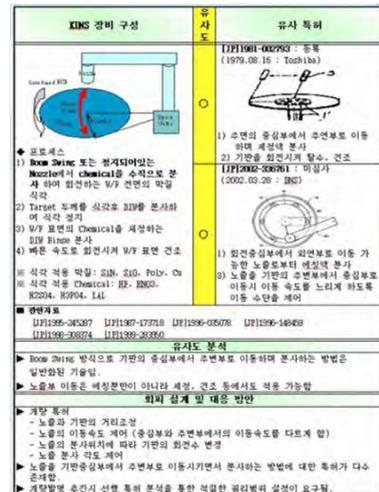


- 해당 기술이 기술 흐름 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 기술을 리드 하고 있는 연구팀 또는 기업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인용정보 분석〉



〈기술 관련 유사 특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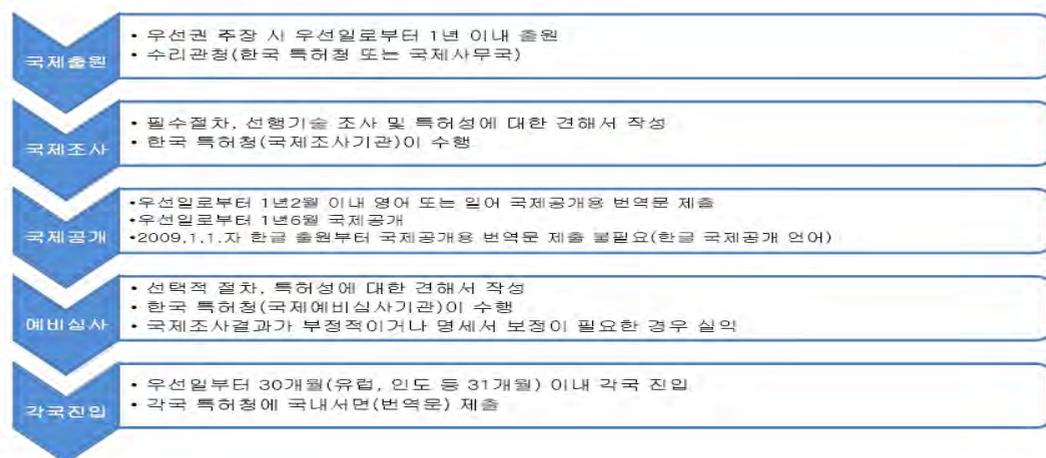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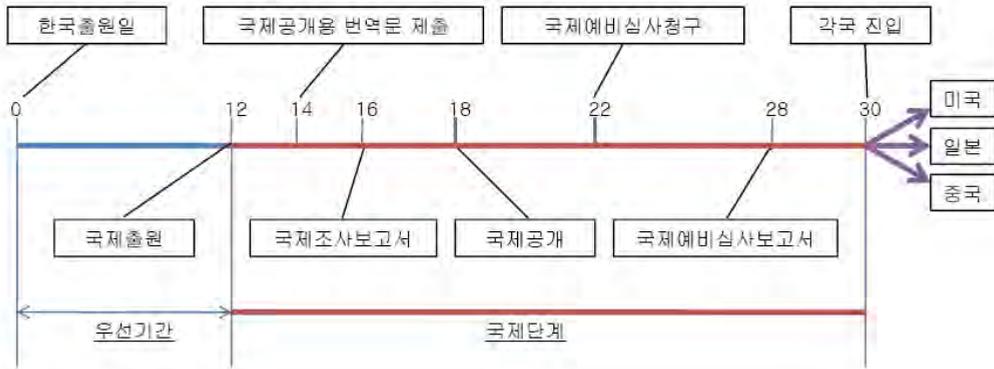
- 인용정보를 활용하여 기술발전의 동향을 파악할 수도 있다. 대학은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 자산의 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특정 기술 그룹을 형성하는 경쟁력이 있는 기술 분야를 선별할 수 있다. 라이선싱 대상 기술 선정 및 중점 관리 대상 특허 선별에 유효하다.

22) PCT출원이란 무엇이며, 장단점 및 출원절차는?

- PCT출원(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한 나라 사이에 특허출원을 쉽게 하기 위해 출원인이 회원국 중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한 PCT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PCT출원일이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5 현재 PCT회원국은 148개국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지만, 대만 등 일부 국가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PCT회원국이 아니면 PCT국제출원을 통해 해당 국가로 진입할 수 없으므로 PCT출원을 통해 해외출원 시 PCT회원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회원국 여부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 홈페이지(www.wipo.i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PCT출원은 국제출원언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한국 특허청, 국제사무국 등)에 제출하여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선택적)를 거친 다음 각 지정국으로 진입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PCT출원 절차도〉





〈PCT출원절차 흐름도〉

- PCT출원은 하나의 PCT출원으로 동시에 다수의 회원국에서 우선권(출원한 효과)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발명의 보정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특허성이 부정적인 경우 진행을 포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해외출원에 대한 비용발생 시기를 한국출원일로부터 약 30개월(또는 31개월) 이후로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한편, PCT출원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PCT출원으로 세계 모든 국가에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PCT출원 후 개별 국가로 진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도 없이 PCT출원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 또한 PCT출원은 국제단계를 거치므로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등록받을 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국제조사 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과 지정국 특허청에서 이중으로 특허심사를 받으므로 사건에 따라서는 직접 출원보다 특허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PCT출원 시 한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지정할 경우(자기지정), 선출원(한국 출원)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되므로 국제출원서 작성 시 지정국에 한국을 제외할 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23) 경상기술료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며, 효과적인 징수방법은 무엇인가요?

- 기본적으로 사후관리를 최소화하고 계약내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는 기술도입자의 법률적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 기술료 미납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조항, 계약이행의 강제성을 대폭 강조할 수 있는 조항, 대가지급 조건의 강제를 위한 벌칙조항, 사업화를 촉구할 수 있는 조항, 매출발생 시점을 구체화하는 조항, 최소한의 기술료 보장 조항 삽입, 계약조건의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 조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조항 삽입, 감사·감독 거절에 따른 계약해지 조항, 계약해지 시 원상회복 의무조항 삽입, 손해배상 시 손해배상의 기준 제시 조항 삽입 등이 있다.

- 또한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기술료 징수 납부관리이다. 기술이전 및 기술료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시 최소한 기술료 징수 대장, 경상기술료 납부기일 도래시점 안내, 매출액 등의 확인 협조 의뢰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경상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매년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샘플조사라도 해야만 경상기술료를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래도 경상기술료를 징수하기 힘들면 정액기술료로 바꿔 계약하고, 경상기술료와 더불어 최저기술료 조항을 반드시 삽입한다면 조금 수월해 질 수 있다. 계약과 동시에 최저기술료에 대한 부분은 기간별로 은행도 약속어음을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경상기술료를 책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를 회계정정 및 수정을 통하여 매출액, 순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에 반드시 그 기준을 명시하여야만 한다. 대체로 매출액 기준 경상기술료 %가 순이익 기준 %보다 낮게 책정되어진다. 이는 대학 TLO가 보다 확실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이 가능할 때 판단할 수 있다.

〈참고 : 경상기술료 산출기준 선택배경〉

	총매출액기준	순매출액기준	순이익기준
정의	- 총매출액 : 상품·제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얻는 대가의 화폐금액	- 순매출액 : 총매출액에서 매출 예누리액과 반품 등의 환입품액(還入品額)을 공제한 매출액	- 당기순이익 : 매출수익에서 제조 원가등을 공제한 이익에서 고정 비용과 영업외 손익을 공제한 잔액
선택배경	- 기술적용제품이 기업의 전체 매출액 중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 - 이전기술이 1제품으로 생산가능한 경우	- 기술적용제품이 기업의 전체 매출액 중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 - 이전기술이 1제품으로 생산 가능한 경우 - 해당 계약제품의 예누리액과 반품 등을 확실히 확인 가능한 경우	- 기술적용제품이 기업의 전체 매출액 중 일부만이 계약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초기 고정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당기간 매출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주안점	- 보편적인 경상기술료 책정 방법 - 제품의 총매출액기준임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	- 도입기업의 매출장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도입기업이 매출장부와 회계장부가 일치할 경우 - 기술이전을 통하여 기존제품의 업그레이드로 이용코자 할 경우 - 순매출액 산출식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	- 이익의 정의를 계약서에 명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등) - 초기사업화 기업인 경우 순이익기준 경상기술료 방식 지양 - 상장기업 등 회계처리가 확실한 기업에 사용 - 기업의 이익과 제품의 이익에 차이 구분의 애로사항 발생

- 매출액과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경상기술료의 책정기준은 이전기술의 성질,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편적으로 대학에서는 매출액 기준 경상기술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순매출액보다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는 순이익을 추정하기가 까다롭고, 기업회계처리기준과 회계적 사전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 회계장부와 내부회계보고용이 다를 수 있는 등 확인할 사항이 많고, 순매출액 또한 할인금액, 반품, 재고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상기술료 산출기준에 따른 차이점〉

	매출액기준	순이익 기준
점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채권의 적정성 - 기간 중의 매출액이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가의 공급가액과 불일치할 경우 그 사유 - 수출실적증명원상의 외화표시와의 비교 - 매출계정과 상대계정인 현금,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등 상호연관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 손인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 손인계산서상의 당기제품제조원가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당기제품제조원가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적정성 - 대손상각된 채권의 적정성 유무 - 법인세비용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비용과 일치 여부

나. 기술지주회사 & 창업

1)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하여 출자한 특허의 기술가치평가를 자회사 설립 시 또 해야 하나?

- 원칙적으로는 다시 하는 것이 맞으나, 이는 대단히 비효율적이며 비용과 시간 등의 낭비가 있게 된다. 따라서 정부(교육부)에서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해 출자하는 기술(특허 등)에 대해 기술가치평가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한 특허를 기술지주회사로 출자하고, 이어 평가일(평가서 기재일 기준)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별도의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2)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한 특허를 반드시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나?

- 원칙적으로는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기술지주회사의 특성 상,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기 어렵고, 내외부적인 변수(기술시장, 외부협력파트너 등)에 의해 자회사 설립이 힘들게 된 경우, 출자를 유보하고 라이선싱을 할 수도 있다. 물론 1차 라이선싱을 하고, 뒤이어 출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2011년 산축법의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한 것에 기인한다.

3)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설립할 시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절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기술가치평가(법률에 근거한 기술평가기관에서 수행), 법인설립 등기비용,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방세(등록세, 교육세, 농특세)의 경우, 설립되는 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 규모 및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 지방)에 따라 상당히 큰 비용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3배 중과세 제도에 따라 등록자본금의 1.2%를 납부해야한다. 이는 자회사 설립 시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예비)벤처기업확인제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특례 등을 통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 준비단계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이다.

4)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이 20%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을 20% 이상의 지분보유로 정하고 있다. 초기벤처기업의 경우 사업의 성장을 위해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자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형태가 아님에도 20% 미만으로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 때, 해당 기술지주회사는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사유에 해당함으로써 절차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교육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20%미만으로 지분이 낮아지는 자회사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제외하게 된다.

5) 교수님이 어느 중소(벤처)기업에 공식적인 임직원은 아니지만 대주주이다. 실험실창업과 어떤 관계가 있나?

-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 활동하는 것이 아닌 지분(주식)의 소유만으로 겸직허가 및 기타 창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다수의 관련 법률에서는 교원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에 대하여 해당 학교의 규정 및 학교장의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교원이 특정기업의 대주주(또는 과점주주)일 경우, 실질적 경영자(경영실권자)로 간주하여 창업에 해당하는 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기업에 대한 보증평가를 실시 할 때, 대표이사가 전문 경영인이고 대주주(또는 과점주주)가 별도로 존재하면 대주주(또는 과점주주)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 이는 불법(또는 편법)적 기업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교원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기존 법률(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직무발명으로 발생하는 특허 등 연구성과물이 외부기업에 적법하지 않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도 포함된다.

6)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부터 주식을 기부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 대다수의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성공불제, 성공부담금 등의 이름으로 입주기업에게서 소정의 주식(지분)을 기부(약정) 받는다. 보통의 경우 입주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며, 각 센터들의 내부 규정에 따라 특정 시점에서 해당 입주기업의 주주명부에 등재하게 된다. 이 때, 입주기업이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으로 주식 기부증서, 주권미발행확인서, 주주명부 등을 통해 해당기업의 주식보유를 확인하게 된다. 더불어 산학협력단 회계에 주식취득을 반영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일반적인 비상장기업의 주식취득 절차가 완료된다. (세금 납부의 경우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센터)별로 주식취득의 시점을 달리하고 있으며, 세부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산학협력단 회계담당자 및 회계사, 세무사 등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산학연계 및 인력양성

가. 가족회사

1) 가족회사 가입 시 필요사항은 무엇인가?

- 가족회사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대학마다 상이하며, 기업인(개인/법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제출과 지도교수 매칭, 상호 협약을 통해 최종 가입이 승인된다.

2) 가족회사 가입 진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되, 협약서의 경우 가족회사 직인이 있는 원본 2부를 방문·우편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1부는 대학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최종 승인 후 가족회사 증서 등의 발행과 함께 완료된다.

3) 가족회사 등급은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가 될까?

- 가족회사 참여 실적에 대한 평가항목별 자료를 센터 내부 자료와 관련 부서에 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 실적을 반영한다. 반영된 데이터를 대학에서 정한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등급별 점수 기준에 따라, 가족회사 등급을 생성한다.

4) 산학협력협의체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나?

- 산학협력협의체체는 가족회사와 대학·연구소·정부기관 등 여러 주체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상호간의 교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및 산업기술의 동향과 예측, 전문 기술 노하우 전수를 위한 목적 지향적 모임이다. 산업의 지역별, 업종별, 직능별 유사한 기업체, 연구소 지방정부, 유관기관들과 교수들의 소모임 역할을 하며 정보교류를 통해 상시적 네트워크 모델을 완성시키는 협의체이다.

5) 가족회사 상담카드의 관리 방법은?

- 가족회사 상담카드는 가족회사의 애로사항·참여 희망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한 일종의 기록물로서 상담과 상담카드 작성을 통해 가족회사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가족회사 수의 증대와 지원 효과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에서는 상담카드를 접수, 등록, 승인, 지도비 지급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나. 계약학과

1)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대학)”이란?

-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기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며,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¹⁾ 각호의 학교를 말함

2) 각종학교 및 기능대학도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가?

- 각종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학교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1) 산촉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3.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6.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에 해당되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각종학교는 학위과정에 해당하는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 기능대학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전문대학 과정인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란?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의거 산업체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경비의 일부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산업체 최소 부담금 50%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 산업체 부담금에는 계약학과 현장실습 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에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산업체가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학과 운영경비의 20% 이내의 현물도 포함하는 것이다.

4)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 체결의 주체는?

- 계약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체의 요구 및 의뢰가 있어야 설치·운영이 가능하므로 계약학과 설치 주체는 산업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한 후 입학원서에 산업체 등과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학생을 직접 모집하는 행위는 계약학과 제도의 설립 취지와 다르며, 위법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5)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상시 근로자”란 무엇인가?

- 상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²⁾ 및 단시간 근로자³⁾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6) 운영요령 제2조 제2항 제5호의 “사업주 단체”란 무엇인가?

-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지자체에 법인 등록되어 있고, 사업주 단체가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산업체 대표와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사업주 단체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산업체를 회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산업체는 사업주 단체에 회원 가입하여도 계약학과를 설치 의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예)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와 관련이 있는 고객업체나 납품업체 등은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가 아니며,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음

7) 운영요령 제2조 제2항 제5호 후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8조에 따라 재정 지원 하는 경우를 말하며,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한 근로자를 말함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농·수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농지원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

8)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학위과정은?

- 당해 대학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학위과정에 한하여 산업체와 계약으로 산업학사⁴⁾·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한편,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은 수월성 교육목적의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직업교육훈련 및 재교육 목적을 위한 계약학과 제도에서는 설치·운영이 부적격하므로 제외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는 학위과정이 아닌 계약학과만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9)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박사과정으로 변경하여 선발할 수 있는지?

- 산업체의 수요에 따라 설치한 학위과정을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석사과정을 박사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산업체와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또한, 계약학과의 학위과정과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위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⁶⁾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호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간”이란?

- “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은 산업체가 계약학과 학생으로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

4) 산업학사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대학인 “기능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함에게 수여하는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위임

5)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소속 직원의 재학 및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입학부터 졸업까지)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하고,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설치·운영계약서”에도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학과는 총 입학정원에 의한 정규과정인 아니며 산업체와의 계약기간 동안에만 별도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 설치·운영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면서 기간을 자동 연장하거나 최초(신설)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을 매년마다 정례적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와 다르며 부적절하다.

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7항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란?

- 계약학과와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학과 산업체간 계약으로 정하여 학칙에 기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계약학과 설치 운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산업체에서 요구하거나 의뢰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수업일수 및 학기 등을 감안하여 정해야 한다.

12) 계약학과와 모집정원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에 의거 계약학과는 모집정원 외로 설치·운영
 - 채용조건형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재교육형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당해 대학의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을 책정한 후 학칙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3)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도입된 제도로써 설치·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설치기준 완화

-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 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나 계약학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도록 소유주체 완화(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6항 제4호)
- 학과·정원 증설·증원시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3 제3항)
- 단, 원격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4) 재교육형 계약학과 입학자격은?

- 학위과정별 입학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산업체의 소속 직원으로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의 입학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재교육형은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의 근로자에게만 입학자격이 부여되며, 여기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근로자도 포함된다.
- 해당 산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협력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입학 자격이 없다.

15)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학생과의 합의를 통하여 학생 납부금을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에게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6) 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경비의 산정 기준은?

- 산업체 부담 경비는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는 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없다.
-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실질소요경비를 산출하여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우선 정하고 나머지 경비를 장학금 등의 별도 명목으로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 국가장학금 혜택은 학생에게 주어져야 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체 부담금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

17)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 계약학과 운영기간 만료 이전에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운영 계약서상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 또는 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운영요령 제11조)
- 이 경우 계약학과 학생을 일반학과 학생으로 학적 변경을 할 수 없다.

18) 계약학과 등록 학생이 계약 산업체에서 퇴사한 경우, 타 산업체 또는 본인 부담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가?

- 계약학과는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체 교육경비 부담을 전제로 계약에 따라 설치하며,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산업체 소속 직원의 신분이 상실되어 계약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운영요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입학을 취소하거나 제적 처리해야한다.
-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전제인 대학과 산업체와의 계약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비록 타 산업체나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학적을 유지할 수는 없다.
-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학칙 및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 부담금은 계약체결 시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9)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 계약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산업체가 요구하거나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체 소속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수자격이 있는 자”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20) 계약학과의 수업 방법은?

- 계약학과는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수업을 할 수 있다.
- 다만, 출석수업은 전체 수업의 5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격대학은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을 합하여 20%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인정(승인)한 계약학과로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계약학과에 한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 범위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수업의 비중을 완화하여 체계적 현장훈련(S-OJT)⁷⁾ 과정 등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21) 계약학과에 입학한 이후의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8항에 계약학과에 입학한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학과에 입학한 이후에 취득하게 되는 산업체 경력은 인정될 수 없다.

22) 계약학과를 위법하게 설치·운영한 경우 제재 기준은?

-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 2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계약학과 학생이 아닌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S-OJT(Structured-On the Job Training) : 숙련된 직원이 초보 직원에게 업무단위에 관한 역량개발을 위해 근무현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시키는 계획된 프로세스

위반 행위	행정처분의 수준	
	1차	2차 이상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할 허가를 허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감축
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감축
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체 등의 부담금이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감축

23) 행정재제의 일반기준은?

-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모집정지처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산학협력중점교수

1)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형태에 따라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와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된다.

-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방식에 따라 채용형 또는 지정형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구분된다.
- ※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원
- ※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 최초 임용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교원

2)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유형별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유형별 인정기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채용형	지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임용,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 책임강의 시수 감면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경력 제한 없음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지정,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 책임강의 시수 감면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임용 - 책임강의시수 감면 30%

- ※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재임용·승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됨
-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안내('11.9.7) 이전에 임용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 제한 없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3)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범위 중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는 ‘인사혁신처 예규 제5호 (2015.1.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호봉회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붙임 1)를 준용한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호봉회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4)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어디에 소속되어야 하는지?

- 일반 교원과 마찬가지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 내의 학과, 학부 또는 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소속될 수 있다.

5)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시 최소 학력기준이 필요한지?

-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도입 취지가 현장경험이 많은 산업체 경력자의 대학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는 최소 학력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 대학별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공고시에도 석박사 학위 등 최소 학력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산업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

-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는 산학협력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강의시수의 30% 이상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
- 예를 들어, 일반 교원의 책임강의시수가 9시간인 경우,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강의 시수 3시간 이상을 감면받아 0~6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면 된다.
- 따라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현장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 특강, 현장실습지도, 취업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대학에 소속된 자가 연구년 등을 활용하여 민간 산업체에 파견나가 근무한 경우에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 따른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면 민간 산업체에 파견나간 근무한 경우도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8)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되는지?

-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되나, 비전임교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충원된 교원 정원을 활용하여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다만,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 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재임용 기회 보장)로 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임교원 수에 포함한다.

※ 사립대의 경우, 전임교원으로 발령받은 교원에 한하여 전임교원 수에 포함

〈 국립대 기금교수의 전임교원 인정기준(11년 대학정보공시 지침) 〉
 국립대 기금교수 (국립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에 포함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된 자라야 함.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 자(최소 전임강사 수준)이어야 하며, 전일제 (full-time) 근무 계약자이어야 함.
 -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 부설기관 등에 임용 배치된 자는 제외함

9)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상 ‘민간 산업체’ 중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의 범위에 협회나 단체도 포함되는지?

- 각종 협회 및 단체의 경우 ‘비영리(재단,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소관 부처에 등록된 단체라면 민간 산업체에 포함됨(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업체에 한함). 단, 근무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직무인 경우만 인정 가능하다.

10) 직업교육학교 근무경력을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 등 교육기관 이외의 산업체 경력자를 대학에서 임용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직업교육학교 등에서의 근무경력은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 불가하다.

5. 산학협력단의 회계 및 세무

가. 산학협력단 회계

1) 산학협력단 예·결산서도 법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

- 산학협력단은 학교 산하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기에 대학 예·결산 자문기구인 대학평의회의 심의 대상도 되지 않음과 동시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예·결산서 결의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단지 산학협력단은 학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기에 1회 이상의 감사를 받으며, 정관상의 예·결산자문기구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출연을 “설립되는 당시”로 제한하는 이유 무엇인가? 이 경우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

-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출연을 “설립되는 당시”로 제한하는 이유는 그동안 교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던 산학연협력 계약과 관련된 재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 제1항 각 호의 수입)만을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의 다른 재원으로는 산학협력단을 지원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산학협력단이 대학으로부터 연구비 잔액을 이관받았을 경우에는 학교 회계전입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산학연협력 계약과 관련되는 재원이 산학협력단 설립 이후에도 교비회계에서 관리되고 있다면, 조속히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호의 수입이 있는 때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예·결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시스템에 입력 시 심의기구 관련 사항이 있는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가 산학협력단 예·결산 심의기구가 될 수 있나?

- 2015년 개정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예산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의 예산안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학협력단 정관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가 예·결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면 심의기구가 될 수 있다.

4) 산학협력단 추경예산의 절차와 제출시기 및 방법은 어떠한가?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대학 산학협력단은 LINC 사업에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업비 10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중 1억원을 대학에서 채용한 산학연협력중점교수 인건비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산학협력단] 대학에 인건비 지급 시
 (차변) 인건비 10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 수령 및 지급 시
 (차변) 예 금 100,000,000 (대변) 예 수 금 100,000,000
 (차변) 예 수 금 10,000,000 (대변) 예 금 19,000,000
 금 여 10,000,000 제세예수금 1,000,000(원천징수액)

- 산학협력단은 대학에 인건비 지급 시 학교회계전출금 계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인건비는 실제 부담 주체인 산학협력단의 운영계산서에 기재되고 대학은 인건비 입금 시 예수금 처리하고 지급 시 예수금을 상계하므로 운영계산서에 인건비가 표시되지 않는다. 또한 산학연협력중점교수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대학에 있다.

6)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학교의 산학협력단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산학협력단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교지 내 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가?

- 가령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증축 사업을 산학협력단에서 받아 교비자금을 포함하여 집행하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 대학의 건물은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며, 운용주체 또한 대학의 총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집행하다 보면 지분별 공동등기문제, 기본재산의 관리문제 등이 발생되므로 대학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정부기관에서 기업체로 위탁을 하여 기업체와 산학협력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조금 수익과 산학협력수익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 연구결과물에 소유권이 기업체 단독 소유 또는 산학협력단과 공동 소유일 경우에는 대가성이 있으므로 산학협력연구수익, 산학협력단 단독 소유일 경우에는 대가성이 없으므로 지원금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9) 산학협력단에서 소액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시 상각 의제라고 하여 바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면 100만원 이하의 모든 기계기구나 집기비품에 바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맞게 처리하신다면 세법상의 수익사업에서 상각시부인액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0) 산학협력연구비를 계산서 발행을 통해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때 매출채권과 미수금 중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모두 미래에 현금을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계정으로 일반적인 기업회계의 분류에 따르면 일반적 운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등의 수취채권을 매출채권으로 기록하고, 운영외 거래인 자산매각 등에서 발생한 수취채권은 미수금으로 기록한다. 여기서 일반적 운영거래란 법인이 본래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로 산학협력단의 경우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 및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간접비수익이 일반적 운영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이다.

따라서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 중 미회수액은 매출채권으로 계상하는 것이 회계이론상 타당하나 산학협력단에서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연구비 미회수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왔으므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학교기업의 재무제표는 결산 시 산학협력단 재무제표에 합산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학교기업의 매출채권을 산학협력단회계에 합산할 경우 산학협력단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이 기재된다.

11) 산학협력단 계좌로 입금이 잘못되었을 때, 그리고 이 금액을 다시 돌려줄 때 예수금과 가수금 중 어떤 계정을 써야 하나요?

- 가수금은 입금 사유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임시계정으로 결산서 상에는 나타날 수 없다. 이에 반해 예수금은 입금 사유는 확실하나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때 사용하며 임시계정이 아니라 재무제표에 나타날 수 있는 본계정이다. 따라서 산학협력단 계좌로 잘못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 또는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돌려줄 때 가수금 또는 예수금으로 반제 처리하는 과정이 동일 회계연도 안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계정을 사용해도 괜찮지만 입금과 반환이 다른 회계연도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각각 예수금 및 예수금 반제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수금보다는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입금이 잘못 되었을 경우

(차) 예금 ××× (대) 예수금 ×××

- 반환할 경우

(차) 예수금 ××× (대) 예금 ×××

12) 2××1년 3월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기계기구로 처리하였는데 2××2회계연도에 무형자산으로 계정 재분류를 하면서 오류수정 분개를 하려고 한다. 이 경우 어떤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12백만원으로 기계기구의 내용연수는 5년,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2××1회계연도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 2××1년 3월 소프트웨어 취득 시

(차) 기계기구 12,000,000 (대) 예금 12,000,000

- 2××1년 결산 분개 시

(차) 감가상각비 2,4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400,000

○ 소프트웨어는 기타무형자산으로 해당하는데 이를 기계기구로 처리하였다면 오류수정 분개를 해야 한다. 만약 이 오류가 중대한 오류라면 소급법을 적용하여 전기이월운영차손익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을 수정하여야 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오류라면 전기오류수정수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당기 운영계산서에 반영한다.

- 2××1년 올바른 분개

(차) 기타무형자산 12,000,000 (대) 예금 12,000,000

(차) 무형자산상각비 1,200,000 (대) 기타무형자산 1,200,000

- 2××2년 결산 일 수정분개

▶ 중대한 오류일 경우

(차) 기타무형자산 12,000,000 (대) 기계기구 12,000,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2,400,000 (대) 기타무형자산 1,200,000
이익잉여금 1,200,000

▶ 중대한 오류가 아닐 경우

(차) 기타무형자산 12,000,000 (대) 기계기구 12,000,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2,400,000 (대) 기타무형자산 1,2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1,200,000

13) 개정 전 운영계산서에는 무형자산처분이익 또는 무형자산처분손실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었는데 새로운 운영계산서에는 이 계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형자산 처분에 따른 손익은 어떻게 기재하나?

○ 개정된 회계처리규칙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를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보다 실질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처분대금은 지식재산권이전수익으로 표시하고, 처분원가는 지식재산권비용 중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계정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특허권을 양도(장부가액 1,00,000원)하고 양도대가로 55,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원 포함)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한다.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55백만원	(대) 지식재산권이전수익	50백만원
		부가세예수금	5백만원
(차)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1백만원	(대) 지식재산권	1백만원

14)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학협력연구수익의 조건은 무엇인가?

-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된다.

[질의회신] 부가,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5)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기업이 대응투자를 하였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대응투자금액을 어떤 수익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 지자체 지원사업에 기업이 대응투자한 자금은 지원금수익/연구수익/산업체연구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질적으로는 기부금과 동일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산학협력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즉 대가성 여부에 의해 지원금연구수익 또는 산학협력연구수익으로 처리하고 이에 맞는 증빙(기부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을 발행하여야 한다.

16) 산학협력단이 연구를 위해 사용하라고 받은 지정기부금을 연구비로 집행할 경우 어떤 비용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나?

- 기부금수익은 대가성이 없다는 점에서 지원금과 동일한 성격이다. 따라서 기부금을 연구비로 지출할 경우에는 지원금사업비-연구비 내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17) 현금흐름표 양식을 보면 관, 항, 목이 재무상태표나 운영계산서 상의 관, 항, 목과는 차이가 있다. 현금흐름표에서 제시한 관, 항, 목으로는 이 표를 작성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 현금흐름표에서 제시하는 관, 항, 목은 재무상태표나 운영계산서에서 제시하는 관, 항, 목과는 다르다. 즉 후자가 계정과목이라면 전자는 계정과목의 합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금흐름표는 재무상태표와 운영계산서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현금흐름표의 특정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목이나 세세목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계산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재무상태표나 운영계산서의 '목'에 해당한다. 주의할 것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보고는 목까지만 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18) 예수금, 부가세예수금, 제세예수금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되었고 재무상태표에 보고되었을 경우 현금흐름표에는 어떻게 기재되어야 하나?

- 예수금

(차) 예금 100 (대) 예수금 100 : 산학협력단으로 잘못 입금된 금액임

- 제세예수금

(차)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100 (대) 예금 95
제세예수금 5

(차) 지원금연구비 인건비 200 (대) 예금 190
제세예수금 10

- 부가세예수금

(차) 예금 110 (대) 산학협력연구수익 100
부가세예수금 50

(차) 예금 165 (대) 기계기구 200
감가상각누계액 1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
부가세예수금 15

- 질문에서 예수금 100은 상대 계정과목이 예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중 어디에서 속하지 않으나 기타운영외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 제세예수금은 5와 10은 각각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운영활동)와 지원금연구비 인건비(운영활동)와 연관되어 있고 부채의 증가는 현금 유입의 효과가 있다.
- 부가세예수금 10은 산학협력연구수익(운영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부채의 증가는 현금 유입의 효과가 있다. 부가세예수금 15는 유형자산매각(투자활동)에서 발생하였으며 부채의 증가는 현금유입의 효과가 있다.
- 실무적으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제세예수금이나 부가세예수금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일일이 역추적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계정과목을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제세예수금 아래 산학협력인건비 관련 제세예수금, 지원금인건비 관련 제세예수금 등을 별도로 세분화해서 관리한다면 현금흐름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세무

- 1)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연구 용역 등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하지 않았다.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지?
 - 비영리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질의의 경우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취하는 대금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인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인지는 당사자간 협약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2) 산학협력단에서 사회복지사업 즉, 바우처 사업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또한,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일정액을 개인이 부담토록 되어있다. 이것이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에 해당되는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위탁받아 동 사업의 모든 손익(개인부담금 포함)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업을 산학협력단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익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운영만 위탁받고 산학협력단 책임 하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과 경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의 위탁 바우처 사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위수탁계약 내용과 책임과 귀속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참고예규 (법인-335,2010.04.08.)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용(이하 “위탁사업”이라 함)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동 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위탁사업 대행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위탁사업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위탁사업대행에 따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금은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참고로, 바우처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면 사업의 모든 손익(개인부담금 포함)이 면세대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면세 규정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참고판례 (조심-2009구3764,2010.06.29)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는 2007.4.25.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정부가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노인돌봄서비스의 시간당 단가가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인건비와 일부관리비 등 사업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된 실비규모의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노인바우처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이 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예규 (부가-1657,2010.12.14.)

산모·신생아 돌봄비용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3에 따라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산모·신생아)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기구(연구 및 실험실습 시설, 장비 등)를 사용하여 타 대학 등에서 시험분석 등을 의뢰받아 실비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일반적으로 설비자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호(고유목적사업 해당여부, 일시적 공급 여부, 실비 또는 무상 여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4)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소득이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 용역제공은 아래와 같이 소득구분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인적용역 ⇒ 고용관계[있음] ⇒ 근로소득(정규 근로자, 일용근로자)
 \ 고용관계[없음] ⇒ 계속, 반복적으로 직업상 제공 ⇒ 사업소득
 \ 일시, 우발적으로 제공 ⇒ 기타소득

귀 질의의 산학협력단이 보조연구원들의 용역을 제공받고 인건비를 지급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과 보조연구원이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가 없으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다.

용역의 제공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의 3%(0.3% 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2% 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업무에 대한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소득46011-2004, 1996. 7. 12)

5) 산학협력수익으로 구분되는 것은 수익 발생 시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인가?

- 산학협력수익으로 처리한다 하여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것은 아니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은 면세가 적용되므로 계산서 발행대상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용역, 지식재산권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기타산학

협력수익은 일반용역에 해당되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6) 산학협력단의 창업보육센터 임대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어떠한가? 그 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부가세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한가?

- 산학협력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바,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세법상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가산세 추징대상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대사업 등과 같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제가 가능하다.

7)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를 잘못된 경우 법인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구분경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구분경리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바, 비영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 구분경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납부할 법인세액이 조정되어 법인세부담액이 기존 신고내역보다 증가하게 된다면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부록 2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웹사이트



1. 주요 정부기관

주요정부기관	사이트	비 고
교육부	www.moe.go.kr	
미래창조과학부	www.msip.go.kr	
–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공모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keris.or.kr	
– 한국과학창의재단	www.kofac.re.kr	공모정보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www.compa.re.kr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공모정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공모정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www.ketep.re.kr	공모정보
– 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or.kr	
– 한국정보화진흥원	www.ni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www.kca.kr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공모정보
중소기업청	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tipa.or.kr	공모정보
특허청	www.kipo.go.kr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www.kipsi.re.kr	
보건복지부	www.mw.go.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공모정보
– 질병관리본부	www.cdc.go.kr	공모정보
– 국립암센터연구사업시스템	rnd.ncc.re.kr	공모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www.nifds.go.kr	공모정보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www.kaia.re.kr	공모정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www.kict.re.kr	
–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주요정부기관	사이트	비 고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www.kimst.re.kr	공모정보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농림축산식품부	www.ipet.go.kr	
- 농촌진흥청사업관리시스템	atis.rda.go.kr	과제공모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www.ipet.re.kr	과제공모
- 한국농어촌공사	www.ekr.or.kr	
산림청	www.forest.go.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과제공모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문화재청	www.cha.go.kr	
- 국립문화재연구소	www.nrich.go.kr	
환경부	me.go.kr	
-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과제공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과제공모
기상청	www.kma.go.kr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www.kmipa.or.kr	과제공모
- (재)기상기술개발원	cater.re.kr	과제공모
국방부	www.mnd.go.kr	
- 국방과학연구소	www.add.re.kr	과제공모
방위사업청	www.dapa.go.kr	과제공모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국민안전처	www.mpss.go.kr	
경찰청	www.police.go.kr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기획재정부	www.most.go.kr	
국세청	www.nts.go.kr	
조달청	www.pps.go.kr	
관세청	www.customs.go.kr	
통계청	kostat.go.kr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pmo.go.kr	

2.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	홈페이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www.nrcre.re.kr
- 통일연구원	www.kinu.or.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www.kwdi.re.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ww.krivet.re.kr
-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www.stepi.re.kr
- 한국교통연구원	www.koti.re.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산업연구원	www.kiet.re.kr
- 에너지경제연구원	www.kee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ww.kisdi.re.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국가과학기술연구회	www.nst.re.kr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www.kbsi.re.kr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www.kribb.re.kr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www.kist.re.kr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www.kisti.re.kr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www.kitech.re.kr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ww.etri.re.kr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www.kict.re.kr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www.krri.re.kr
- 한국식품연구원	www.kfri.re.kr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www.kigam.re.kr
- 한국기계연구원	www.kimm.re.kr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www.kari.re.kr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www.kier.re.kr
- 한국전기연구원	www.keri.re.kr
- 한국화학연구원	www.kRICT.re.kr
- 한국원자력연구원	www.kaeri.re.kr
- 국가핵융합연구소	www.nfri.re.kr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www.nims.re.kr
- 한국천문연구원	www.kasi.re.kr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www.kribb.re.kr
- 한국한의학연구원	www.kiom.re.kr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www.kriss.re.kr

3. 기관별 RND카드 사이트

기 관	사이트주소
한국연구재단	www.rndcard.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개발사업비카드관리)	rcms.rndcard.com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	www.rcm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www.rcms.go.kr
중소기업청	www.smtech.go.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rndcard.nipa.kr
정보통신정보통신기술협회	rndcard.iita.re.kr
창업진흥원	kised.bccard.com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card.or.kr
한국보건의료연구원	rndcard.neca.re.kr
국립암센터	card.ncc.re.kr
식품의약품안전청	rndcardlg-kfda.co.kr
질병관리본부	kcdc.bccard.com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ndmgr.bccard.com/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rndcard.kimst.re.kr
기상청	rndcard.kma.go.kr
한국기상산업진흥원	www.kmipa.or.kr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http://rndfund.ipet.re.kr/
농촌진흥청	aromi.rda.go.kr
농촌진흥청(종합관리시스템)	atis.rda.go.kr
산림청	http://rndcard.forest.go.kr
고용노동부	card.molab.go.kr
문화체육관광부	card.mc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	ctrd.kocca.or.kr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사업비관리시스템)	card.rnbd.re.kr
서울산업통상진흥원(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	rcms.rnbd.kr
원자력안전위원회	http://rndcard.korsafe.or.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rndcard.kca.kr

4. 연구 및 정보시스템 사이트

관련 기관	사이트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www.stepi.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www.kisti.re.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www.kistep.re.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대학종합정보시스템	www.idino.co.kr
NTB기술은행	www.ntb.kr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	www.uicc.re.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www.nfec.go.kr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중소기업청 기술인정보시스템	techin.sanhak.net
대학산업기술지원단	www.unitef.org

5. 정부투자기관

관련 기관	사이트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한국생산성본부	www.kpc.or.kr
한국산업단지공단	www.kicox.or.kr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6. 연구 및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협(의)회	사이트
전국대학 연구·산학협력관리자 협의회	www.kucra.or.kr
(사)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www.kautm.net
(사)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www.karit.or.kr
서울시산학연협력포럼	www.sforum.co.kr
(사)한국산학연협회	http://auri.or.kr/
수도권산학협력연계망	www.innonet.or.kr
한국산학협력학회	www.ksanhak.org
벤처기업협회	www.venture.or.kr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한국산업기술협회	www.kitanet.or.kr
한국여성벤처협회	www.kowwa.or.kr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www.kait.or.kr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www.technopark.kr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9. 규정 예시
 - 가.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안, 예시)
 - 나. 학술연구위원회 규정(예시)
 - 다. 연구윤리규정(예시)
 - 다.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예시)



■ 연구 및 산학협력 관련 법규

1. 과학기술기본법

- 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2. 학술진흥법

- 가. 학술진흥법 시행령
- 나.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규

1. 교육부

- 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 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 규정

2. 미래창조과학부

-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3. 산업통상자원부

- 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다.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4. 보건복지부

- 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5. 환경부

- 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 규정

6. 국토교통부

- 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

7. 농림축산식품부

- 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8. 중소기업청

- 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운영 요령

9. 식품의약품안전처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 연구윤리 및 연구노트 관련 법규

1. 미래창조과학부

- 가. 연구노트 지침

2. 산업통상자원부

- 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3. 보건복지부

-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4. 농촌진흥청

- 가.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연구노트관리지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9.28.] [법률 제13225호, 2015.3.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産學研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 가. 삭제 <2011.7.25.>
 - 나. 삭제 <2011.7.25.>
 - 다. 삭제 <2011.7.25.>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나. 국공립 연구기관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7. “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8.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9. “자회사(子會社)”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의 수립·시행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7.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8.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감독
 9.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 ②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7.25.>

1. 산학연협력촉진의 중기·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4.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5.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산학연 간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5조 삭제 <1997.3.27.>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

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 ⑤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이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학과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제8조의3(보고·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7.]

제9조(산업자문 등) ①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나 산업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을 요청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과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자문과 연구기기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실험·실습 시설의 확보) ①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자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

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에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

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의2(산학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13조(신기기 등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따른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 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발·생산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개발·생산한 산업체 등은 그 신기기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삭제 <2010.3.17.>

제14조 삭제 <2010.3.17.>

제15조 삭제 <1997.3.27.>

제16조 삭제 <1997.3.27.>

제17조 삭제 <1997.3.27.>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개정 2007.12.21.>

제18조(실험·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

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확보·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私立)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 삭제 <1997.3.27.>

제2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① 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장 산학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2011.7.25.>

제24조(산학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③ 산학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신설 2013.12.30.>

④ 산학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장비·인력·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

- 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填)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3.12.30.>
-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6조(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07.12.21.]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12.21., 2011.5.19., 2011.7.25., 2013.12.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12.30.>

[본조신설 2003.5.27.]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1.7.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

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1.7.25.>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3조(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

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1.7.2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의 사업화 및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④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⑤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12.30.>

1.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기술의 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사업

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3.5.27.]

[제목개정 2011.5.19.]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21.>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③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서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①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등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개정 2011.7.25.>
- ④ 삭제 <2011.7.25.>
- ⑤ 삭제 <2011.7.25.>
- ⑥ 삭제 <2011.7.25.>
- ⑦ 삭제 <2011.7.25.>
- [전문개정 2007.12.21.]
- [제목개정 2011.7.25.]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 ②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기술”은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이어야 하며, 정관을 인증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③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된 기술을 현물출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시의 평가액을 자회사의 현물출자액으로 할 수 있다.
-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7.25.]

[중전 제36조의4는 제36조의5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3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5는 제36조의6으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①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연구개발 활동이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6은 제36조의7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①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라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3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7은 제36조의8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6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6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8은 제36조의9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9(청문) 교육부장관은 제36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9는 제36조의10으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10(「상법」의 준용)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9에서 이동 <2011.7.25.>]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①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같은 호 다목·라목의 연구기관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대학 교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연구기관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대학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7조의3(파견)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원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시 급여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을 가는 사람은 파견으로 인한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7조의4(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① 국가는 연구시설·장비 활용 효율화, 장비운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산업교육기관은 다른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8조(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 등,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연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 등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초 자료의 작성·유지·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40조(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그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4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훈련기관·산업연구기관·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 참가
4.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전문개정 2007.12.21.]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권한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7.25.]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5.]

제45조(비밀유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7.25.]

제46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7.25.]

부칙 <제13225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폐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9.28.] [대통령령 제26551호, 2015.9.2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3.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6.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0.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③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국가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出捐)받은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2. 제1호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이전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제4조(진로 지도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운영과 학생의 진로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敎員)의 배치·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하여 진로 지도 담당 교원과 관계 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이 협력할 사항
3.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진로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개발 또는 제공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 등) ① 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연도별 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계획
 2. 현장실습 등 산학연협력(産學研協力) 증진계획
 3. 산업교원의 연수계획
 4.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산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의 내용 및 평가
 2. 산업체의 현장실습 실시능력의 향상 방안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자료의 개발·공급
4.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
5. 학생의 후생복지
6. 그 밖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교원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기관과 산업현장에서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3.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부전공 과목의 표시를 위한 부전공 연수
4. 연수기관 외의 기관·단체 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산업체등에서의 연수·연구 등 실적의 경력 인정 방안
5. 그 밖에 산업교원 연수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 알선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 알선기관과 산업교육기관의 협조 방안
2. 전문 분야별 기술의 향상 방안
3. 그 밖에 취업 알선 등에 필요한 사항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산학연협력의 실태
2.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과 산업체·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산학연협력에 대한 만족도
3. 산학연협력 담당 교직원 및 관련 시설·설비의 현황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에 따라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한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③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 수는 50명 이하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사무직원은 그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사무직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두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산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명칭
 - 2.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3. 직업교육훈련생의 정원과 선발에 관한 사항
 -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과 부담 방법을 포함한다)
 - 5.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 ③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선발은 실기시험,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업교육기관은 교육훈련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정원은 교원 1명당 학생 수, 학생 1명당 교사(校舍) 기준 면적 등 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 여건과 사회적 인력 수급(需給)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산업교육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계약으로 정한다.
- ⑤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포함시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등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 ③ 계약학과등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학생 선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⑦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 ⑧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설치·운영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2.]

제9조(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9.22.]

제10조(산업자문 등) 법 제9조에 따라 산업체등의 장이 산업자문을 요청하거나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업교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이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으로부터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산업체등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시설·설비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12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1조의2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취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4조(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신기기 및 신기술을 개발·생산한 산업체등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기기로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실험·실습시설 등에 대한 국가의 부담

제16조(국고보조의 기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비의 보조금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등에 드는 경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험·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그 경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현직 교육을 받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교육비 전액

제17조(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
 2.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
 3. 산업교육에 관한 인정도서
-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제1항 각호의 도서 발행에 필요한 총 경비의 10분의 2 이상 10분의 5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장학금의 지급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학금규정」을 준용한다.

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19조(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단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 ②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칙 사본
 2. 산학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

3. 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

제20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조정
2. 삭제 (2014.6.30.)
3.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4. 해당 대학 안에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해당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이하 "실험실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 해당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기술단지"라 한다) 안에 해당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산학협력단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이 활용하여 지급하는 해당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제22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23조(산학협력단의 지출)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3. 제20조 각 호의 업무

제24조(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①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

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25조 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2013.1.1.] 제27조

제28조(산학협력단의 결산)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2.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3. 현금흐름표
4. 부속 서류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시행일:2013.1.1.] 제28조

제29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결산이 확정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학교기업의 소재지) ①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교사시설 또는 교

지 밖으로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안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제34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 지출 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그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과 학교기업의 수
2. 학교기업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 학교기업 관련 직원과 학생의 수

제35조(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그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학교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6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을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의 시설·설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 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으려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미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38조(학교기업의 예산)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의 예산 편성·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할 때에는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과 학생이 학교기업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6.30., 2015.9.25.>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

학기술원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1. 상근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 전용공간을 갖출 것
- [제목개정 2014.6.30.]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업무
2. 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3.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자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업무
4. 자회사의 재원 조달을 지원하는 업무
- 4의2.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사업화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자회사의 홍보, 교육·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7.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산업기술단지 또는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업무
8.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업무
9.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출자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 조성 업무
10.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11. 해당 산업교육기관과 자회사 외의 다른 산업교육기관 및 다른 회사에 대한 기술·경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업무

제44조(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법 제36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7.26.>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실험실공장
3.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

제45조(자회사 주식보유무 예외 사유) 법 제36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기술지주회사가 지분 양도 등으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
2.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
3.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
4.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같은 법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① 법 제36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보수 업무

2. 연구개발 기획 업무

3.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제47조(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법 제36조의7 제1항에 따른 교직원 및 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48조(협력연구소)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인력의 공동활용)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과학기술기초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②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연교수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학연교수의 임용 목적
2.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
3.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에서의 업무 기여

비중

4.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5. 초청기관에서의 연구 공간과 시설·장비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초청기관에서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7. 학연교수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학연교수 임용 중에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 ③ 학연교수에 대한 급여와 법정부담금은 원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이 협의하여 학연교수의 업무 기여 비중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④ 학연교수의 정년과 연금에 관한 사항은 원 소속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 ⑤ 학연교수는 초청기관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은 학연교수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공동활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 또는 정관, 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복무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50조(산학협력 통계의 작성)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산업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학협력 활동 전반을 말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수강료와 교재비 등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

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와 교재비 등의 보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원의 설립·경영자에게 학습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만 한다.

제52조(업무의 위탁)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2014년 1월 1일
2. 제33조에 따른 학교기업 사업종목의 제한: 2014년 1월 1일
3. 제42조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2014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2014년 1월 1일
5. 제46조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 제한: 2014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1. 제11조에 따른 실험·실습 시설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7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제26551호, 2015.9.25.>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제4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④ 및 ⑤ 생략

[별표]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제33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종 분류	학교기업 금지업종(세세분류기준)	업종 수
47	소매업	47222 담배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2개
55, 56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4개
68	부동산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4개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캐블링 및 베틀업	6개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992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3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시행 2015.9.28.] [교육부령 제71호, 2015.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

제2조(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전문개정 2012.1.26.]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을 정하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1.26.,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 가. 설립목적
 - 나. 출자내역 및 비율
 -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임원의 이력서 1부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본조신설 2008.2.4.]

제4조(이의신청) ① 제3조제4항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

제5조(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 ①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계획 신고서 및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폐지)계획서 1부
2.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계약서안(설치·운영계획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본조신설 2015.9.25.]

부칙 <제71호, 2015.9.2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8.24.] [대통령령 제26500호, 2015.8.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4., 2014.8.12., 2014.11.28., 2015.8.2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

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3.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4.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5.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 달성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광고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22., 2014.8.12., 2014.11.28.>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3.2.22., 2013.3.23.>

⑦ 제6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2.22., 2013.3.23., 2014.8.12., 2014.11.28.>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2.5.14.]

제5조(기술수요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

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관점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 또는 외국 정부와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24.>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9.26., 2014.11.28.>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참여연구원 편성표(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 계획
- ⑤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8.12., 2014.11.28.>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 1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

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8.12., 2014.11.28., 2015.8.24.>

1. 최근 3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8.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9.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 삭제 <2012.5.14.>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1.3.28., 2012.5.14.>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②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3절 협약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8.24.>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 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

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5.8.2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11.28., 2015.8.24.>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

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2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9.26., 2014.8.12.>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1의4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2.5.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2.22., 2015.8.24.>

⑥ 비영리법인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5.8.24.>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3.23., 2015.8.24.>

1.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내용

⑧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출 등 간접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⑨ 삭제 <2012.5.14.>

⑩ 삭제 <2012.5.14.>

⑪ 삭제 <2012.5.14.>

⑫ 삭제 <2012.5.14.>

⑬ 삭제 <2012.5.14.>

⑭ 삭제 <2012.5.14.>

- ⑮ 삭제 <2012.5.14.>
 - ⑯ 삭제 <2012.5.14.>
 - ⑰ 삭제 <2012.5.14.>
 - ⑱ 삭제 <2012.5.14.>
- [제목개정 2012.5.14.]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8.12.>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2., 2013.9.26.>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

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한다)
-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⑦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

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4.]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4.>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8.24.>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연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

야 한다. <개정 2013.3.23.>

1.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2.5.14.]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간접비산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26.>

③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영리법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5.1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간접비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2013.9.26., 2014.11.19.>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3.28.>

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28.>

⑨ 위원장은 간접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⑪ 제3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 분야 소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제14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을 대상으로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이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2. 제19조제12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면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연구비 관리·집행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개발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8.24.]

제5절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개정 2014.11.28.>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24.>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4.>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5.8.24.>
[제목개정 2014.11.28.]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

개발성과의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③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지원하고,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적평가 지원을 위한 협의 사항 및 추적평가 표준지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의 지원 및 상호간의 원활한 연계·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목개정 2014.11.28.]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4.11.28., 2015.8.24.>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4.11.28.>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4.8.12., 2014.11.28.>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⑨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2013.3.23., 2014.11.28.>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5.8.2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

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9조제4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2.5.14.>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1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

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5.8.24.>

⑨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1.3.28., 2013.2.22., 2015.8.24.>

⑩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5.8.24.>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2015.8.24.>

⑫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1.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

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개정 2014.11.28.>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11.28.>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1.28.]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4.11.28.>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5.8.24.>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15.8.2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2014.11.28.>

⑦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⑧ 연구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8.12., 2014.11.28.>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2014.11.28.>

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4.>

[제목개정 2014.11.28.]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7.21., 2014.8.12., 2014.11.28., 2015.8.24.>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8.12., 2015.8.24.>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⑤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5.8.24.>

⑧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5.8.24.>

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4.8.12., 2014.11.28., 2015.8.24.>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 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8.12., 2014.11.28.>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⑤ 삭제 <2012.5.14.>

⑥ 삭제 <2014.8.12.>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3.23., 2014.8.12.>

⑧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2014.8.12., 2014.11.28., 2015.8.24.>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8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8.24.>

⑩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개정 2011.3.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

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⑦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5.8.24.>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5.8.24.>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24조의2(보안관리심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 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 의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2.>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 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1.28.>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I급비밀, II급비밀, III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I급비밀, 군사 II급비밀, 군사 III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

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2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계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6(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24조의4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24조의4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14.8.1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2의4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8(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①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24조의5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24조의6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본조신설 2011.3.28.]

[제목개정 2014.11.28.]

제24조의9(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10(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영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4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을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11.28.>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

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희·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5.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하여 연구장비 도입·운영·관리·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3.9.26.>

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1. 인적사항
2. 전공

- 3. 연구분야
- 4. 논문실적
-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⑪ 미래창조과학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11.28.>

⑭ 제1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⑮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 1.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계획
- 2. 평가위원 정보 및 연구개발 참여인력 정보 관리계획
- 3. 연구개발 평가정보 관리계획
-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 5. 연구시설·장비 정보 관리 계획

⑯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9.26.>

-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실적·계획서
-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 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5.8.24.>

⑲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 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 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 ㉖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3.28., 2014.11.28.>
 - ㉗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제13항에 따른 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4.11.28.>
 - ㉘ 제13항에 따른 기관이 제23항에 따른 등록·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4.11.28.>
 - ㉙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 및 제14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유통체계의 구축·운영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4.11.28.>
 - ㉚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16항 제3호의 정보를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

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㉛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발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들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4.11.28.>

- 제26조(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28., 2013.3.23.>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24.>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정책방향 및 종합계획
 4.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되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3.9.26.>
 -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2013.9.26., 2014.8.12., 2014.11.19.>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1.3.28.>
-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28.>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3.28.>
-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4.11.28., 2015.8.24.>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 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

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 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 ③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6.>
-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9.26.>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2013.9.26.>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8.12.>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8.12.>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9.26., 2014.8.12.>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11.28.>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 [본조신설 2014.11.28.]

제27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 [본조신설 2015.8.24.]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5.8.24.>]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8.2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2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4는 제27조의5로 이동 <2015.8.24.>]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2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27조의4에서 이동 <2015.8.24.>]

제7장 보칙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8.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9.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1.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② 연구노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의 개념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12., 2014.11.28.>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2.22., 2013.9.26.>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4.11.28.>

1. 연구 기획·관리·평가
2. 연구개발성과 창출지원·보호·활용
3. 연구윤리
4. 연구실 안전
5. 연구노트
6. 연구보안

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

8. 연구개발비의 집행

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8.12.>

1. 「과학기술기초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그 밖에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역량을 갖춘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8.24.>

⑤ 삭제 <2015.8.24.>

[본조신설 2012.5.14.]

제33조의3 삭제 <2015.8.24.>

제33조의4(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⑧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내외의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본조신설 2013.2.22.]

[중전 제33조의4는 제33조의5로 이동 <2013.2.22.>]

제33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14.]

[제33조의4에서 이동 <2013.2.22.>]

제33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4.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무
5. 제22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8. 제31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12.]

제34조(세부 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 규

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8.24.]

제35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7조의4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본조신설 2014.11.28.]

부칙 <제26500호, 2015.8.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시 우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의 체결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받은 것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제공동연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 관련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세목 학생인건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세목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간접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나 제19조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관한 특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및 2016년에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5.8.24.>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7조제10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 4) 삭제 <2012.5.14>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1)·3)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의2] 삭제(2012.5.14.)

[별표 1의3] <개정 2015.8.24.>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7조제10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마.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 바.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2. 감점 부여항목

-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협약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별표 1의4] <개정 2014.8.12>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5.8.2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p>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p> <p>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p>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p> <p>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p> <p>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p> <p>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p>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p>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p> <p>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학생 인건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 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비·재료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p>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p>

연구 활동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 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 수집, 특허정보 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p>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p>
연구 과제 추진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p>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지급을 위한 수당</p>	<p>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위탁 연구 개발비	<p>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p>	<p>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p>간접비</p>	<p>간접비</p> <p>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p> <p>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p>	<p>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은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p>
------------	--	--

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

		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	---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개정 2015.8.24.>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9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 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질 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별표 2의3] <신설 2011.3.28>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24조의7제2항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 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조치·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갱신·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 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저장·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표 2의3] <개정 2014.11.28.> [시행일 : 2015.1.1.]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23조제8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별표 2의4] <개정 2014.11.28.>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24조의7제2항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전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조치·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갱신·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 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저장·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표 3] 삭제<2012.5.14.>

[별표 4] <개정 2014.11.2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25조제22항 관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 4)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5) 기술요약정보: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질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 [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개발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1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등록·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25조제22항 관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 1) 등록대상: 논문, 특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성과의 등록 범위

-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 4)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5) 기술요약정보: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질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 [유전자(DNA)집, 단백질집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성과의 기탁 범위

-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 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1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이 외에 등록·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4.11.28.>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0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술”이란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공립 연구기관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7.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 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9. “기술자산유동화”란 기술등 및 기술등으로 인한 채권·지분과 그 밖의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10.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

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0.4.12.]

제2장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술자산유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제외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 중 일부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촉진계획은 연간 추진계획과 3년 단위의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⑤ 삭제 <2009.4.1.>

⑥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제6조 삭제 <2009.4.1.>

제3장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의 확충

제7조(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기술인력, 설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진흥원
2.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3.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
4.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5.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④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8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9조 삭제 <2009.1.30.>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 ⑤ 기술거래기관은 제2항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절차, 제4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제5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회사(이하 “사업화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개발·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0.4.12.]

제12조의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① 사업화 전문회사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2.]

제13조(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평가

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 평가·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 설비의 확보, 교재 개발과 교육 시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기술평가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지원과 제3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① 기술 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사에게 기술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4장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5조의2(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1. 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2. 기술이전·기술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3. 기술에 대한 투자
4. 기술거래기관, 전담조직 및 제35조에 따른 기

- 술평가기관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
5.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6.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7. 기술이전·평가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9.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10. 기술의 매입 및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11. 유동화증권의 매입 등 기술자산유동화사업의 추진

12. 기술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정부의 출자지분이 있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자단체
 5.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출연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2.]

제16조(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① 정부는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4.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10.4.12.]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2.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육성사업
 3.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사업
-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18조(기술보호·육성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호·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육성사업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 ① 정부는 공공기술 외의 기술(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술”이라 한다)의 이전이 민간기업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민간기술의 매매를 통한 기술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1조의2(기술등의 기부채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등을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민간기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처분(현물출자(現物出資)는 제외한다)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그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등의 관리·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2.]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보유기술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⑥ 공공연구기관이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4.12.]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2.]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

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3.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그 밖의 기술 및 경영 자문

4. 출자회사에 대한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투자 또는 투자의 유치

5.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또는 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0.4.12.]

제21조의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10.4.12.]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과 잉여금 등을 공공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또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2.]

제22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①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권리화되어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유 기술의 내용 등을 기술진흥원에 등록한 자에게 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23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기술진흥원 또는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진흥원등”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4의 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12.]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

개발에 참여한 기관·기업(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이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공립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3. 기술이전·사업화
4.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관련 업무
5. 전담조직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⑦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 절차·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우선권, 제6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5조(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대상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5장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술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예산
2. 과학기술진흥, 중소기업육성 등과 관련된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補填)
2. 기술평가비용 등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출
3. 그 밖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8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9조(기술이전·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사업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제1호의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양여 및 사용·수익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

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연구개발 과제 의 연구개발자와 그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자 및 참여기업에 그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제32조(기술평가의 활성화)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정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으로 하여금 기술평가 기법을 개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평가 기법을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4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최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6장의2 기술신탁관리업 <개정 2010.4.12.>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1. 삭제 <2012.1.26.>

2. 삭제 <2012.1.26.>

3. 삭제 <2012.1.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14.1.21.>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5.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6.,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⑥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등의 위탁자, 이용자, 그 밖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 “기술위탁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6.>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⑧ 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35조의3(신탁사무의 방법)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한 기술등에 대하여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이익 등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가 신탁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서 신탁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고 위탁자에게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거래의 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지 아니한다.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2.]

[중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5로 이동 <2010.4.12.>]

제35조의4(신탁사무의 위탁)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 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위탁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탁받은 제3자의 선임·관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10.4.12.]

[중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6으로 이동 <2010.4.12.>]

제35조의5(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5조의3에서 이동, 중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7로 이동 <2010.4.12.>]

제35조의6(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위탁자등을 보호하거나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35조의4에서 이동, 중전 제35조의6은 제35조의8로 이동 <2010.4.12.>]

제35조의7(허가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5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4.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등의 목록을 비치·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5조의6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35조의5에서 이동 <2010.4.12.>]

제35조의8(과징금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35조의7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5조의6에서 이동 <2010.4.12.>]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업무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7조(청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3.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취소
4. 제21조의6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5.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6.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전문개정 2010.4.12.]

[제목개정 2012.1.26.]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진흥원·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

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12.]

제41조(벌칙)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삭제 <2014.1.21.>

2. 삭제 <2014.1.21.>

②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2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2.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10.4.12.]

제42조(양벌규정) 법인·기관·단체의 대표자나 법인·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10.4.12.]

부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㉞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㉟부터 ㉟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8.17.]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出捐)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8.17.]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방위사업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4조의2(기술신탁관리업) 법 제2조제8호에서 “기술등의 설정·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등의 납부 업무
2. 기술등에 대한 보호·관리 업무
3. 기술등의 설정·이전에 관한 업무
4. 기술등의 설정·이전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징수 및 분배 업무
5. 기술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무
6. 기술의 수정·개량이나 그 밖에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 및 그에 따른 출원·관리 업무
7. 기술자산유동화사업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0.8.17.]

제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 제2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관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에 관한 연간 추진 계획 및 중기추진계획을 해당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소관 분야별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소관 분야별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제6조 삭제 <2009.10.1.>

제7조 삭제 <2009.10.1.>

제8조 삭제 <2009.10.1.>

제9조(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술의 등록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해당 연구개발자의 부재(不在)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개발이 완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기술개발이 완료된 즉시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본점 소재지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전화번호
2. 해당 기술의 보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3. 기술의 명칭, 내용과 관련 기술의 내용(기술의 이용 분야를 포함한다)
4. 이용 조건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17.]

제10조(실태조사 범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에 관한 자료
 2. 기술이전 방법, 계약 금액 등 기술이전계약에 관한 자료
 3. 기술의 사업화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
 4. 전담인력, 보유기술, 지원제도 등에 관한 자료
- [전문개정 2010.8.17.]

제11조 삭제 <2009.4.30.>

제12조 삭제 <2010.8.17.>

제13조 삭제 <2010.8.17.>

제14조 삭제 <2009.4.30.>

제15조 삭제 <2009.4.30.>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이하 “기술거래사”라 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0조 제2항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보유할 것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것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거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17조(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술거래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한 정부기관과 지원금의 규모 및 용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이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
2. 기술거래유형·기술료와 계약기간 등 기술거래계약에 관한 사항
-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2. 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⑤ 기술거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문개정 2010.8.17.]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 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이전·사업화 계획과 추진 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2. 특허 등의 출원·등록·관리·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
3. 기술이전·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배분
4.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5.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전문개정 2010.8.17.]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 비용

제19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이 경우 기술거래사 2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사업화 지원 실적이 있을 것

3.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4.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것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화 전문회사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 ⑤ 사업화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0.8.17.]

제19조의3(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업화 지원 실적을 말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8.17.]

제19조의4(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업의 경영 · 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는 사업화 지원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2. 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10.8.17.]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 · 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개설 ·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진흥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기술이전 · 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술이전 · 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이전 · 사업화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 · 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4.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 · 사업화 관련 정책 · 기획 · 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5.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6. 해외 또는 민간 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령 교육
2. 기술마케팅 및 경영 교육
3. 기술이전·사업화 실무 교육
4.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기술거래사의 등록 절차와 교육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22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①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업무 등을 위하여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체계, 사업신청절차 및 선정절차, 지원 범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제정하

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17.]

제22조의2(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 법 제1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6.25.>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조신설 2010.8.17.]

제22조의3(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기술진흥원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출연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출연 금액 또는 지원 금액의 규모와 그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17.]

제23조(기술보호·육성사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육성사업의 대상은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창업 후 1년 이내인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육성사업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시험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정보·설비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을 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의 내용
 2. 자금·인력·정보·설비 및 기술 등 지원 내용과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3. 기술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
 2. 기술보호·육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기반 확충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
- [전문개정 2010.8.17.]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연구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구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 [전문개정 2010.8.17.]

제25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 인력 배정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기술료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0.8.17.]

제25조의2(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술등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 등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기부채납을 한 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2. 기술등의 개발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본조신설 2010.8.17.]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법 제21조의3제2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상근(常勤)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갖출 것
- [본조신설 2010.8.17.]

제25조의4(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로 등록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중 대

표기관이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 설립 목적

나. 출자 내용과 출자 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임원의 이력서 1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를 등록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8.17.]

제25조의5(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4제2항 단서에서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출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출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출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가 청구되어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16조의2

에 따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법 제21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8.17.]

제25조의6(기술지주회사의 통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21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이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2010.8.17.]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국가등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9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등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협약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③ 국가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공공연구기관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2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하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전문개정 2010.8.17.]

제26조의2(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장려금의 금액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경우: 절감한 경비의 100분의 50
2. 주요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절감한 경비의 100분의 10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절감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17.]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과학기술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②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填)하는 대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기관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8.17.]

제28조(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대상과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7.]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사용·수익하려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그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부·양여, 사용·수익의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8.17.]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7.]

제32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3명 이상
나.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2.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을 가지고 있을 것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②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에 관한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8.17.]

제33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란 10건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서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술평가정보의 통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8.17.]

제33조의2(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술평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기술·기업 및 시장 정보 등 기술평가와 관련된 정보
2. 가치평가 사례와 등급평가 사례 등 기술평가 사례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기술평가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2. 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③ 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한 제17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8.17.]

제3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① 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탁 인수에 관한 약관
3. 기술이전 유형별 약관
4. 신청 법인·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5. 정관 또는 규약
6. 운용전문인력의 이력 및 조직 구성
7. 재무제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가 제34조제1항제1호의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약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

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2.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신탁관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36조(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36조의2(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법 제3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술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업무
2. 기술등에 대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등의 납부 업무
3. 기술등에 대한 보호·관리 업무
4. 기술등의 설정·이전에 따른 기술료·사용료

등의 징수 및 분배 업무

5. 기술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수익자와 기술신탁관리기관 간에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협의된 업무
[본조신설 2010.8.17.]

제37조(기술등의 목록)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기술등의 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1. 공개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등의 경우: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와 출원 또는 등록 연월일
2. 제1호 외의 기술등의 경우: 기술등의 제목, 기술등이 속하는 분야와 해당 기술등으로 해결하려는 과제

[전문개정 2010.8.17.]

제38조(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등의 목록
2. 해당 기술등의 위탁자와의 신탁 계약기간
3. 기술료 등 이전 조건 및 약관

[전문개정 2010.8.17.]

제39조(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은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대상자가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사실과 부과 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17.]

제42조 삭제 <2012.4.5.>

제43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등록 업무
3.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육성사업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 업무
5.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업무

[전문개정 2010.8.17.]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제43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및 이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변경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및 이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45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제16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3. 제21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4.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에 따라 선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통보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휴업·폐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2. 신탁자와 수익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7.,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신탁관리업의 운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5명 이상 임직원으로 확보하고 있을 것
 - 가. 기술연구개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기술 관련 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출원 또는 심사 대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 제4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신탁관리업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
 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등의 선별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술능력과 기술신탁관리업을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수수료)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4.17.>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9조(행정처분 관리대상) 법 제35조의7에 따른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의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4.]

부칙 <제48호, 2014.2.4.>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2015년 말 개정 예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예산·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금흐름표상의 “기초현금” 및 “기말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2. “취득원가”라 함은 자산의 구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와 당해 자산의 취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3.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치를 말한다
4. “감가상각”이라 함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상각”이라 함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

한다.

6. “내용연수”라 함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예상사용기간을 말한다.
7. “회계연도”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로 한다.

제2장 예산

제4조(예산편성요령)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동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예산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서(「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0조에 따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은 예산을 수령한 이후 산학협력단별 예산 및 학교유형별, 예산항목별 특성 등을 분석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예산)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계약에 의한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추가경정예산)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내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추

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을 수령한 이후 추가경정예산의 특성 등을 분석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내에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현금예산으로 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금예산의 규모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4.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현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현금예산서(추가경정현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경정현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 부속서류는 정관에서 정한 예산심의기구 회의록 사본으로 한다.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예산의 전용)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의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국가 지원금의 집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출연·보조금의 집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회계원칙과 재무제표

제15조(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계정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중요한 회계방침과 계정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할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차익처분계산서(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재무제표는 당회회계연도와 직전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이 규칙 제38조에 따른다.

제17조(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산학협력단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명세표, 별표 2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별표 3의 현금흐름표 계정과목명세표로 한다.

제18조(계정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계정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계정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서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절 재무상태표

제19조(재무상태표) ① 재무상태표는 산학협력단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적립금 및 운영차익으로 각각 구분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또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본금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

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적립금의 적립)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운영차익에서 향후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1. 연구적립금
2. 건축적립금
3. 장학적립금
4. 기타적립금

제22조(적립금에 대한 기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특정기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된 기금은 투자자산의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타기금 등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금에서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은 정관상의 예·결산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계산서

제23조(운영계산서) ① 운영계산서는 산학협력단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산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운영계산서 작성기준) 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수익은 동 수익이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비용은 동 비용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

으로 하고 그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영계산서는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수익, 전입 및 기부금수익,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 운영외수익,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 당기운영차익(또는 당기운영차손)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5조(운영수익의 인식) ① 산학협력단 회계의 운영수익 인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동 연구 및 개발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2. 계약학과 및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산업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동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3.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를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잔금 청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4.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를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동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를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5. 지원금 수익은 연구·개발·교육 등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6. 기부금의 수익은 기부금 및 기부금품을 수령한 날에 인식한다.

제4절 현금흐름표

제26조(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산학협력단 현금의 변동내역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현금흐름표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및 작성방법) ①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세 가지 현금활동의 순 현금흐름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현금의 구성항목 간 이동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중 증가와 감소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며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③ 현금흐름표상의 동일한 거래의 현금흐름이 두 가지 이상의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활동별 현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5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28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무상태표에 기재

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환·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때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제29조(유가증권의 평가) 산학협력단 회계의 단

기매매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평가손익은 당기의 운영외손익으로 한다. 단, 장기투자금융자산과 지배권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재고자산의 평가) 산학협력단의 재고자산

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제31조(대손상각 등)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대손충당금의 표시는 당해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2조(감가상각 등) ① 토지 및 건설 중인 자산

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②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한다.

③ 제1항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의 과목으로 당해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제2항의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33조(부채의 평가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하며 당기손익으로 한다.

④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처리하며 당기손

익으로 한다.

제35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운영차익 또는 전기이월운영차손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②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③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운영계산서의 운영외수익 또는 운영외비용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운영차익이나 전기이월운영차손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제4장 결산 및 보고

제3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매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은 결산을 수령한 이후 산학협력단별 결산서 및 학교유형별, 예산항목별 특성 등을 분석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7조(감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현황 및 회계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단,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학교의 산학협력단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회계관계 법령 등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법령 위반 시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제38조(부속명세서) 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명세서 [별지 제3호의1서식]
2. 단기매매금융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2서식]
3. 매출채권명세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 미수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4서식]
5. 선급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5서식]
6. 재고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6서식]
7. 장기금융상품명세서 [별지 제3호의7서식]
8. 장기투자금융자산 및 출자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8서식]
9. 유형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9서식]
10. 무형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10서식]
11. 특정기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1서식]
12. 매입채무명세서 [별지 제3호의12서식]
13. 미지급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3서식]
14. 선수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4서식]
15. 충당부채명세서 [별지 제3호의15서식]

16. 기본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6서식]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 ②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1서식]
 2. 지식재산권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2서식]
 3. 지원금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3서식]
 4. 기부금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4서식]
 5. 간접비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5서식]
 6.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 [별지 제4호의6서식]
 7. 기타 필요한 명세서

제39조(결산부속서류)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산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정관상의 결산심의기구 회의록 사본
2. 감사보고서

3.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5장 보칙

제40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29호, 2014.4.4>

이 규칙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단, 2013년 회계연도에는 제16조 제2항의 직전 회계연도와의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제1조(2016년 회계연도 경과조치) 국공립대학의 2016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와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로 구분한다. 단, 국공립대학의 경우 2016년 회계연도에는 제16조제2항의 직전 회계연도와의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명세표

1. 자산

과목	해설
관항	목
자 산	
I.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요구불예금과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
2) 단기금융상품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기한이 1년 이내의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
3) 단기매매금융자산	주식,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4) 매출채권	학교기업의 일반적 운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수취채권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액
5) 미수금	산학연협력계약과 운영외 거래(자산매각 등)로부터 발생한 수취채권
(대손충당금)	미수금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액
6) 미수수익	당기에 발생하였지만 수취하지 않은 운영외수익
7) 선급금	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액
8) 선급비용	지급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의 비용에 해당되는 비용
9) 선급법인세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 징수되어 선급한 법인세
10) 부가세대급금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발생한 부가세
11) 기타당좌자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 기타당좌자산
2. 재고자산	
1) 재고자산	학교기업 등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산
II.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1) 장기금융상품	자금운용 목적으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기한이 1년 이상인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
2) 장기투자금융자산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1년 이상 장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공·사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기부받은 주식이 있을 경우 이 계정에 집계)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과목	해설
관항	목
3)출자금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등 비상장된 수익사업체에 대한 출자액
4)기타투자자산	기타의 투자자산
2.유형자산	
1)토지	대지, 임야, 전답 등
2)건물	건물 및 건물부속설비
3)구축물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4)기계기구	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
5)집기비품	책상, 사무용 비품 및 인테리어 설비 등
6)차량운반구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
7)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인 건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비, 설계비 등의 금액(완공 후 해당 유형자산 과목으로 대체)
8)기타유형자산	기타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별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기재하며, 당해자산에서 차감형식으로 기재
3.무형자산	
1)지식재산권	산학협력단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2)개발비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3)기타무형자산	기타의 무형자산
4.기타비유동자산	
1)연구기금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연구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건축기금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을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건축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3)장학기금	장학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장학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4)기타기금	연구·건축·장학기금 이외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기타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5)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등
6)기타비유동자산	1) ~ 5)를 제외한 기타의 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2. 부채와 기본금

과 목	해 설
관 항 목	
부 채	
I. 유동부채	
1. 유동부채	
1)매입채무	학교기업의 일반적 운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등의 지급채무
2)미지급금	산학협력계약과 운영의 거래(자산취득 등)로부터 발생한 지급채무
3)선수금	계약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
4)예수금	일시적 제예수액
5)제세예수금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일시적 제세예수금
6)부가세예수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세
7)미지급비용	당기에 발생하였지만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8)선수수익	수취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 이후에 속하는 수익
9)기타유동부채	기타의 유동부채
II. 비유동부채	
1. 비유동부채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는 부채
1)임대보증금	장비 및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2)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회계연도말 현재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금액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 표시함
3)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비용으로 계상한 준비금
4)기타비유동부채	기타의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기 본 금	
I. 출연기본금	
1. 출연기본금	
1)출연기본금	산학협력단의 기본금으로 출연된 금액
II. 적립금	
1. 적립금	
1)연구적립금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연구기금과 일치하여야 함.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과 목		해 설
관	항 목	
	2)건축적립금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을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건축기금과 일치하여야 함.
	3)장학적립금	장학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장학기금과 일치하여야 함.
	4)기타적립금	연구·건축·장학기금 이외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기타기금과 일치하여야 함.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계상한 준비금
III.운영차익		
1.처분전운영차익		
	1)전기이월운영차익	전기로부터 이월된 운영차익으로서 전기말 현재의 차기이월운영차익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당기운영차익	운영계산서상 당기운영차익
기본금총계		
부채와기본금총계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1. 운영수익

과목	해설
관항목	
I. 산학협력수익	
1. 연구수익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 대가성 판단기준 : 결과물의 소유권을 산학협력단이 취득하면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 정부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2)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2. 교육운영수익	
1)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
3. 기술이전수익	
1)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지식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단, 출원 중인 지식재산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포함함
2) 노하우이전수익	노하우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치된 연구 및 실험실습시설·장비 등의 사용료
2) 임대료수익	토지및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수입
5. 기타산학협력수익	
1)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의 산학협력사업수익(산업자문 등)
II.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1) 정부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
2)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
2. 교육운영수익	
1) 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중 산학협력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운영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1) 기타지원금수익	기타의 지원금사업수익
III. 간접비수익	
1. 산학협력수익	
1) 산학협력 연구수익	산학협력 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 기타 산학협력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과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을 제외한 산학협력수익 중 간접비수익

과목	해설
관항	목
2. 지원금수익	
1) 지원금연구수익	지원금 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 지원금교육운영수익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기타 지원금수익 중 간접비수익
IV. 전입및기부금수익	
1. 전입금수익	
1) 학교법인전입금	학교법인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2) 학교회계전입금	학교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3) 학교기업전입금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4) 기타전입금	기타 기관에서 전입되는 금액
2. 기부금수익	
1) 일반기부금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
2) 지정기부금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3) 현물기부금	현물로 받은 기부금
V. 운영외수익	
1. 운영외수익	
1) 이자수익	각종 예금의 이자수입
2) 배당금수익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 중 투자주식,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익
3) 유가증권평가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4) 유가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장기투자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5) 외환차익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6) 외화환산이익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7)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8) 대손충당금환입	매출채권, 미수금 등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계상액으로 기 계상한 충당금의 환입액
9) 전기오류수정이익	과년도 과다집행 분이 회수 조치되는 등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않고 환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환입하는 경우의 환입액
11) 기타운영외수익	기타의 운영외수익
운영수익총계	

※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의 수익인식에 있어 진행기준을 적용할 때 연구간접비는 간접비관리통장으로 이체하는 시점, 연구기자재취득비는 연구기자재를 취득하는 시점에 각각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음

2. 운영비용

과 목	해 설
관 항 목	
I. 산학협력비	
1. 산학협력연구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
1) 인건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학생인건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3) 연구장비·재료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사용료 및 연구재료비 (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4) 연구활동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5) 연구과제추진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과제추진비
6) 연구수당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7) 위탁연구개발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2. 교육운영비	산학협력교육과정(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1) 인건비	산학협력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로, 수당 등
2) 교육과정개발비	산학협력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3) 장학금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4) 실험실습비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5) 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3. 지식재산권비용	
1)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지식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 단, 자산화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은 포함됨
2) 산학협력보상금	기술이전 및 산업체 교육등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중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 등)
4. 학교시설사용료	
1) 학교시설사용료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5. 기타산학협력비	
1) 기타산학협력비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II. 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1. 연구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비
1) 인건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학생인건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3) 연구장비·재료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사용료 및 연구재료비 (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4) 연구활동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5) 연구과제추진비	지원금으로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과제추진비

관	과 목	해 설
항	목	
	6)연구수당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7)위탁연구개발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운영비
	1)인건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2)교육과정개발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3)장학금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4)실험실습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5)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3.기타지원금사업비	
	1)기타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와 교육운영비를 제외한 기타비용
III.간접비사업비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제비용
	1.인력지원비	
	1)인건비	연구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
	2)연구개발능력률성과급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률성과급
	2.연구지원비	
	1)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의 운영경비
	3)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안전교육비, 보험료 등)
	4)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장비구입비, 보안교육비 등)
	5)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6)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등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7)대학 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8)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3.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단, 지식재산권으로 자산화된 금액은 제외함)
	4.기타지원비	
	1)기타지원비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기타의 지원비

과목	해설
관항목	
IV.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	
1) 인건비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 등
2)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4) 대손상각비	수취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추정 계상액
5) 일반제경비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기타의 일반관리비용
V. 운영외비용	
1. 운영외비용	
1) 유가증권처분손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2) 유가증권평가손실	단기매매금융자산을 평가한 결과 발생한 평가손실액
3) 외환차손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4) 외화환산손실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5)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6)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시 계상하는 비용계정
8) 기타운영외비용	기타 운영외비용
VI. 학교회계전출금	산학협력단에서 학교회계(국공립대학은 대학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
운영비용합계	
당기운영차익 (또는 당기운영차손)	운영수익총계 - 운영비용합계
운영비용총계	

[별표 3]

현금흐름표 계정과목명세서

과 목		해 설
관	항 목	
I.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운영활동이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사건을 모두 포함한 활동을 말함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투자활동이란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활동을 말함
	1) 투자자산수입	
	2) 유형자산매각대	
	3) 무형자산매각대	
	4) 기타비유동자산수입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재무활동이란 비유동부채와 기본금과 관련하여 재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말함
	1) 부채의차입	
	2) 기본금의조달	
II.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운영활동이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사건을 모두 포함한 활동을 말함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투자활동이란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의 취득활동을 말함
	1) 투자자산지출	

과 목		해 설
관 항	목	
	2)유형자산취득지출	
	3)무형자산취득지출	
	4)기타비유동자산지출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재무활동이란 비유동부채와 기본금과 관련하여 재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말함
	1)부채의상환	
	2)기본금의반환	
III.현금의증감		
IV.기초의현금		
V.기말의현금		

※ 기재상의 주의

1. 현금흐름표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합으로 정의된다.

[별지 제1호서식]

현금예산서

당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전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관	항	과	목	제 xx (당) 기	제 xx (전) 기	증감	산출근거
		목					
I.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투자자산수입					
		2) 유형자산매각대					
		3) 무형자산매각대					
		4) 기타비유동자산수입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부채의차입					
		2) 기본금의조달					
II.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투자자산지출					
		2) 유형자산취득지출					

관	항	과 목	제 xx (당) 기	제 xx (전) 기	증감	산출근거
		목				
		3)무형자산취득지출				
		4)기타비유동자산지출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부채의상환				
		2)기본금의반환				
III.현금의증감						
IV.기초의현금						
V.기말의현금						

※ 기재상의 주의

1. 현금흐름표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합으로 정의된다.

[별지 제2호서식]

추가경정현금예산서

(. . . 부터 . . . 까지)

과		목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관	항	목				
I.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투자자산수입				
		2)유형자산매각대				
		3)무형자산매각대				
		4)기타비유동자산수입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부채의차입				
		2)기본금의조달				
II.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투자자산지출				
		2)유형자산취득지출				
		3)무형자산취득지출				
		4)기타비유동자산지출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부채의상환				
		2)기본금의반환				
III. 현금의증감						
IV. 기초의현금						
V. 기말의현금						

※ 기재상의 주의

1. 현금흐름표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합으로 정의된다.

[별지 제3호서식]

재무상태표

당기 20××년 ××월 ××일 현재
 전기 20××년 ××월 ××일 현재

1. 자산

관	항	과	목	제 × × (당기)			제 × × (전기)		
				목	항	관	목	항	관
자 산									
I.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단기금융상품						
			3) 단기매매금융자산						
			4)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5) 미수금						
			(대손충당금)						
			6) 미수수익						
			7) 선급금						
			8) 선급비용						
			9) 선급법인세						
			10) 부가세대급금						
			11) 기타당좌자산						
2. 재고자산									
			1) 재고자산						
II.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1) 장기금융상품						
			2) 장기투자금융자산						
			3) 출자금						
			4) 기타투자자산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과 목		제 × × (당기)			제 × × (전기)		
관	항	목	항	관	목	항	관
	2.유형자산						
	1)토지						
	2)건물						
	3)구축물						
	4)기계기구						
	5)집기비품						
	6)차량운반구						
	7)건설중인자산						
	8)기타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3.무형자산						
	1)지식재산권						
	2)개발비						
	3)기타무형자산						
	4.기타비유동자산						
	1)연구기금						
	2)건축기금						
	3)장학기금						
	4)기타기금						
	5)보증금						
	6)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2. 부채와 기본금

과 목		제 × × (당기)			제 × × (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부 채							
I. 유동부채							
1. 유동부채							
	1)매입채무						
	2)미지급금						
	3)선수금						
	4)예수금						
	5)제세예수금						
	6)부가세예수금						
	7)미지급비용						
	8)선수수익						
	9)기타유동부채						
II. 비유동부채							
1. 비유동부채							
	1)임대보증금						
	2)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3)고유목적사업준비금						
	4)기타비유동부채						
부채총계							
기 본 금							
I. 출연기본금							
1. 출연기본금							
	1)출연기본금						
II. 적립금							
1. 적립금							
	1)연구적립금						
	2)건축적립금						
	3)장학적립금						
	4)기타적립금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III. 운영차익							
1. 처분전운영차익							
	1)전기이월운영차익						
	2)당기운영차익						
기본금총계							
부채와기본금총계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별지 제3호의1서식]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명세서

(단위 : 원)

계정	예금명	용도	예치금액	만기일	이자율	비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계					
단기 금융상품						
	계					
합 계						

※ 기재상의 주의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보통예금, 별도예금 등 요구불예금 및 만기가 3 개월 이내인 정기예금, 적금 등 단기금융상품을 기재한다.
2. 단기금융상품(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한 1년 이내의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은 계좌별로 「정기예금」, 「정기적금」등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3. 용도는 일시에치, 투자목적 등과 같이 예치의 목적을 간략히 기술한다.
4.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단기매매금융자산명세서

(단위 : 원)

	종 목	1주의금액	주수	취득원가	재무상태표가액	평가손익	비 고
주식							
	계						
채무증권							
	계						
합 계							

※ 기재상의 주의

1. 주식의 종목은 ××회사 주식 등으로 기재하고, 채무증권의 종목은 사채의 경우는 보증사채, 무보증사채로 국·공채인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지하철공채 등으로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3서식]

매출채권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거래처명	내 역	금 액	비 고
외상매출금				
	계			
받을어음				
	계			
합 계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거래처별로 ××매출 등 거래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4서식]

미수금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명	내역	금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거래처별로 미수금 발생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5서식]

선급금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명	내역	금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거래처별로 선급금 발생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6서식]

재고자산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출고액	장부잔액	평가손실	기말잔액	비 고
합 계							

※ 기재상의 주의

1. 장부잔액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기재한다.
2. 기말잔액은 장부잔액에서 평가손실을 차감한 잔액을 기재한다.
3.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7서식]

장기금융상품명세서

(단위 : 원)

예금명	용도	예치기관	예치금액	만기일	이자율	비고
정기예금						
정기적금						
...						
합 계						

※ 기재상의 주의

1. 장기금융상품의 예금명은 만기가 1년 이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으로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8서식]

장기투자금융자산 및 출자금명세서

(단위 : 원)

주식	종 목	1주의금액	주수	취득원가	재무상태표가액	평가손익	비고
	계						
출자금	종 목	액면가액		취득원가	재무상태표가액	평가손익	비고
	계						
채무증권							
	계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주식의 종목은 ××회사 주식 등으로 기재하고, 채권의 종목은 사채의 경우는 보증사채, 무보증사채로 국·공채인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지하철공채 등으로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별지 제3호의9서식]

유형자산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감가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유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기초잔액·당기증가액·당기감소액 및 기말잔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기재한다.
3. 자본적지출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취득원가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증가액 또는 당기감소액을 당기증가액란 또는 당기감소액란에 괄호로 기재하고 증가의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4. 기말잔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미상각잔액란에 기재한다.
5.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10서식]

무형자산명세서

(단위 : 원)

과목	취득원가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무형자산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자본적지출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취득원가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증가액 또는 당기감소액을 당기증가액란 또는 당기감소액란에 괄호로 기재하고 증가의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3.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11서식]

특정기금명세서

(단위 : 원)

계정	용도	예치기관	예치금액	만기일	이자율	비고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타기금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특정기금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기재한 계정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12서식]

매입채무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거래처명	내역	금액	비고
외상매입금				
	계			
지급어음				
	계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채무의 발생원인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13서식]

미지급금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명	내역	금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채무의 발생원인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14서식]

선수금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명	내역	금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선수금 발생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15서식]

총당부채명세서

(단위 : 원)

구분	기초잔액	당기감소액	당기증가액	기말잔액	비고
퇴직급여총당부채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동일 총당부채의 당기증가액과 당기감소액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16서식]

기본금명세서

(단위 : 원)

구분	기초잔액	당기감소액	당기증가액	기말잔액	비고
1. 출연기본금					
출연기본금					
2. 적립금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처분전운영차익					
전기이월운영차익					
당기운영차익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운영계산서

당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전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1. 운영수익

과 목		제 ××(당기)			제××(전기)		
관	항	목	항	관	목	항	관
I. 산학협력수익							
1. 연구수익							
	1) 정부연구수익						
	2) 산업체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1) 교육운영수익						
3. 기술이전수익							
	1) 지식재산권이전수익						
	2) 노하우이전수익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 설비자산사용료수익						
	2) 임대료수익						
5. 기타산학협력수익							
	1) 기타산학협력수익						
II.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1) 정부연구수익						
	2) 산업체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1) 교육운영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1) 기타지원금수익						
III. 간접비수익							
1. 산학협력수익							
	1) 산학협력연구수익						
	2)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3) 기타산학협력수익						
2. 지원금수익							
	1) 지원금연구수익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과 목		제 × ×(당기)			제 × ×(전기)		
관	항	목	항	관	목	항	관
	2)지원금교육운영수익						
	3)기타지원금수익						
IV. 전입및기부금수익							
1. 전입금수익							
	1)학교법인전입금						
	2)학교회계전입금						
	3)학교기업전입금						
	4)기타전입금						
2. 기부금수익							
	1)일반기부금						
	2)지정기부금						
V. 운영외수익							
1. 운영외수익							
	1)이자수익						
	2)배당금수익						
	3)유가증권평가이익						
	4)유가증권처분이익						
	5)외환차익						
	6)외화환산이익						
	7)유형자산처분이익						
	8)대손충당금환입						
	9)전기오류수정이익						
	10)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11) 기타운영외수익						
운영수익총계							

2. 운영비용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관	항	목	항	관	목	항	관
I. 산학협력비							
1. 산학협력연구비							
		1) 인건비					
		2) 학생인건비					
		3) 연구장비·재료비					
		4) 연구활동비					
		5) 연구과제추진비					
		6) 연구수당					
		7) 위탁연구개발비					
2. 교육운영비							
		1) 인건비					
		2) 교육과정개발비					
		3) 장학금					
		4) 실험실습비					
		5) 기타교육운영비					
3. 지식재산권비용							
		1) 지식재산권 실시·양도비					
		2) 산학협력보상금					
4. 학교시설사용료							
		1) 학교시설사용료					
5. 기타산학협력비							
		1) 기타산학협력비					
II. 지원금사업비							
1. 연구비							
		1) 인건비					
		2) 학생인건비					
		3) 연구장비·재료비					
		4) 연구활동비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관	항	목	항	관	목	항	관
		5)연구과제추진비					
		6)연구수당					
		7)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1)인건비					
		2)교육과정개발비					
		3)장학금					
		4)실험실습비					
		5)기타교육운영비					
		3.기타지원금사업비					
		1)기타지원금사업비					
		III.간접비사업비					
		1.인력지원비					
		1)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연구지원비					
		1)기관 공통지원경비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연구실안전관리비					
		4)연구보안관리비					
		5)연구윤리활동비					
		6)연구개발준비금					
		7)대학 연구활동지원금					
		8)대학기반시설및장비 운영비					
		3.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관	항	목	항	관	목	항	관
	4.기타지원비						
	1)기타지원비						
	IV.일반관리비						
	1.일반관리비						
	1)인건비						
	2)감가상각비						
	3)무형자산상각비						
	4)대손상각비						
	5)일반재경비						
	V.운영외비용						
	1.운영외비용						
	1)유가증권처분손실						
	2)유가증권평가손실						
	3)외환차손						
	4)외화환산손실						
	5)유형자산처분손실						
	6)전기오류수정손실						
	7)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8)기타운영외비용						
	VI.학교회계전출금						
	운영비용합계						
	당기운영차익 (또는 당기운영차손)						
	운영비용총계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별지 제4호의1서식]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교부처	내역	금액	당기현금수령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교부처는 산업체, 국가, 지자체, 기타로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기재한다.
 - 민간재단·협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기타로 기재한다.
3. 내역은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기술이전수익 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거래처	내역	금액	비고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소계				
노하우이전수익				
소계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내역은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이전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3.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출원 중' 이라고 기재한다.
4.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의3서식]

지원금수익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교부처	내역	금액	당기 현금수령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교부처는 산업체, 국가, 지자체, 기타로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기재한다.
- 민간재단·협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기타로 기재한다.
3. 내역은 지원금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의4서식]

기부금수익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기부처 또는 기부자	내역	금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기부자는 기부금을 기부한 기부자명을 기재한다.
3. 내역은 기부금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의5서식]

간접비수익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교부처	내역	금액	비고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교부처는 산업체, 국가, 지자체, 기타로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기재한다.
 - 민간재단·협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기타로 기재한다.
3. 내역은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의6서식]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단위 : 원)

구분	과목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비고
			기초금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금액		
유형자산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소계							
무형자산	지식재산권							
	개발비							

	소계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기말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2.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현금흐름표

당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전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과		제 xx (당) 기			제 xx (전) 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I.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투자자산수입						
		2) 유형자산매각대						
		3) 무형자산매각대						
		4) 기타비유동자산수입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부채의차입						
		2) 기본금의조달						
II.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투자자산지출						
		2) 유형자산취득지출						
		3) 무형자산취득지출						
		4) 기타비유동자산지출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부채의상환						
		2) 기본금의반환						
III. 현금의증감								
IV. 기초의현금								
V. 기말의현금								

※ 기재상의 주의

1. 현금흐름표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합으로 정의된다.

[별지 제6호서식]

※ (본 규칙 제16조에 의거 재무제표로 채택한 경우에 적용)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제 × 기	20××년××월××일 부터 20××년××월××일 까지	제 × 기	20××년××월××일 부터 20××년××월××일 까지
처분확정일	20××년××월××일	처분확정일	20××년××월××일

(단위 : 원)

과 목		제×× (당) 기			제×× (전) 기		
관	항	목	항	관	목	항	관
I. 처분전운영차익							
	1) 전기이월운영차익						
	2) 당기운영차익						
II. 적립금등이입액							
	1) 연구적립금이입액						
	2) 건축적립금이입액						
	3) 장학적립금이입액						
	4) 기타적립금이입액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입액						
III. 합계(I + II)							
IV. 운영차익처분액							
	1) 연구적립금적립액						
	2) 건축적립금적립액						
	3) 장학적립금적립액						
	4) 기타적립금적립액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						
V. 차기이월운영차익(III-IV)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대학교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자문”이라 함은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교원”이라 함은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산업교원 구성) ① 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산업교원은 기술 분야, 경영 분야, 디자인 분야 및 컨설팅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자문 방법 등)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

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자문료 납부) 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로 시간당 최소 ○○만원(부가세 별도)에서 최대 ○○만원(부가세 별도)까지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등이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6조(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 ①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를, 산학협력단에 ○○%를 배분한다.

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매년 6월말, 12월말에 2회 정산하여 분배 지급한다.

제7조(실적평가반영)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승진임용및계약임용시실적 및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제8조(기타사항)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서식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학술연구위원회 규정(예시)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00대학교 학술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위원회는 본교의 학술연구 및 연구자금의 조성과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이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연구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비중앙관리제도 운영
4. 연구자금조성 및 관리운영 방안
5. 연구결과의 평가 및 공동활용 방안
6. 교원 및 부설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지원사업 및 활성화 방안
7. 연구업적집 발간
8. 연구간접비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 및 결산
9. 부설연구기관의 신설 및 평가
10.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인 연구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과 각 대학장이 추천하는

정교수 1명씩으로 한다. 다만, 각 대학의 위원은 가급적 소속대학과 관련된 부설연구기관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연구지원팀 팀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규정(예시)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이하 ‘이 규정’이라 함)은 00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교수·연구원, 교수윤리강령, 교수윤리규정에 표명된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본교의 연구윤리를 확

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연구활동이라 함은 연구의 기획과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와 발표, 연구의 심사와 평가, 연구성과의 보급·적용·

개발 등을 포함하여 연구와 관련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교수에게 적용되며 학부생, 대학원생, 본교 내에서 연구 또는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하 '연구자' 라 함)에게 준용된다.

② 특정한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본교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특정한 연구분야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연구활동의 일반지침

제4조(관련법규 준수 의무)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 법령과 본교 규정 등 연구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연구활동이 공익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제6조(진실성) ① 연구자는 정직성과 진실성에 기초하여 연구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모든 연구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포함하는 모든 연구정보를 위조, 조작,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정성) ①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서 편견과 예단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바람직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공정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성) ①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연구참여자 사이에 연구와 관련한 데이터, 결과, 방법, 아이디어, 기법 및 도구를 공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의 기밀성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통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심사받기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심사의 기본원칙) ①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업적을 심사하는 경우 그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자는 논문 및 연구과제 등을 포함하는 모든 심사에서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심사요청서에 따른 심사기한과 기밀을 지켜야 한다.

③ 심사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피심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활동 과정의 원칙

제1절 연구의 기획 또는 제안

제11조(주제와 방법 선택에 따른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주제와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윤리적 한계 고려 의무) 연구자는 연구를 기획하고 제안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와 관련한 사회적 위험과 윤리적 한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이익 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 의도 및 방법론의 공론화) ① 연구자는 연구의 의도와 방법론이 적절한지를 논의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연구참여자 사이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본부와 사전에 협의된 경우나 관련 규정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의 의도와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교 본부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다만, 당해 연구와 관련된 규정이 별도의 갈등해결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사전 협의의무) 연구자는 연구사업이 개시되기 이전에 교내외 재정지원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문서에 명시하고 본교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권)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데이터, 표본, 연구 산출물 등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의 수행

제16조(관리 및 보존) ①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온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1. 연구절차
2. 연구과정에서 받은 승인
3. 연구과정에서 사용한 인용 출처
4. 중간결과를 포함하여 연구수행을 통해 얻은 모든 데이터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을 통해 얻은 주요 기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방법 숙지 의무)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데이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접근과 열람) ①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연구수행의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다.

② 연구책임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열람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문서에 의한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연구비의 집행) 연구자는 지원받은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법령과 본교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결과의 발표

제20조(저자) ① 저자란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연구의 기획,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도출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연구자를 말한다.

② 모든 저자의 연구역할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③ 저자 결정 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분야별로 따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자목록에 포함될 수 없다. 다만, 공동저자의 결정은 연구결과 발표 전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④ 연구자는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실질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를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저자의 책무) ① 교신저자와 책임저자는 논문데이터와 저자 표시, 연구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책임지며, 공동저자의 연구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을 진다.

② 저자들은 본교 또는 외부기관이 저자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22조(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연구의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②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표시와 그 순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23조(서열 및 소속 표기) ① 공동저자의 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의 협의에 따라 연구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저자의 소속 표기는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 그러한 관행에 따를 수 있다.

제24조(인용) ① 저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하는 과정에서 인용출처와 참고문헌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저작물에서 인용하여야 하며 미공개 학술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저자는 타인의 이론적 견해나 아이디어를 참조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하는 경우에도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④ 저자는 널리 알려지거나 일반적으로 수용된 생각, 사실, 공식,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반드시 밝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권장된다.

제25조(지식재산권 존중)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다른 연구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6조(직무와 관련한 연구결과의 소유권) 연구자가 본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는 본교의 소유이므로 본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과 소유권의 귀속) 연구자가 소속기관을 옮길 때 명확한 합의나 규정이 없을 경우 데이터의 소유 또는 공유문제는 연구자와 본교 또는 연구기관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한다.

제4절 공동연구

제28조(공동연구의 기본원칙) 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자의 역할, 연구자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모든 연구활동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③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공동연구의 목표, 기대효과, 연구자의 선정, 연구의 방법론 결정,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연구책임자의 선정, 저자의 결정 및 순위기준, 지식재산권과 소유권 문제 등 제반 사항을 상호간에 합의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책임자의 책무)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한 재정 지출, 연구참여자 교육, 데이터의 수집 및 보고,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활동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의 협약 체결, 연구비 수주와 집행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법령 및 본교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이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참여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 관련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을 위한 관련규정을 준수함과 아울러 이를 위해 본교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윤리교육) ① 연구참여자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이 지침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바람직한 연구관행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와 부적절한 연구행위

제1절 연구부정행위

제31조(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기획,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발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의 행위를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의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고의로 변형·삭제·누락하여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논문, 특허, 지적 착상,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같은 지적 결과물,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에 학문적으로 공헌하거나 기술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나, 이러한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으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 게재”는 자신이 생산한 기존의 연구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명시적인 설명이나 인용 없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출판물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㉔ 저자가 중복게재의 사실을 밝히고 당해 출판물의 편집인이 이러한 형태의 게재에 동의한 경우
- ㉕ 학위논문임을 밝히고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 ㉖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을 쉽게 풀어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게재한 경우
- ㉗ 논문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 ㉘ 발표된 논문이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집의 형태나 학술지의 특집으로 게재되는 경우

② 해당 논문이나 저서에 대하여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의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판정은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타 형태의 연구부정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된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2. 부정행위 제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3.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4. 타인에게 연구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제32조(예외)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연구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과실
2. 정직한 실수
3.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부록 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제2절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33조(정의) ①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부적절한 연구행위, 부적절한 집필행위, 부적절한 심사행위 등을 말한다.

②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제30조의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근절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

③ “부적절한 연구관행”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제33조 내지 제36조에서 정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행위에 한정되지만은 아니 한다.

제34조(부적절한 연구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고의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절한 연구행위로 간주된다.

1. 연구데이터를 부적절하게 기록· 보존하는 행위
2. 연구참여자 사이에서 최초 연구 데이터의 공개와 공유를 거절하는 행위
3. 적절한 검증절차 없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4. 연구책임자의 부적절한 연구관리 또는 지도 행위
5.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6. 특허를 독점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자에게 특허 출원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는 행위
7. 연구업적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8. 연구비를 지원받으려고 기대효과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9. 인간피험자 보호와 실험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0.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하여야 할 연구결과를 수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게재하는 행위
11. 연구비 유용행위

제35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저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을 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행위
2. 논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3. 재인용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행위
4. 읽지 않은 저술의 출처를 인용하는 행위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자신의 텍스트를 적절한 언급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
7.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36조(부적절한 심사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심사행위에 해당한다.

1. 심사과제를 타인에게 부탁하여 심사하게 하는 행위
2. 심사중인 논문이나 연구제안서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3. 논문이나 연구제안서를 읽지 않고 사적인 접촉을 통해 심사· 평가하는 행위
4. 재산상 이득을 얻기 위해 또는 학연, 지연 등의 사적 관계에 의해 논문이나 연구제안서를 불공정하게 평가하는 경우
5.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제3절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제37조(연구부정행위의 처리) ① 본교 연구진실성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엄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검증, 처리는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절 갈등의 조정

제38조(갈등의 정의) “갈등”이라 함은 연구참여

자들 사이에서 연구의 목적, 연구활동의 수행 또는 금전적 관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

제39조(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이 자신의 학문적 입장, 도덕적 가치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 경우 이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0조(연구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연구활동의 수행과정에서 동료교수, 학생, 본교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는 이를 공개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1조(금전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① 연구자는 연구의 진실성과 정직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을 좇아 연구결과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결부된 창업이나 외부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을 부당하게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창업이나 외부활동을 위해 본교의 자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본교의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본교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정당한 비용을 본교에 지불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기관이나 본교의 금전적 이익과 상충하는 경우 이 사실을 이해 당사자에게 공지하고 함께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2조(갈등의 관리 및 조절) ①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본교규정에서 그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책무를 진다.

③ 연구책임자는 이해갈등의 당사자를 관리하고 연구참여자로써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④ 중대한 갈등은 제3자에 의한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과 본교 규정에서 별도의 갈등조정절차를 정하지 않은 한 그 갈등은 원칙적으로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의한 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4장 생명연구윤리

제1절 인간 피험자 연구

제43조(임상시험과 임상연구의 원칙) ① 임상시험(인체를 이용한 연구)과 임상연구(인체에서 유래한 혈액, 체액, 조직 등을 이용한 연구)는 본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상시험과 임상연구는 인간 피험자 보호에 관한 헬싱키선언, 기타 국제적 지침 및 규정,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제1999-6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07150호)에 명시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임상시험과 임상연구를 정기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피험자의 복지와 안전을 해칠 요인이 있는 경우 그러한 시험 또는 연구를 중지시켜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의 과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피험자, 관련 연구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에 관련된 모든 기록과 자료 및 문서를 유지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는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2절 인간 피험자 보호

제44조(충분한 고지와 서면동의)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연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피험자의 권리, 있을 수 있는 위험과 이익 등에 대하여 사전에 피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피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참가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험자의 동의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나 시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피험자의 질문에 알기 쉬운 말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45조(인간 피험자 보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나 새로운 정보를 피험자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자로부터 새로운 동의서와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애인, 임신부, 태아, 신생아, 아동, 수감자 등을 피험자로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부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피험자의 생활과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피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피험자로부터 얻은 연구데이터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밀유지가 어려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결과를 피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⑥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가 피험자 보호 준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책무를 진다.

제3절 동물 실험 연구

제46조(동물 실험 연구의 원칙) ① 인간 외 살아 있는 척추동물을 연구와 교육에 사용할 경우, 연구자는 동물의 윤리적 사용,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동물을 사용하는 실험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동물 실험 연구자는 실험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이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동물 실험 연구자는 이러한 실험이 공중보건, 과학의 진보, 사회 공공의 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와 학생은 의무적으로 동물 대상 실험과 관련된 규정, 인도적 취급, 안전관리, 건강 위험요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실험 동물의 안전한 관리, 보호, 사후처리 및 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교 동물실험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예시)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00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00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연구시설 및 장비의 체계적 도입과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이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연구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균실, 저온실, 동물사육실 등의 시설 포함)에 대

한 구축 결정

2.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정부부처 유관위원회에 상정
3. 3천만원 이상 공동 활용 대상 연구장비 선정
4. 3천만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5. 장비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6.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7.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00부단장, 00부단장, 관리처장, 연구처장, 공동기기실장, 공동실험실장, 공동기기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총장이 위촉하는 교내·외의 전문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본교에 재직하지 아니하는 외부위원의 비중이 전체 위원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총장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이 참석함으로써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한 부서의 팀장이 맡는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4 주요부처 연구지원사업 안내

1. 2015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2. 2015 미래부 R&D 종합시행계획
3. 2015 산업기술혁신사업
4. 201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5. 2015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1. 2015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2015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인문사회 분야]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지원단가 (백만원/년)	지원기간 (년)
개인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 국내 연구기관 연수 지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33	1~2
	학술연구 교수	박사후 연구자가 대학연구소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박사학위 소지자	39	3
	시간강사	대학 시간강사의 교육·연구 지원	인문사회분야 전업시간강사	12	1
	신진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강화	조교수이상 임용 후 5년이내인 대학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초과 10년 이내 연구자	(정액) 10 / (일반) 20이내	1~3
	중견연구자	중견연구자 개인연구 지원	조교수이상 임용 후 5년이 초과한 대학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정액) 10 / (일반) 20이내	1~3
	우수학자	우수학자의 연구·저술활동 지원	조교수 이상의 경력(10년 이상인 대학 또는 학회 소속의 연구자	30 이내	5(3+2)
	저술출판 지원	인문사회분야 저술지원	인문사회 연구자	10	2~3
	명저번역 지원	동서양의 명저를 체계적으로 번역·보급	전 학문분야 연구자	원고지1매당 7천원 이내	2~3
	우수논문 지원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우수한 연구논문 지원	인문사회 우수논문창출 연구자	5 / 7	1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국내·외 연구자간 공동연구, 학술교류, 협력활동 지원	국내대학 전임교원	15 / 27	0.5~1
공동	일반 공동연구	소규모 공동연구 지원	인문사회 연구자	50 이내 / 100 이내	1~3
	학제간 융합연구	인문사회와 이공계 분야와의 융합 연구 활성화	인문사회, 이공계 융합 연구팀	40 이내 / 200 이내	1 / 5(3+2)
	글로벌연구네트워크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지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100이내	1~3
집단	토대연구	인문사회분야 토대연구 지원	대학부설연구소, 국내 연구기관	200 이내	3 / 5(3+2)
	중점 연구소	대학연구소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연구거점 구축	대학부설연구소	200 이내 / 300 이내	3 / 9(3+3+3)
	인문학국 지원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및 해외 지역학 연구소 육성	인문학, 해외지역분야 대학부설연구소	1,500 이내	10 (3+3+4)
	사회과학 연구지원	사회과학 분야 세계적 수준의 연구센터 육성	인문사회 연구집단	60~250 이내	10(3+3+4) / 7(3+4) / 1
	신흥지역 연구지원	신흥지역 전문가 육성 및 연구지원	대학부설연구소	230 이내	5 (2+3)
	-	인문학 대중화	인문학 강좌, 행사 지원 등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	대학, 인문학 연구단체 등	10~90
-	우수학술 도서지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및 지원	인문사회, 한국학, 자연과학 연구자	15 이내	1

※ 상기 지원단가는 간접비 및 기관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인문사회 전분야 지원은 예술·체육학 분야 포함

부록 4 주요부처 연구지원사업 안내

[이공 분야]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지원단가 (백만원/연)	지원기간 (연)
개인	기본연구	이공분야 풀뿌리 기초 연구지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50	3 이내
	보호연구	이공분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의 연구 지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50	3 이내
	리서치펠로우	박사급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리서치펠로우 고용연구원 (고용예정자 포함)	50	3 이내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역대학의 역량 있는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	지역대학 (5대 과기대** 제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50	3 이내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게 국내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연수기회 제공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인 자	33	1
	박사후 국외연수	박사후 연구자에게 해외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선진 연수기회 제공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인 자	33	1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연구역량이 탁월한 젊은 박사후 연구자의 초기 일자리 정착과 연구비 지원	국내·외 대학 박사 학위 취득 연구자 중 만39세 이하이거나 박사학위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130~150	5 (3+2)
집단	대학중점 연구소지원	대학연구소 지원을 통해 대학에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젊은 연구자를 양성하여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대학 부설연구소	500/200 이내	9 (3+3+3)/2

* 대학의 리서치펠로우 고용 확약을 받은 박사후 연구원
 ** KAIST, POSTECH, GIST, DGIST, UNIST

[한국학 분야]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지원단가 (백만원/연)	지원기간 (연)
개인/공동	한국학 진흥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 및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등	대학/연구기관	25~500	1~10
집단	고전문헌 국역지원	고전문헌 수집·정리·번역 및 DB화를 통한 대중화 실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및 전통문화연구회	-	-

[학술기반 구축]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지원단가 (백만원/연)	지원기간 (연)
집단	학술단체 지원사업	학회의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행 지원,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지원	국내 학술단체 (학회)	10~300	1
집단	이공계 학술활동 지원	이공계 학회의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행 지원, 학술활동 기반확충 및 고도화	국내 학술단체 (학회)	40~100	1
-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 구축	국내·외 학술자원 확보 및 공동 활용체계 구축	-	-	-
-	연구윤리 활동지원	연구윤리 제도개선, 교육, 및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지원	-	-	-

3. 2015 산업기술혁신사업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사항

- '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

- ◆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인간의 창의적 · 자발적 R&D 수요를 토대로 추진하며 기업만 주관 허용
- ◆ 「개념평가도입 및 사전 서면검토 실시 :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를 제출받은 과제에 한하여 개념평가를 실시하고 본 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내실화 도모 -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성 · 차별성 위주로 간략히 제출하며 최초 제출서류 간소화
- ◆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민간 매칭비용 차등화, 제도 도입 : 과제 리스크에 따라 과제 유형별(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로 정부 지원비율을 차등화 하고, 각 수행주체별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 산정 및 민간부담금 납부
- ◆ 「사업화 전문가 참여, 제도 도입 : 기술-시장 연계 강화를 위한 시장전문가의 평가위원회 참여 확대
- ◆ 「인건비(현금) 지원제도의 중견기업 확대, 시행 : 중소 · 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기존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 지원하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지급 가능

※ R&D 제도 개편에 따라 '15년도 1월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 수행중인 과제는 협약시부터 제도 적용 예정 단, 매칭비용 차등화 제도는 '15년도 신규 공고사업부터 적용함

■ 추진체계

- 「전담기관,이라 힘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 · 평가 ·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된 기관
- 「주관기관,이라 힘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힘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힘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라 힘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4, 사업별 지원계획',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발 사업 공고 참조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tech.keitre.kr), 산업기술 R&D종합정보시스템(www.ard.go.kr),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언론매체 등에 공고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출연금 지원 기준

-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수행기관 ¹⁾ 유형	원천기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²⁾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³⁾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정책적으로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민간부담 한금 비율 조건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아래표를 따름. 다만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과제 주관 기준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다음의 경우로 한정함

과제 유형	내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 · 중견기업 등은 요소기술을 통한 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 · 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관리에 관한 통상요령¹⁾을 따르되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재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이감일 현재 중 사업의무사항(각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재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기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재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채무 불이행중인 경우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 · 협약과정에서 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디자인 동향조사 등을 통해 디자인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 ※ 본 공고문에서 참조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부흥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관리에 관한 통상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2.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 및 정부 R&D 사업에 참여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12월 9일부터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md.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및 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안내자료 주요내용
 -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등 통한 시행계획 공고 사업의 세부내용 소개
 - R&D사업 참여 참고자료
 - 산업기술 R&D 주요 핵심인사(핵심인사청약자) 지원조건 및 대안(감정사항 등)
 - 산업통상자원부 3대 R&D전담기관별 기관소개 및 지원사업 안내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요령 등

3.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 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지역	일시	장소	문의처
서울	'14. 12. 22(화) 14:00~19:00	대기인 서울호텔 (거문고)	1544-6633 (KEIT R&D 콜센터)
대전	'14. 12. 23(화) 14:00~19:00	대전컨벤션센터(DCC) (그랜드볼룸)	1544-6633 (KEIT R&D 콜센터)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개최장소 수용인원은 서울 1,000석, 대전 1,200석 규모이므로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기동적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4. 사업별 지원 계획

-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신산업, 주력산업 분야

- 사업개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
 - 신산업 분야 : 산업융합기술(나노융합, IT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로봇, 지식서비스
 - 주력산업 분야 : 자동차(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화학공정, 세라믹, 금속소재, 섬유·의류, 생산기반, 생산 시스템, 플랜트엔지니어링
- 지원내용
 - 분야별 산업핵심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3~7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5,167.68억원 (신규 1,380.56억원, 계속 3,787.12억원)

사업명	2015년도 예산(백만원)		
	신규	계속	합계
○ 신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62,709	175,418	238,127
-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14,282	57,220	71,502
-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24,569	61,912	86,471
-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	16,823	34,424	50,247
-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8,045	21,862	29,907
○ 주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75,347	203,294	278,641
- 그린카등수소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22,500	54,078	76,578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22,584	64,915	87,499
-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	28,263	73,532	101,795
- 플랜트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	2,000	10,769	12,769

※ 세부 사업별 공고시 내용 참조

○ 추진일정

과제기회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8월 ~ '14. 12월	'14. 12월 ~ '15. 2월	'15. 3월 ~ '15. 5월	'15. 6월

(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세부 사업별로 선정자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	지원기간	지원내용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	-
- WPM (신규지원계획 없음)	9년 이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거나 시장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는 10대 핵심 소재(WPM) 개발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신규지원계획 없음)	9년 이내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창출이 가능한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
-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7년 이내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소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개발
-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7년 이내	'20년까지 민간산업과 육·해·공 군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新소재 창출을 위해 핵심 방산소재 개발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	-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5년 이내	Global Sourcing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산업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개발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3년 이내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장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	3년 내외	개발 과정의 사업화 제고를 위하여 민간 자본의 사업성 평가(투자유치)를 접목한 투자·관 연계형 개발과제 지원

■ 지원규모 : 2,788.18억원 (신규 321억원, 계속 2,467.18억원) (단위: 백만원)

사업	2015년 예산	신규	계속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165,817	8,100	157,717
- WPM	59,795	-	59,795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40,450	2,100	38,350
-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52,072	6,000	46,072
-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13,500	-	13,500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113,001	24,000	89,001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46,436	10,000	36,436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18,715	1,500	17,215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	47,850	12,500	35,350

※ 세부 사업별 예산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 표에서는 평가관리비는 제외된 금액임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회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	-	-	-
- WPM	-	-	-	-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14.9월 ~ '12월	'15.1월 ~ '2월	'15.3월 ~ '4월	'15.5월
-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14.9월 ~ '15.2월	'15.3월 ~ '4월	'15.5월	'15.6월
-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	-	-	-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	-	-	-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14.9월 ~ '15.2월	'15.3월 ~ '4월	'15.5월	'15.6월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14.9월 ~ '12월	'15.1월 ~ '2월	'15.3월 ~ '4월	'15.5월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	'14.9월 ~ '12월	'15.1월 ~ '2월	'15.3월 ~ '4월	'15.5월

(3)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사업개요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섬유생활스마트링컨퍼런스, 생활산업고도화, 개인용이동수단, 첨단연구정보,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신산업기술개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튜닝부품기술개발,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등 10개 내역사업
- 지원내용(공동사용)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이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 사업 신규공고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지원기간 및 금액 등 각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참조

■ 지원규모 : 1,501.53억원 (신규 653.56억원, 계속 847.97억원) (단위: 억원)

구분	신규	계속	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203.24	494.03	697.27
섬유생활스마트링컨퍼런스	197.19	144.6	341.79
생활산업고도화	54.01	12	66.01
개인용이동수단	13	11.92	24.92
첨단연구장비	39.12	19.56	58.68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72	133.7	205.7
신산업기술개발	-	32.16	32.16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30	-	30
튜닝부품기술개발	20	-	20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25	-	25
합계	653.56	847.97	1,501.53

부록 4 주요부처 연구지원사업 안내

■ 추진일정

사업	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우수기술연구센터		'14. 12월	'15. 1월	'15. 2~5월	'15. 5~6월
섬유생활스마트인간협력	'14. 9~'14. 12월	'14. 12월	'15. 1월	'15. 2~5월	'15. 5~6월
생활산업고도화	'14. 10~'15. 2월	'15. 3월	'15. 4월	'15. 4~5월	'15. 5~6월
개인용이동수단	'14. 9~'14. 12월	'14. 12월	'15. 1월	'15. 2~5월	'15. 5~6월
첨단연구장비	'14. 9~'14. 12월	'14. 12월	'15. 1월	'15. 2~5월	'15. 5~6월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14. 9~'14. 12월	'14. 12월	'15. 1월	'15. 2~5월	'15. 5~6월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14. 12월	'15. 1월	'15. 2~5월	'15. 5~6월
투닝부품기술개발		'14. 12월	'15. 1월	'15. 2~5월	'15. 5~6월
레이저혁신부품국제공동개발	'14. 10~'15. 2월	'15. 3월	'15. 4월	'15. 4~5월	'15. 5~6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가. 우수기술연구센터(ATC)

■ 사업개요

-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중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4년 매출액 중 수출 비중과 R&D 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평가 통해 차기 단계 지원), 센터당 연간 5억원 내외
 -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고, 핵심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 지급
 - * 지원 세부내용은 신규공고 시 참조

■ 지원규모 : 697,27억원 (신규 203,24억원, 계속 494,03억원)

■ 추진일정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15. 4~5월	'15. 5~6월

나. 섬유생활스마트인간협력

■ 사업개요

- 섬유패션 스트림(또는 섬유패션산업과 타산업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대해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차별화 제품개발 촉진

* 섬유산업고도화 : 실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고품질, 고급섬 기술을 융복합한 고부가가치 생활용품 및 소비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유리한 섬유·세라믹 소비재산업 분야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지원조건 : 섬유스트림 : 산업용, 의류용, 생활용, 융합 등 4대 섬유분야(단, 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대학 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지원조건 : 패션 디자인 개발사업이 포함된 패션디자인 의류상품 등(단,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지원조건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가 가능함
- 지원조건 : 섬유스트림 : 총 기술개발 기간 2~3년 이내(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패션스트림 : 총 기술개발 기간 1~2년 이내(연간 3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섬유생활스마트인간협력 : 총 기술개발 기간 1~2년 이내(연간 3억원 내외 지원)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341,79억원 (신규 197,19억원, 계속 144,60억원)

■ 추진일정

기획 (물류에 한함)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12월	'14. 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15. 4~5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생활산업고도화

■ 사업개요

- 생활산업 관련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명품 브랜드와 글로벌전문 기업 육성

■ 지원내용

- 가구·원구·안경·주얼리 등 생활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지원조건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가 가능함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 기간 2~3년 이내에 연간 3억원 내외 지원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66,01억원 (신규 54,01억원, 계속 12억원)

■ 추진일정

기획 (물류에 한함)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10~'15.2월	'15. 3월	'15. 4월	'15. 4월	'15. 5월	'15. 5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라. 개인용이동수단

■ 사업개요

- 전통 휠체어, 전통 유모차 등 글로벌 시장이 기 형성된 전동휠체어 제품 중 최적화와 효율 향상 및 안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 지원내용

- 개인용 이동수단 효율 향상과 최적화를 위한 기술 및 제품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 기간 1년 내외에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24,92억원(신규 13억원, 계속 11,92억원)

■ 추진일정

기획 (물류에 한함)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12월	'14. 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15. 4~5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마. 첨단연구장비

■ 사업개요

- 산업활용도 및 시장수요,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 향상 제고

■ 지원내용

- 독자적 연구장비 생산기반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5년 이내 활용성과 파급효과가 큰 연구장비 원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에서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58,68억원(신규 39.12억원, 계속 19.56억원)

■ 추진일정

기획 (물류에 한함)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12월	'14. 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15. 4~5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바.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 사업개요

- 제품설계 및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및 비탄소 무역장벽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에서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205,7억원(신규 72억원, 계속 133,7억원)

■ 추진일정

기획 (물류에 한함)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12월	'14. 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15. 4~5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사. 신산업기술개발

■ 사업개요

- 미래 유망산업 분야 독자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틈새시장 공략 등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2~3년 이내에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32,16억원(계속 32,16억원)

■ 추진일정

* '15년 신규과제 없음

아.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 사업개요

- 전문지식·창의성 등 인적 역량에 의하여 경쟁력이 결정되는 기획·설계 분야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두뇌분야 :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 기간 3년 이내에 연간 3억원 내외 지원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30억원 (신규 30억원)

■ 추진일정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15. 4~5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자, 튜닝부품기술개발

■ 사업개요

- 해외 튜닝 전문업체의 국내 진출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중소 영세 튜닝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우수 기술기업의 세계 튜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력 강화와 수출 지원

■ 지원내용

- 영세 중소 튜닝업체의 체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 지원
 - 중견 부품기업의 튜닝시장 진입 및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튜닝 부품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 기간 3년 이내에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20억원 (신규 20억원)

■ 추진일정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15. 4~5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차,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 사업개요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레이저 부품 및 모듈 분야의 핵심기술을 중소·중견기업이 레이저 핵심기술 보유 해외 대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직접 개발하도록 지원

■ 지원내용

- 해외 선진 기관·기업과의 공동 글로벌 기술개발을 통한 의료용·산업용 레이저 핵심 부품·모듈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 기간 3년 이내에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25억원 (신규 25억원)

■ 추진일정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10~'15.2월	'15. 3월	'15. 4월	'15. 5월	'15. 5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신성장동력저장장치경쟁력강화사업

■ 사업개요

-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 제품군의 조기양산화를 지원하는 수요맞춤형 제조장비 및 수요맞춤형 서비스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수요산업과 장비산업간 균형적 동반성장 및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유도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 신성장동력 7대 분야별 장비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응용기술 개발 지원
 - (수요연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업체가 구매 가능한 양산장비
 - (수요칭용) 향후 시장신성 가능성이 큰 장비
 - 공통핵심 기술개발 : 7대 신성장동력 분야 중 2개 이상의 장비 분야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 3년 이내, 공통핵심 기술개발 : 5년 이내

○ 지원금액 :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 기술개발과제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332.5억원(신규 67.5억원, 계속 265억원)

* 신규 및 계속과제 지원규모는 과제기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2월 ~ '15. 6월	'15. 7월 ~ 8월	'15. 9월	'15. 10월

(5)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항공우주 부품·소재 기술개발로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 지원내용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상용기술개발 및 기술 자립화와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핵심기술 개발 지원
- 지원기간 : 단기(3년 이내) 또는 중장기(총 5년 이내, 단계별 2~3년)
- 지원금액 : 기술개발범위 및 과제성격에 따라 지원
 - * 기술개발과제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246.56억원(신규 87.04억원, 계속 159.52억원)
 - * 신규 및 계속과제 지원규모는 과제기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2월 ~ '15. 3월	'15. 3월	'15. 4월	'15. 5월	'15. 6월

(6)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적용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나노소재 응용제품이 수요여 상용화 제품에 적용되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나노소재-수요기업 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나노융합 사업화 촉진

■ 지원내용

- 현 나노분야에 가장 많이 출시되고 있는 탄소계 금속계 소재 중 사업화 완성도가 높은 우수 나노제품을 대상으로 나노소재-수요기업 간 융합제품화 기술개발(탄소나노튜브, 그래핀, 풀러렌, 다이아몬드 등)
 - 금속계 소재 : 금속을 기반으로 기존 제품과 융합제품화 기술개발 (C/C(구리), Ag(은), Au(금), Ti(티타늄) 등)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1개 이상의 수요기업 참여는 필수이며, 산·학·연 추가 참여 가능
- 지원조건 : 2년 이내, 1년 내 개발 가능한 과제는 우선 지원
 - * 지원분야의 특성상 따라 사업공고시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27.5억원(신규 11억, 계속 16.5억원)

■ 추진일정

연구평가	협약	사업비 지급	정산
'15. 5월	'15. 5~6월	'15. 6월	'15. 7월

(7)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 사업개요

- 기술·디자인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세부사업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서비스디자인기본제조업신성장동력구축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디자인 전 분야
- 총 기술개발 기간 5년 이내에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
- 지원조건 : Matching Fund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75%이상이며, 민간부담금 한도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지원 세부내용은 찬양기관이 별도 공고

■ 지원규모 : 365.7억원(신규 250억원내외)

■ 추진일정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2월	'15. 3월	'15. 3월	'15. 4월	'15. 5월	'15. 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질 관심 증대에 따라,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적합한형·범칙예방법 등 사회이슈를 해결하는 맞춤형·문제해결형 따뜻한 기술개발 추진

* (사회약자 배려) 이동 보조장치, 정보접근성 향상, 질병 예방 및 케어 등 (사회이슈 해결) 실종시 위치추적기, 무형형 자기발전기, 유메가스 환기 등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1~3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지원과제 수 및 정책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105억원(신규 35.5억원, 계속 69.5억원)

■ 추진일정

공고	접수	대국민선호도조사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월	'15. 2~3월	'15. 4월	'15. 5월	'15. 6월

(9)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및 인증평가 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FTA 협상타결(한-EU 및 한중 FTA 추진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 보호를 위해 핵심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화 기술개발

■ 지원내용

-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한 IT 융합 첨단의료기기 전라품목 선정·집중 개발
 - 수요자별별용과 의료기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추진
 - 매출액비중, 부가가치, 해외수입비중이 높은 IT 융합형 영상장비 제품화 개발
- 지원대상 : 종합병원, 세부주관기관 : 기업, 참여기관 : 기업, 연구소, 병원 등(세부 사업 공고시 참조)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50~75%, 민간매칭 25~50%

■ 지원규모 : 65억원(신규 39억원, 계속 26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월 ~ '15. 2월	'15. 3월	'15. 7월	'15. 8월

(10) 산업융합촉진사업

■ 사업개요

- 중소·중견 기업이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기술개발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핵심기반으로서 산업융합 공동정보 개발 및 활용 사업 추진

■ 지원내용

- 산업융합신제품개발 및 사업화촉진
 -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목표로 제품 개발 단계별 맞춤형 연계 지원 확대
 - 산업융합이 전 산업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등을 test-track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 기초 R&D 수행
- 공동활용정보 개발 부문
 -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공동활용정보의 개발 및 보급·확산
 - 산업융합 분위기를 확산 및 중소·중견기업의 융합역량을 강화하고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규모 : 61.76억원(신규 16.5억원, 계속 45.26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월 ~ 2월	'15. 3월	'15. 4월	'15. 5월	'15. 6월

(11) 그래핀소재부품소재융합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다양한 응용성 및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닌 그래핀 소재를 조기 상용화함으로써 글로벌 그래핀 시장을 선점하고, 그래핀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value chain을 포함하는 그래핀 산업 육성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 없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6년 이내로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규모 : 116억원(계속 116억원)

■ 추진일정

연차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5월	'15. 6월

(12)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역할을 할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 기술 개발
 - 리스크가 많은 산업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 주도의 혁신적 R&D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

■ 지원내용

- 60인치이상 LED급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이를 활용한 IT융합형 인포테인먼트시스템 개발
- 신해저형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 연쇄저장 초경량 인공생식 시스템
- 일반인의 균형잡힌 헬스케어 증진을 위한 응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 첨단소재가공시스템 기술개발('15년 신규)
- 경합지식기반 체험형 가상훈련 기술개발('15년 신규)
- 생체모사 디바이스 개발사업('15년 신규)
- P-FET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15년 신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6년 이내, 과제당 정부출연금 120억원/년 이내
 -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민간 Matching(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
 - * 지원 세부내용은 신규사업 공고시 참조

■ 지원규모 : 541.06억원 (신규 135억원, 계속 406.06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14. 12월	'15. 1월	'15. 2~3월	'15. 3~4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3) 나노융합2020사업

■ 사업개요

- 나노원천기술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여 조기에 신시장·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R&D 사업 추진 (미래부·산업부 공동지원사업)

■ 지원내용

- 세부지원사업
 - ▶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지원 사업
 - 공공부문(대학 및 연구소)이 정부지원 연구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나노기술(특허화된 기술)을 기업 및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 아이디어로 연결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나노기술 제품을 자체 개발 중에 있는 기업이 제품개발 현장에서 부딪히는 긴급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기술을 매칭함으로써 기술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기술분야: NT-IT 융합분야, NT-ET 융합분야 ▶ 구체적인 지원내용, 신청자격, 선정절차 등은 사업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 152.72억원 (신규 73억원, 계속 79.72억원)

* 본 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 상기 예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15년도 지원 예산 (60억원(신규 34억원, 계속 26억원)) 미포함

■ 추진일정

구분	사업기회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전기	'14. 12월 ~ '15. 1월	'15. 2월 초~3월 말(50일)	'15. 4월	'15. 5월
'15. 후기	-	'15. 5월 초~6월 말(50일)	'15. 7월	'15. 8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4)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 사업개요

- 기술의 개발·이전·확산 및 기술간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제품, 안전기준, 시험·검사 방법 등의 표준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표준제정 보급, 인증제 운영을 위한 인증 대비 구축, 품질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와 계량·측정기술의 조차방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국내 계량·측정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소요비용의 100%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국제표준인증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분야당 연간 15억원 내외 지원
품질혁신기반구축	소요비용의 75% ~ 100% 범위 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과제당 연간 2억원 내외 지원
국가원조표준데이터기개발	100%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국가표준코드네이터	100%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계량·측정기술고도화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 지원규모 : 508.05억원 (신규 240.64억원, 계속 267.41억원)

구분	신규	계속	합계
국가표준기술력향상	120.04억원	128.42억원	248.46억원
국제표준인증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10.0억원	126.45억원	136.45억원
품질혁신기반구축	15.0억원	0.47억원	15.47억원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33.1억원	10.77억원	43.87억원
국가원조표준데이터기개발	22.5억원	0.57억원	23.07억원
국가표준코드네이터	20.0억원	0.47억원	20.47억원
계량·측정기술고도화	20.0억원	0.47억원	20.47억원
합계	240.64억원	267.41억원	508.05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월 ~ '15. 2월	'15. 3월	'15. 5월	'15. 6월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사업에 따라 추진일정이 상이

(15)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온실가스(CO2) 저감과 세계적 환경규제에 대응할 세계 최고수준의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기술확보 및 시험·평가·인증기반 구축

■ 지원내용

-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제품의 조기 상용화·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3~7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100.49억원 (신규 32억원, 계속 68.49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1월 ~ '14.12월	'15. 1월	'15. 4월 ~ 5월	'15. 5월 ~ 6월	'15. 6월

(16) 시스템반도체상용화개발사업

■ 사업개요

- 시스템반도체를 신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고,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 강화를 위해 시장규모가 큰 휴대용, 디지털기전,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조기 상용화·사업화가 가능한 핵심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회를 통해 신규과제 발굴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
- 지원조건 : 2~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191.46억원(신규 15.6억원, 계속 175.86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1월 ~ '14.12월	'15. 2월	'15. 3월	'15. 4월	'15. 5월

(17)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D)

■ 사업개요

- 창조경제 산업엔진 등의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BM(Business Model) 및 BI(Business Idea)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 사업화유망기술, 우수BM 및 BI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제품성능인증 등 사업화 지원

■ 지원내용

- 지원유형: 투자유도형, BM기획형, B연계형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전 산업분야 R&D성과물(산업기술)
- 지원조건: 사업화유망기술, 우수EM 및 B에 대한 사업화 초기자금을 연간 15억 이내로 최대 2년간 지원
- 중점사항: 사업기간내 제품·서비스의 사업화가 가능한 R&D성과물에 대해 우선 지원
- 지원규모: 421.85억원(신규 245.44억원, 계속 176.41억원)

■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사업화계획 및 투자연계	과제별 선정최종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2월~4월	'15. 5월	'15.6월7월	'15. 8월	'15. 9월

(18)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가. 신뢰성산업체확산

■ 사업개요

- 글로벌 소재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뢰성 지원기반*의 인프라인력·장비·기술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고장문제 해결, 내구성명 연장 등)을 지원
- * 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등을 의미

■ 지원내용

- 국산 소재부품의 필드고장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해결, 내구성명상 등 신뢰성 향상 지원(사업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기간및규모*
수요기업 연계형	주관기관 참여기관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소재부품기업, 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국내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 간 신뢰성향상을 전제로 구매약(연간3억원내외)
차별형	주관기관 참여기관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신뢰성지원기관	개발·생산 제품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 (1억원 내외)

- * 사업비 지원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4조, 25조 참조
- * 사업유형은 변동 가능하며 19년 공고문 확인 필요

- 지원규모: 260억원 (신규 160억원, 계속 100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1월~'15. 2월	'15. 3월	'15. 5월	'15. 6월

나. 글로벌동반성장R&BD

■ 사업개요

- 해외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미리 확보한 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 지원내용

- 연간 2억원, 3년 이내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 연구기관
- 지원조건: 주관기관은 해외글로벌 수요기업이 발급하는 기술개발 의뢰서, 혹은 구매의 형서,제출
- 지원규모: 26.5억원 (신규 16.9억원, 계속 9.6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및 수요조사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월	'15. 1월~2월	'15. 5월	'15. 7월

(19)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사업개요

- 시도 단위의 소규모 클러스터를 벗어나 광역적 산업생태계를 육성하여, 시·도간 협력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지원

■ 지원내용

구분	지원목적	내용
비즈니스 협력형 R&D	비즈니스협력권사업(Supply-chain) 주도로 유망품목 개발·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10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지원방식) 자립공모형
지역 협력형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4억원 이내(국고 100%)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지원방식) 자립공모 + 자유공모
지역 주도형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규모) 지역자율(자립비 100%) (과제기간) 지역자율(지원방식) 지역자율
비R&D	협력산업 관련 타겟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고, 전통방 연기업에 대한 포괄지원	(지원규모) 기업수요에 따른 합리적 예산규모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연차별) (지원방식)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 인력양성 (지원방식) 자립공모 + 자유공모

- 지원규모: 1,691억원 (신규 R&D 1,234억원, 비R&D 457억원, 국비기준)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0월~'14. 12월	'15. 3월	'15. 3월	'15. 4월	'15. 5월

(20)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 사업개요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국제기술현력을 통해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내외 산학연으로 구성된 국제R&D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은 국내 기업 또는 대학 또는 연구소인, 사업유형별로 주관기관 자격이 상이하므로 세부 공고 참조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에 한하여, 국내 기업이 주관 기관인 경우에는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에 한함

- 지원조건: 출연 75% 이내

- 지원규모: 총 626.3억원 (신규 110억원, 계속 516.3억원)

- 해외기관(산·학·연)과의 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

기술 분야	세부기술 영역	지원기간
일반국제공동R&D (일반과제)	연 10억원 내외	3~5년 이내
양국 정부간 국제공동기술개발 (양자면담형) (한-중국, 한-프랑스, 한-스페인, 한-독일, 한-스위스)	연 5억원 내외	3년 이내
EU 다자간 국제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 참여 지원 (다자면담형) (EUREA, EUROSTAR, Horizon 2020, M-ERANET)	연 5억원 내외	

■ 추진일정

유형	공고	Pre-proposal 접수	개념 평가	Full-process 접수	사전 시연검토	대면 평가	협약
일반과제	'15.1월	'15.2월	'15.3월	'15.4월	'15.5월	'15.6월	'15.8월
다자면담형	유레카*	-	-	'15.3월(상) '15.8월(하)	'15.4월(상) '15.9월(하)	'15.10월(상) '15.10월(하)	'15.12월(상) '15.12월(하)
	Horizon 2020	-	-	'15.3월(상) '15.8월(하)	'15.4월(상) '15.9월(하)	'15.5월(상) '15.10월(하)	'15.7월(상) '15.7월(하)
	EURO Star 2	-	-	'15.3월	'15.4월~5월	'15.6월	'15.9월
	M-ERANET	'15.1월	'15.4월	'15.7월	'15.9월	'15.10월~11월	'15.11월
양자면담형	중국	'15.1월	~5월	-	'15.4월	'15.5월	'15.8월
	독일	'15.1월	-	-	'15.4월	'15.5월	'15.7월

- * 양국 정부간 국제공동기술개발 (양자면담형) 중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의 경우 EUREA를 통해 공고 및 지원 예정

(21)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 사업개요

- 미래산업을 선도할 다양한 산업전문인력의 양성 및 양성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산업에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산업기술인재 양성 및 인적자원생태계 조성 등 - (산업기술 인재양성) 산업계 수요 및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미래선도산업, 신산업분야의 핵심·원천기술개발 R&D를 선도할 인력양성 및 고용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강화 - (인적자원생태계조성) 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조사, 성과분석 등 인력정책 기획기능 및 기반강화
- 지원대상: 대학(원)생 등
- 지원조건: 총 사업기간 5년 이내로 사업별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단계 지원 결정

■ 지원규모

- 502.09억원 (신규 145.4억원, 계속 356.69억원)
- 평균 23억 내외로 지원 (세부사업별로 상이)

■ 추진일정(예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1월~'14.5월	'15.2월~3월	'15. 3월	'15. 3월	'15.1월~6월

(22)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 사업개요

- 산업기술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디자인, 엔지니어링 육성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기술혁신역량 강화에 기여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구분	지원분야
산업융합기반구축	산업 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주력산업 분야의 공동활동 기반을 조성
디자인기반구축	제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와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디자인, 해외진출, 전략적포기반 등 연구기반구축을 지원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블렌드·원천·건설 등 대형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엔지니어링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성장동력기반구축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발전에 시급히 요구되는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

- 지원대상: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비영리기관) 등

- 지원조건: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사업기간 5년 이내

- 지원규모: 1,547.72억원 (신규 163.29억원, 계속 1,384.43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월2월	'15. 3월	'15. 3월4월	'15. 4월	'15. 5월

(23) 수출전략형미래그린성장차세대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FTA시대의 상용차 국내시장 방어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차부품산업을 신성장 동력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상용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규모 : 134.5억원 (신규 18억원, 계속 116.5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광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15. 2월	'15. 3월~4월	'15. 4월~5월	'15. 5월

(24)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 사업개요

- 로봇산업 R&D 혁신과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집적화된 클러스터 조성으로 로봇산업의 성장 동력원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로봇 상용화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조건 :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으로 구성되며, 기술개발과제는 과제당 3년 이내 연간 5억원 내외
 - ※ 기반구축과제에 대한 추가 신규지원은 없음
- 지원규모 : 234.72억원(신규 44억원, 계속 190.72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광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15. 1월	'15. 1월~2월	'15. 2월	'15. 3월

(25)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 사업개요

- 영상산업(영화, 방송 등) 이외의 he산업 분야에 3D영상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3D 융합 산업업 창출 및 육성

■ 지원내용

- (기반조성) 3D융합기술지원센터, 3D상용화지원센터, 3D디스플레이상용화지원센터 구축 및 연계클러스터추진단 운영
- (기술개발) 3D 기반기술 및 3D 제품화 기술개발
-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 matching

- 지원규모 : 360억원(신규 50억원, 계속 310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광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15. 2월	'15. 3월~4월	'15. 4월	'15. 5월

(26) 첨단메이커 신소재(섬유) 개발사업

■ 사업개요

- 친환경 고효율 글로벌 리드형 성장가능 건설기계·부품 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건설기계부품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기술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
- 지원조건 :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으로 구성되며, 기술개발과제는 과제당 3년 이내 연간 10억원 내외
 - ※ 기반구축과제에 대한 추가 신규지원은 없음
- 지원규모 : 200.01억원(신규 14억원, 계속 186.01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광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15. 2월	'15. 3월~4월	'15. 4월	'15. 5월

(27)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사업

■ 사업개요

- F1서킷 활용, 고성능/고효율 모터스포츠 및 프리미엄급 자동차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 하고, 자동차 부품 평가기반 구축 및 전용장비 도입으로 부품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프리미엄 차량에 장착 되는 고성능 핵심부품 개발및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조건 : 기술개발과제는 2년 이내 연간 5억원 내외
- 지원규모 : 105.61억원(신규 5억원, 계속 100.61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광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15. 2월	'15. 3월~4월	'15. 4월~5월	'15. 5월

(28)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사업개요

-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 내 주력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우수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통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과제별 연 3억원 내·외, 총 3년 이내(연차별 협약)
- 지원대상 : 지역 내 부가가치·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도별 5개 이내 총 63개 주력산업분야

지역	주력산업	지역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문신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경북	모바일, 디지털기부품, 에너지부품, 성형기기,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용역기반기부품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광주	스마트가전, 디자인 초정밀공작기계,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성기계, 용역부품, 향도화바이오
전남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소재, 금속소재·기공, 바이오식품	강원	헬스식품, 구조용소재, 스마트지식서비스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소재섬유, 해양설비기자재, 경원소재성형	제주	물류용, 관광디지털콘텐츠, 헬스식품, 용역·전기서비스

- 지원조건 :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지역기업의 특성·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지역별 지원규모 및 기간, 조건, 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

- 지원규모 : 1,741억원(신규 1,102억원, 계속 639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광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0월~'15. 1월	'15. 2월	'15. 3월	'15. 3월~4월	'15. 6월

(2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으로의 고급연구인력 공급을 촉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트랙1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피견지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장규직 및 기업지원연구직)을 중소기업에 파견 지원
트랙2	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대학원·연구기관, 대학 경력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
트랙3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신규채용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트랙4	재직자 연구인력 역량강화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인력 대상으로 집중적인 실무 교육·연구 프로그램 지원

- 지원규모 : 210억원(신규 20억원, 계속 190억원) 이후 변경 가능

■ 추진일정

과제기회	광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1월~'12월	'15. 1월	'15. 1월~'12월(연중상시)	'15. 3월~'12월	평가 후 1개월 이내

(30) R&D 재발견 프로젝트

■ 사업개요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기술의 성과확산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 또는 이를 활용한 융합 제품 개발을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 지원조건 : 1년 이내, 과제당 최대 4억원 까지 출연 지원

- 지원규모 : 106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광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1월~'12월	'15. 2월	'15. 2월~3월	'15. 3월~4월	'15. 5월

(31)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공동연구실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확산력 확보

■ 지원내용

-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연구실 운영 및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 지원조건 : 1년 이내, 과제당 최대 4억원 까지 출연 지원

- 지원규모 : 96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광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1월~'12월	'15. 2월	'15. 2월~3월	'15. 3월~4월	'15. 5월

(32)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촉진

■ 지원내용(공동사항)

- 지원대상 : 태양광, 풍력, 수소 - 연료전지, 석탄이용(GCC 실증 포함),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 분야 신재생에너지 융합 분야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및 제10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50~100% 정부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131억원(신규 417억원, 계속 1,714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월~12월	'15. 1월	'15. 2월~3월	'15. 4월~5월	'15. 6월

(33)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최우선의 원전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원전 안전 및 선진화, 원전설비 및 운영성능, 원자력환경 및 해체, 원전기술혁신 분야 기술개발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50~100% 정부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857억원(신규 51억원, 계속 806억원)

* 신규, 계속 지원액은 '15년 계속과제 평가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월~12월	'15. 1월	'15. 2월~3월	'15. 4월~5월	'15. 6월

(34)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자원의 개발성공률 제고와 개발 분야 투자대비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력 향상 추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석유·가스 등 전통/비전통자원의 탐사·개발 및 금속·비금속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탐사·평가·생산 기술개발 분야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50~100% 정부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81억원(신규 38억, 계속 243억)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월~12월	'15. 1월	'15. 2월~3월	'15. 4월~5월	'15. 6월

(35)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청정화력분야 R&D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관련 인프라의 정비·구축
 - 기존 석탄·복합화력 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신규 화력 발전소의 고효율·친환경화를 위한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발전효율 향상, 부품/소재 성능 향상 및 CO2 저감 등 환경기술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50~100% 정부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67억원(신규 45억원, 계속 222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월~12월	'15. 1월	'15. 2월~3월	'15. 4월~5월	'15. 6월

(36) 발전용 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 사업개요

-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발전용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의 성공적인 개발과 더불어 국내 발전용 가스터빈의 기술 자립 확보
 -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가스터빈 Supply Chain을 구축하여 경쟁력 체계 구축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발전용 대형가스터빈 핵심기술 개발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15년도 신규 지원 없음

■ 지원규모 : 183억원(계속 183억원)

■ 추진일정 : '15년 신규지원 없음

(37)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에너지·자원순환/녹색기술개발지원)

■ 사업개요

-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자원 사용량을 원천감소하고 순환형 산업경제구조(Circular Industrial Structure) 실현
- 에너지효율향상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핵심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금속자립 및 희소금속의 회수·재이용·저감·대체, 에너지 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에너지·자원 원단의 절감 대체 기술
 - * '15년도 녹색기술개발 내역사업은 계속과제에 한해 지원 예정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주권이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3~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12억원(신규 29억원, 계속 183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월~12월	'15. 1월	'15. 2월~3월	'15. 4월~5월	'15. 6월

(38)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신재생·전력·원자력)

■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 원자력 분야 중소·중견기업 R&D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핵심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15년도는 계속과제에 한해 지원 예정

■ 지원규모 : 45억원(신규 미정, 계속 45억원)

■ 추진일정 : 해당사항 없음

(39)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에너지 수요관리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기술 자립도를 제고하여 기후변화협약·고유가 등 에너지환경 변화대응 및 청초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가스안전, 에너지수요관리용량, 에너지신산업 창출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에너지저장장치(전기, 열 분야), 건물, 산업공정, 수송 분야의 효율향상기술, 에너지저장기술, 온실가스처리기술, 에너지수요관리용량, 에너지신산업 창출, 가스안전 기술 분야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출연(Matching Fund,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사업비의 50~100% 정부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872억원(신규 509억원, 계속 1,363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월~12월	'15. 1월	'15. 2월~3월	'15. 4월~5월	'15. 6월

(40)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기존 전력망을 고도화하여 지능형·친환경 전력인프라 구축 및 신성장 동력 창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 송전, 배전명역 관련기술 분야
 - 전력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수요관리, 보조서비스, 신규 콘텐트 등 전력 수요가 영역 관련 기술 분야
 - 다양한 전기설비 환경에 따른 전기사고(화재, 간접) 예방과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기술 및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 분야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출연(Matching Fund,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사업비의 50~100% 정부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35억원(신규 30억, 계속 405억)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월~12월	'15. 1월	'15. 2월~3월	'15. 4월~5월	'15. 6월

(41)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 사업

■ 사업개요

-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전력계통 연계 실증을 통한 전력피크 대응으로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 및 ESS 산업화 촉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54MW급 BESS 계통 연계 설비 및 구조물 구축과 운영알고리즘 검증
 - PCS 설계 및 시제품 제작
 - MW급 ESS용 Battery 개발 및 제작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 '15년도는 계속과제에 한해 지원 예정

■ 지원규모 : 69억원(계속 69억원)

■ 추진일정 : 해당사항 없음

(42)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의 수준향상을 통해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방지 및 공공의 안전과 환경에 이바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용후핵연료의 운반, 저장, 처분 등과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
 - 중·저준위 처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출연(Matching Fund,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사업비의 50~100% 정부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13억원(신규 30억원, 계속 83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월~12월	'15. 1월	'15. 2월~3월	'15. 4월~5월	'15. 6월

(43) 에너지인력양성사업

■ 사업개요

-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수출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 육성

■ 지원내용

- 「기초인력역량개발 사업
 - ① 에너지기초인력양성(기초트랙)
 - 에너지 산업의 기업수요를 고려하여 다학제 교과과정을 폐지(지하철 교육 커리큘럼(트랙) 운영으로 융·복합 학부 인력양성(에너지
 - ②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사업
 - ① 정책연계·융복합 인력양성(고급트랙)
 - 에너지 분야 정책적 중요도가 큰 분야의 전학기술 개발 및 융복합 기술 수요에 대응한 석·박사 고급 인력양성
 - ② 국제인력교류활성화 사업
 - ① 국제 에너지인력양성 구축
 - 인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원 확보 및 사업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자원부국 공무원 대상의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
 - ②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 국제 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확진을 위해 개도국 공무원, 기업대표 등 외국인 대상으로 단기 연수 지원

■ 지원규모 : 403억원(신규 84억원, 계속 319억원)

구 분	2015년 예산(억원)			합 계
	신 규	계 속	합 계	
에너지지원 (에너지 효율향상 등)	26	143	169	
전력·원자력·신재생	58	176	234	
합 계	84	319	403	

* 신규 및 계속 구분은 일부 변경 가능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	'15. 1월	'15. 1월~3월	'15. 3월~5월	'15. 6월

(44)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 사업개요

- 에너지 선진기술 조기 확보를 통해 기후변화협약·고유가 등 에너지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기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
- 자원 확보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 원자력산업 분야)
- 지원조건 : 2~3년 내외로 매년 1~5억원 규모로 지원
 - 지원기준은 기술개발사업비의 50~100% 지원
 - 기술로 징수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 후 실시기관이 사용한 총 정부출연금의 20~40%를 기술료로 징수

■ 지원규모 : 198억원(신규 77억원, 계속 121억원)

구 분	2015년 예산(억원)			합 계
	신 규	계 속	합 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예탁)	46	37	83	
에너지국제공동연구(기금)	31	84	115	
합 계	77	121	198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1월~12월	'15. 1월 中	'15. 1월~2월	'15. 4월	'15. 5월

(45)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 사업개요

- 에너지지원기술 동향분석, 중장기 R&D계획, 산업체 실태조사, 성장동력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
 - * ※ 중 사업은 에너지기술의 R&D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연구로서 기존 명칭(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이 사업 목적과 다소 상이함에 따라 '에너지기술정책수립'으로 사업명 변경
- 에너지지원기술 정책지원 기반구축으로 기술개발-실증-사업화-수출산업화에 이르는 선순환 연결구조 구축

■ 지원내용

- 정책기획·연구(예탁)
 - 에너지지원기술정책지원 :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통한 에너지 R&D 투자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지원조건
 - 기술개발사업비의 50~100% 지원
 - 기술로 징수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요령에 따라 과제 종료 후 총 정부출연금의 10~40%를 기술료로 징수
 - 정책지정 또는 지정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과제 지원

■ 지원규모 : 9.82억원(신규 9.52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	'15. 1월	'15. 2월~3월	'15. 3월	'15. 4월

(46)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

■ 사업개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에너지·자원의 선순환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 산업단지 내 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및 대 중소기업간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부산상 및 폐기물 재활용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산업 성장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산업단지 내 에너지·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
 - 산업단지 내 기업간 부산물·폐기물 및 에너지 교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생태산업 단지 구축 및 확대
-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대·중소기업간 공급망(Supply Chain)을 활용하여 중소협력업체의 에너지 관리, 녹색제품생산, 환경규제대응 등 중점 지원
- 에너지·자원순환기술보급
 - 도시광산, 재제조 관련 기술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원순환의 산업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기반 구축 및 보급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지원조건
 - 기술개발사업비의 50~100% 지원
 - 기술로 징수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요령에 따라 과제 종료 후 총 정부출연금의 10~40%를 기술료로 징수
 - 정책지정 또는 지정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과제 지원

■ 지원규모 : 112.87억원(신규 16.84억원, 계속 96.03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	'15. 1월	'15. 2월~3월	'15. 3월	'15. 4월

(47)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가.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분야

■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에너지원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제도개선, 법령 제 개정 방안 마련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반조성 등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 지원내용

- 정책지정 또는 지정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정책과제 선정 및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사업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정부지원

■ 지원규모 : 19억원(신규 19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2월, 7월	'15. 3월, 8월	'15. 3월, 8월	'15. 4월, 9월	'15. 5월, 10월

나. 전력기술기반구축분야

■ 사업개요

- 전력기술정보의 교류와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전력 관련 R&D정책 수립에 활용

■ 지원내용

- 전력분야 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활용·확산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전력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R&D 기술정책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 matching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1~5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45억원(신규 10억원, 계속 35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15. 1월	'15. 2월	'15. 2월	'15. 3월	'15. 4월

(48)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 사업개요

- 전력산업분야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기술 및 제품의 표준 제·개정 및 적합성 확인을 위한 인증체계 지원

■ 지원내용

-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 전력기술 표준화 및 인증
 -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인증시험기반구축
 - 지원대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등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 Matching
- 지원규모 : 214.7억원(신규 36.8억원, 계속 177.9억원)

구 분	2015년 예산(백만원)		
	신규	계속	합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2,120	1,080	3,200
전력기술 표준화 및 인증	859	9,348	10,207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4,600	4,600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2,760	2,760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인증시험기반구축	700	-	700
합 계	3,679	17,788	21,467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15. 1월	'15. 2월	'15. 3월	'15. 4월

(49) 민·군기술협력사업

■ 사업개요

-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여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술개발(Spin-up) : 국방력·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범규모 확대, 경쟁성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민·군 양 부문에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 기술이전(Spin-on/off)
 - ※ 민·군기술협력연구 : 연구개발, 해외도입, 창업구역, 기타 방법으로 특정산업 분야에서 기획보된 기술로서, 민수산업 분야에서 군수산업 분야로(Spin-on) 또는 군수산업 분야에서 민수산업 분야로(Spin-off) 이전 가능한 기술에 대한 적용연구
- 신청자격
 -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단체(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참조)
- 지원내용 : 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 참조)
 - 대기업 : 총 연구비의 50%이내
 - 중기업 : 총 연구비의 60%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비의 75%이내

■ 지원규모 : 133.62(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2월	'15. 3월	'15. 4월	'15. 5월

(50) 범부처전자신약개발사업

■ 사업개요

-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미래부, 산업부, 복지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 이상 개발(Licensing Out)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 연구개발 투자전략 플랫폼의 선진화에 기여
 - ※ 글로벌 신약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혁신성을 갖는 신물질 약효이며, 연 매출 1,000~3,000억원 이상 신약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R&D 지원
- 지원조건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바이오벤처, 대학 (의료기관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모두 가능
- ※ 임상개발단계는 주관연구기관을 기업 및 바이오벤처로 제한함.

■ 지원규모 : 240억원(신규 97.5억원, 계속 142.5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사업 RFP에 공개하여 진행	'15. 1. 3, 5, 7, 9, 11월	'15. 2. 4, 6, 8, 10, 12월	2개월 주기로 진행	개발 및 사업비 지급 개발, 과제별 협약에 의거

(51) 바이오화학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바이오화학제품 조기산업화를 위하여 주력산업과 연계된 원료생산부터 소재 및 시제품 개발까지 전주기적 R&D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바이오화학원료생산기술 : 원료(바이오수거 등) 생산기술 확보
 - 바이오화학소재기술 : 주력산업과 연계된 바이오물리우레탄(자동차), 바이오아크릴(전자), 고성능 셀룰로오스(섬유) 등 소재개발 지원
 - 바이오화학산업융합기술 : 바이오플라스틱(P.L.A) 원스톱 융합공정기술개발, 바이오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통합공정용 바이오컴비니트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 matching, 3~5년 이내
- 지원규모 : 158.1억원(신규 57억원, 계속 101.1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15. 2월	'15. 3월~4월	'15. 4월	'15. 5월	'15. 6월

(52)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 사업개요

- 맞춤형 의료 구현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유전체 연구 지원·정보 확보 및 맞춤형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유전체 정보서비스 프로세스 최적화
 - 유전체산업 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 및 한국인 표준게놈 지도 작성
 - 맞춤형 유전체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개발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 matching, 3~5년 이내

■ 지원규모 : 64.09억원(신규 17.09억원, 계속 47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15. 2월	'15. 3월~4월	'15. 4월	'15. 5월	'15. 6월

(53)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 사업개요

- 기존의 요소투입형-생산중심의 산업단지를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하는 지식기반형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

■ 지원내용

- 산업연 협업체 중심의 R&D, 제품화, 시장화 등 기업 애로 해결형 공동협력과제 발굴·지원
- 지원대상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내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 * 산업집 제2조 제4호에 의한 국가·일반·도시형단지·농공단지 및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 지원규모 : 597.3억원

■ 추진일정

- 연중 산학연협의체 활동을 통해 과제 발굴·평가·지원함

(54) 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 사업개요

- 주력산업 및 차세대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일반센서 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센서 중심으로 고도화

■ 지원내용

- 첨단센서 육성을 위한 핵심소재 및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이와 연계한 혁신 유망센서 조기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회를 통해 신규과제 발굴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
- 지원조건 : 2~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70.93억원(신규 70.93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0월~'15. 1월	'15. 2월	'15. 3월	'15. 4월~5월	'15. 6월

(55)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지원사업

■ 사업개요

- 의료기기 수출에 필수적인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국산 첨단의료기기 해외수출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산학협력 길라잡이 II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부록)

■ 지원내용

- 미국 등 선진국이 제정한 강력한 新 국제규격에 따른 의료기기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의료기기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기술 장벽극복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
- 총 기간 5년, 총 280억원 지원 ('14~'18년)

■ 지원규모 : 40억원(계속 40억원)

■ 추진일정 * 신규과제가 없는 사업임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56)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오송, 대구경북)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기기분야 산업체 애로기술, 맞춤형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강화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기반기술 공동연구지원 트랙) 의료기기 제품 개발 시 겪는 애로기술 해결 및 제품 개발을 지원
- (수요자 맞춤형 공동연구지원 트랙) 의료기기 시제품이나 완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병행 현상과 연계하여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이 단독 또는 중소기업·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최대 2년, 연 3억원 이내

■ 지원규모 : 60억원(신규 20억원, 계속 40억원)

■ 추진일정 * 신규과제가 없는 사업임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월~2월	'15. 3월	'15. 4월	'15. 7월	'15. 8월

(54) 장비연계형 3D프린팅소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3D프린팅 장비·소재의 시장수요 및 발전전망 등을 반영한 장비 연계형 소재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장비·소재 연계형 3D프린팅 기술 및 3D프린팅 장비·소재 물질평가체계 개발
- 지원대상 : 연구소, 기업, 대학 등
- 지원조건 : 3~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40억원 (신규)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월~2월	'15. 3월~4월	'15. 5월	'15. 6월	'15. 7월

(58) LED시스템조명 2.0 사업

■ 사업개요

- LED조명을 IT기술과 융합·고도화하여 국민편익,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글로벌 LED시스템조명 신산업을 창조

■ 지원내용

- (핵심부품 상용화) 고도화되고 인공지능을 가진 대규모 LED시스템조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 및 부품 상용화 개발
- (중용제품/실증) 빌딩, 복합건물 등 전기 다소비 건물용 LED시스템 응용제품 개발하고, 실제 건물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시험
- (원천연구) LED시스템조명 국제표준화 및 빛공해 방지/빛환경 표준디자인 기술개발

■ 지원규모 : 20억원(신규 20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	'15. 2월 초	~'15. 5월	'15. 6월 초	'15. 6월 말

(59)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산업단지외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 지원내용

- 추진내용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범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알아야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마이 스토리·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기업 연구소 입주 및 산학융합R&D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교육·기술 지원
 -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산학융합성' 및 '공정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자체, 대학, 기업 등) 매칭

■ 지원규모 : 230억원(신규 60억원, 계속 170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15. 1월	'15. 1월~3월	'15. 2월~3월	'15. 3월~5월	'15. 5월

(60) 지역성장기반구축사업

■ 사업개요

-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역성장산업 발전에 시급히 요구되는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구분	지원내용	비고
최소규모 산업육성 인프라구축	최소규모 특화 연구기반 구축과 수요기업 지원의 기반을 구축하여 최소 규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전문기업육성 촉진	계속
해양로봇연구 거점센터 지원	로봇산업과 해양산업간의 글로벌 선도적 융합기술과 신제품 창출을 지원하여 차세대 세계 해양로봇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거점센터 구축	계속
항공전자부품 기반구축	항공전자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을 통한 국내 항공전자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비행체 개발에 따른 지상 성능시험과 원할한 비행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계속

구분	지원내용	비고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구축	자동차 파워트레인 효율 및 배기환경규제 대응기반을 구축하여 부품업체가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납품 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확립	계속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3D프린팅 기술을 전주기적으로 전통생산기술과 융합하여 주력 및 신성장 분야 제조업 혁신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 및 기술활용 생태계 강화	계속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작기 시장진입 및 매출 증대	계속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평가기반 구축	원형 및 공정혁신 플랫폼 기술 고도화로 중소기업 생산효율 향상	계속
이차전지 시험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시험인증 획득을 지원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핵심 부품인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시험인증 획득을 지원	신규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정부출연연, 국립대학 등이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해당 세부 사업 신규공고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사업기간 5년 이내

■ 지원규모 : 311.73억원(신규 25억원, 계속 286.73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회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월~2월	'15. 3월	'15. 3월~4월	'15. 4월	'15. 5월

(61)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산업현장의 애로기술을 대학과 기업이 공동 해결할 수 있는 산업체 전용 실습실을 구축하고 기술지원 및 맞춤형 특화교육과정 운영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구분	지원분야
산업체 전용 실습실 구축	산업단지 내 산업 비중 및 애로기술 수요를 토대로 실습실 구축
맞춤형 특화교육과정 운영	생산공정 및 생산관리과정 등에 필요한 장비들로 구축
	기업 애로기술 기반의 Case Study 교육과정 운영
	프로젝트 기반 실험실습형 교육과정 운영

- 지원대상 : 국가산업단지 및 뿌리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
- 지원조건 : 출연 형태로 지원하며, 총 사업기간은 5년 이내

■ 지원규모 : 50억원(신규 50억원)

■ 추진일정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월	'15. 1월~2월	'15. 2월	'15. 3월

(62)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

■ 사업개요

- 산업계 대학 및 정부가 상호 유기적으로 수요자 기반의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공과대학생의 전공역량 강화 등 공대 혁신을 비롯해 고교생의 현장 직무능력 제고 등 기술개발 역량을 확충
- 지역 중소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력 지원, 기업주도형공학실무역량평가, 산업기술인력 성 공도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연구사업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 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공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분야
 - (산업인력 지원) 공대 재학생의 기업현장 기반 R&D 실무역량 향상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R&D 전문인력 양성/인력 확보
 - (대학실무역량평가) 대졸수준의 공학인력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비즈니스 및 공학기술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활동 종합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마련
 - (성공모델 지원) 바이오 및 정밀기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와 경쟁력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직업교육 시스템을 활용, 글로벌 기술인력(Meester) 육성 모델 마련
- 지원조건 : 지원기간 및 금액 등 각 과제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14.2억원 내외 (단위 : 억원)

	신규	계속	계
지역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력 지원	미정	-	미정
기업수도형공학실무역량평가	6.6	-	6.6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	7.6	-	7.6
계	14.2	-	14.2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지역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력 지원	'15. 2월	'15. 3월	'15. 4월	'15. 5월
기업수도형공학실무역량평가	'14. 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	'14. 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63) 기타사업

※ 아래사업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일정 등은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또는 각 사업별 공고시 내용 참고 요망

사업명	2015년도 예산액(백만원)
산업현장혁신기술수시개발	40,000
기술개발지원기반시설충구축	7,920
로봇메카트로닉스 조성사업	5,000
산업기술장학연구기회	5,000
스마트공공도화기술개발	5,000
산업현장여성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	3,000
융합수용형산업육성	3,000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3,000
ICT인성지원센터	2,000
High-Tech베어링산업기반구축	1,500

※ 아래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산업부 소관사업으로 지원규모는 향후 미래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임

가.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개발 집중 지원을 통해 주력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광 분야의 성장유망 기술개발 집중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지원내용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광 분야의 산업융합원천기술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일반기업으로 3~5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952.35억원(신규 214.41억원, 계속 737.94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6월~12월	'15. 1월	'15. 4월	'15. 5월	'15. 6월

나. SW·컴퓨팅(임베디드SW)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임베디드SW 융합을 통한 신시장을 창출하고 고급인력 양성 및 일자리 기회를 마련

■ 지원내용

- SW·컴퓨팅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중 임베디드SW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 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일반기업으로 3~5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46억원(계속 46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다. 정보통신미디어(홍정보기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 지원내용

- 정보통신미디어 분야 중 홍정보기전 분야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3~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48.15억원(계속 48.15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5. 사업 문의처

사업명	산업통신지원부	전담기관	홈페이지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신산업, 주력산업 분야)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3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476	www.keit.re.kr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총괄과 044-203-4262~3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382~7	www.keit.re.kr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주력및신산업)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5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475	www.keit.re.kr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 강화사업	기계로봇과 044-203-4316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313	www.keit.re.kr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7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327	www.keit.re.kr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 기술개발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83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222,8233	www.keit.re.kr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디자인생활심화과 044-203-4373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212, 8217	www.keit.re.kr
국민만민중진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7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243	www.keit.re.kr
혁신의료기(제품)화기술 개발사업	전자전자과 044-203-4341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42-715-2231	www.keit.re.kr
산업융합혁신사업	산업정책과 044-203-4523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241, 8242	www.keit.re.kr
그레인소재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83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232,8233	www.keit.re.kr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3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475	www.keit.re.kr
나노융합2020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83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02-6000-7494, 7496	www.nanotech2020.org
국가표준기술력향상	국표표준과 043-870-5351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222	www.keit.re.kr
국재신호인정사업	인공신경망과 043-870-5603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223	www.keit.re.kr
평가능력기반구축	제품안전기술정책과 043-870-5411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224	www.keit.re.kr
산업기술 표준화 및 인증지원	국가표준정책과 043-870-5411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224	www.keit.re.kr
국가기술표준 데이터개발	개발정책제도과 043-870-5516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226	www.keit.re.kr
통일혁신기반구축	산업인력정책과 043-870-5494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225	www.keit.re.kr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국표표준과 043-870-5352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226	www.keit.re.kr
개발혁신기술개발사업	개발정책제도과 043-870-5374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53-718-8225	www.keit.re.kr
녹색산업선도형태전자기술개발	전자전자과 044-203-4344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42-715-2232	www.keit.re.kr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 개발사업	전자부품과 044-203-4275, 4276	한국산업기술관리원 042-715-2215	www.keit.re.kr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심화과 044-203-453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42, 4341, 4346	www.kiat.or.kr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소재부품정책과 044-203-4265, 426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23,3926,3928	www.kiat.or.kr
경제협력권사업	지역산업과 044-203-44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62~7,3770~2	www.kiat.or.kr
신기술개발협력사업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13,3516,3538	www.kiat.or.kr
산업인력개발	산업인력과 044-203-4222, 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21,3	www.kiat.or.kr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91~4, 4315	www.kiat.or.kr
수출전략형(메카트로닉스)소재부품개발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96	www.kiat.or.kr
로봇산업리플러소재 조성사업	기계로봇과 044-203-43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96	www.kiat.or.kr
초광역대역3D융합산업육성	전자전자과 044-203-43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4	www.kiat.or.kr
차세대인쇄(3D)제조용특수소재 조성사업	기계로봇과 044-203-43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3	www.kiat.or.kr
차부품고급브랜드화 연구 개발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7	www.kiat.or.kr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산업과 044-203-44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31	www.kiat.or.kr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9	www.partner.net.re.kr
R&D 재팬 프로젝트	산업기술심화과 044-203-45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72~3	www.kiat.or.kr
중소기업공동연구지원사업	산업기술심화과 044-203-45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67	www.kiat.or.kr
신소재에너지혁신기술개발사업	신소재에너지과 044-203-517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2-3469-8375, 8381	www.ketop.re.kr

산학협력 길라잡이 II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부록)

사 업 명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홈페이지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5	www.kelep.re.kr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	자원개발전략과 044-203-514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9	www.kelep.re.kr
청정화학핵심기술개발사업	전략진흥과 044-203-527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2	www.kelep.re.kr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전략진흥과 044-203-527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2	www.kelep.re.kr
글로벌전문 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3-424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8	www.kelep.re.kr
	녹색기술개발지원 에너지기술과 044-203-4544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신재생/전략/원자력)	에너지기술과 044-203-454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8	www.kelep.re.kr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 개발사업	에너지수요관리정책 044-203-536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3	www.kelep.re.kr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	전략진흥과 044-203-527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7	www.kelep.re.kr
전력미끄 대을을 위한 ESS 중연구 사업	에너지관리과 044-203-538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4	www.kelep.re.kr
방패관리기술개발사업	원전환경과 044-203-53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2	www.kelep.re.kr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에너지기술과 044-203-454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61~4	www.kelep.re.kr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에너지기술과 044-203-454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40~9	www.kelep.re.kr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에텍)	에너지기술과 044-203-454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14	www.kelep.re.kr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3-424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14	www.kelep.re.kr
전략 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전략)	신재생에너지기반 구축분야 전략기술기반 구축분야 044-203-5266, 5270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31-260-4818, 4822 전략기반조성사업센터 인프라사업팀 02-6007-0361	www.motie.go.kr www.kemco.or.kr www.etep.or.kr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2	신재생에너지센터 031-260-4819	www.kemco.or.kr
전략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전략진흥과 044-203-5270 원전산업관리과 044-203-5314	전략기반조성사업센터 02-6007-036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5	www.etep.or.kr www.kelep.re.kr
민·군기술협력사업	기계로봇과 044-203-4313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협력센터 042-821-0581	www.cmtc.re.kr
범부처전주기인양개발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2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02-361-3600	www.kddi.org
바이오화학산업촉진기술 개발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63-718-8235, 8265	www.keit.re.kr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63-718-8234, 8265	www.keit.re.kr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임지총괄과 044-203-4407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259	www.kicox.or.kr
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 센서 육성사업	전자부품과 044-203-427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9	www.keit.re.kr
첨단의료기기 신·수출단지 지원사업	전자전기과 044-203-43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2233	www.keit.re.kr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지원사업	전자전기과 044-203-43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2233	www.keit.re.kr
장비연계형 3D프린팅소재기술 개발사업	전자전기과 044-203-434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2	www.keit.re.kr
LED시스템조명 2.0 사업	전자전기과 044-203-434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3	www.keit.re.kr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임지총괄과 044-203-445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63	www.kiat.or.kr
지역성장기반구축사업	철강화학과 044-203-428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26	www.kiat.or.kr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 조성사업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92	www.kiat.or.kr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사업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2, 4526 산업인력과 044-203-42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22, 3225, 3231	www.kiat.or.kr
전자정보 디바이스 산업원천 기술개발 사업	반도체 044-203-427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5	www.keit.re.kr
	디스플레이 044-203-427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1	www.keit.re.kr
	LED/광 044-203-434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3	www.keit.re.kr
SW·컴퓨팅(임베디드)SW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전자부품과 044-203-42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2	www.keit.re.kr
정보통신미디어(출정보기전) 업원천기술개발사업	전자전기과 044-203-434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2	www.keit.re.kr

4. 201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2015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2015년도 R&D 세부사업별 예산 * 총 21개 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 1개 포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15년도 예산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85,417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79,039
임상연구인프라조성사업	42,930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	21,800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	21,584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19,500
연구중심병원육성	17,000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13,460
글로벌화장품신소재 신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10,750
한약선도기술개발	10,665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8,700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사업	8,460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 신규	7,500
양 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7,490
첨단의료복합단지기반기술구축 (첨복재단)	7,400
정신건강기술개발	6,000
100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4,000
보건의료서비스 R&D	3,000
사회서비스 R&D	2,000
보건의료 R&D 기술료 사업 신규	1,835
질환유전자분석플랫폼기술개발 신규	1,000
합계	379,530

부록 4 주요부처 연구지원사업 안내

5. 2015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선택 집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622	2년	10	60%	2월	2~3월	4~5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806	2년	8	75%	1월 4월 5월	1~2월 4~5월 5~6월	3월 6월 7~9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92	1년	2	75%	4월	4~5월	6~7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융·복합기술개발	348	2년	6	60%	1월	2~3월	3~4월		
		센터연계형기술개발	337	2년	6	60%	3월 7월	4~5월 8~9월	6~7월 9~10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915	2년	5	75%	2월	3~10월	4~11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471	3년	10	75%	1월	2~10월	3~11월	
			이전기술개발	200	2년	5	75%	5월	6~7월	8~9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60	3년	10	60%	2월	2~3월	4~5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468	1년	2	90%	1월	2, 6, 9월	2~10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156	1년	1	90%~100%	1월	3~5월	5~7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첫걸음 R&D	첫걸음	409	1년	1	75%	1월	2, 6, 8월 (1~10일)	2~11월
				무설연구소 신규설치	144	2년	2	75%	1월	2월	2~6월
			도약 R&D	도약	560	1년	1	75%	1월	2, 6, 8월 (1~10일)	2~11월
				연구마을	146	1년	1	75%	1월	기관 2월 과제 4월	2~3월 4~8월
산연전용				146	1년	1.5	75%	1월	기관 2월 과제 4월	2~3월 4~8월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	80	3년	5	90%	1월	매월	1~12월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	35	4월 1년	0.2 0.3	75%	1월	3, 5, 7월 4월	4~9월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262	9월	0.5	75%	1월	2, 5, 8월	3~10월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50	1년	1	75%	2월	3, 8월	3~10월		
인프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55	1년	0.24	80%	1~4월	2~5월	3~6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65	1년	0.3	60~70%	1월	연중	연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60	2년	0.25	55%	2월	2~4월	4~5월	
취업연계 R&D교육센터운영			30	6월	0.05	100%	3월	3~4월	5월		
중소중견	WC300 프로젝트 지원	WC300 R&D	730	5년	75	50%	6월	8월	8~9월		
		지역강소기업경쟁력 강화	100	2년	4	75%	3월	4~5월	5월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27	7월	0.65	60~75%	1월	2~3월	4~5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지원 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발간에 참여한 분들

▮ 기획 :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

이상돈(교육부), 황현정(교육부), 홍신혜(교육부), 박태식(한국연구재단)

▮ 전체총괄

정관수(인제대)

▮ 제1장 산학협력력 개요, 제2장 산학협력력 조직 및 운영

가남희(서울대), 백현호(부산대), 장동익(성균관대), 윤지원(서울대)

▮ 제3장 연구기획 및 관리

장명주(고려대), 최영호(서울대), 유연택(한양대)

▮ 제4장 기술사업화 및 창업

김성근(부산대), 곽재석(중앙대), 이창준(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윤은영(부산대),
이윤석(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정현준(한국창업보육협회)

▮ 제5장 산학연계 및 인력양성

정관수(인제대), 박준원(한양대), 김지훈(한국산업기술대), 김명수(중앙대),

▮ 제6장 산학협력단 회계 및 세무

박양신(숙명여대), 천정봉(부산대)

▮ 감수에 참여한 분들

박문수(한국뉴욕주립대), 김지룡(고려대), 박준철(서울대), 손영욱(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권선국(경북대)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정책연구진)

권선국(경북대), 박양신(숙명여대), 김정선(한양대), 천정봉(부산대), 장지영(경북대)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힘

산학협력 길라잡이 Ⅱ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부록)

ISBN: 978-89-966068-8-8 93370

발행일: 2015년 11월 11일

발행처: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가 격: 비매품

문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

박태식 연구원 042)869-6405 ptslib@nrf.re.kr

인쇄소: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잣띠길 51 세종인쇄정보 070)4171-8368

본 책자의 원문파일(PDF)은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uicc.re.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